

월간
재정포럼 5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9년 5월호 제155호

현안분석 • •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김승래
• 관세평가와 이진가격제도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
/ 정재호

정책토론포럼 •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정책연구 •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 외

정책흐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추진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경제패러다임 시프터 · 김준영
현안분석	08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 김승래 34 관세평가와 이전기가격제도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 · 정재호
정책토론 리포트	52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정책연구	75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김승래 · 김형준 · 이철인 78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박노욱 · 원종학 · 김진 · 박명호 81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 및 조세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박노욱 외 84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김정훈 · 김현아 87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김승래 · 박상원 · 김형준 91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안종석
주요국의 조세동향	94 미국 국제조세 관련 조세개혁 방안 발표 외
정책흐름	1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추진 105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107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대한 IMF 전망 관련 108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의결 113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국회 의결 115 내년 재정목표 '위기 후 기회 선점 · 재정건전성 확보' 117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119 전국 지방세 고지서 전자메일로 받아요!
재정통계	121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140 조세연구원장 "양도세 중과폐지 필요" 외

경제패러다임 시프터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세계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risk-taking과 소비자들에 대한 과잉대출이 금융감독 소홀을 등에 업고 경제 전반적인 버블 확장으로 이어지다가 급기야 주택시장에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버블 붕괴가 발단이 된 금융위기가 소비, 투자, 생산 및 고용을 위축시키면서 실물경제침체로 번져왔다. 아이슬란드와 에콰도르의 국가부도에 이어 아일랜드, 그리스,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헝가리,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거래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 또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와 내수시장 위축 등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속될지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의 발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놓고 글로벌경제는 심각한 고민과 진통을 겪고 있다.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해 왔다. 그 중 하나는 나폴레옹전쟁 승리 후 19세기 영국이 겪은 대불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의 대공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는 기존의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위기의 본질이 전 세계가 동시에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글로벌 동반침체 상태에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자산의 부실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파생상품의 부실이 시한폭탄으로 잠복해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충격의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각보다 심각한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를 맞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터널 길이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기업들의 생존게임이 격화되면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부양에 초점을 둔 경제위

기 대응책을 실시해 왔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그리고 통화·신용공급 확대를 통한 유동성 증대로써 일자리창출과 서민·중소기업지원, 미래 성장산업지원,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지원 및 SOC 투자지원 등이 경제위기 대응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글로벌화로 지구촌이 좁아지면서 미국 서브프라임발 경제위기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주요 국가들의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시스템 붕괴를 막아냈고, 금년 2/4분기에 접어들면서 금융·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표면적으로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는 세계경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데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위기가 세계 질서의 재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세계경제는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패러다임이 시프터(paradigm shift) 되고 있다. 패러다임 시프터의 핵심내용은 경제리더십의 변화와 산업재편, 그리고 금융시스템 변혁과 떠오르는 아시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세계경제리더십의 패러다임 시프터다. 90년대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온 미국 주도의 리더십이 다자주의(다주체제) 경제협력의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다. 국제적인 정책 공조의 틀을 G20으로 확대시킨 것이 경제리더십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G2의 축을 근간으로 G20체제가 현실적인 해법을 찾게 되는 국제적 협력패러다임을 형성해 갈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지구촌 어느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그 위기가 빠른 속도로 전 지구적으로 파급됨으로써 경제위기가 동조화되고 구조화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시스템이 글로벌화되면서 금융·외환·자본시장에서의 국지적인 충격이라 하더라도 그 충격의 전파 과정에서 비이성적이고 비관적인 시장반응으로 증폭되어 시스템적으로 글로벌 충격으로 확산될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제리더십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본철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

.....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패러다임이
 시프터(paradigm shift)
 되고 있다. 패러다임
 시프터의 핵심내용은
 경제리더십의 변화와
 산업재편, 그리고
 금융시스템 변혁과
 떠오르는 아시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패러다임이 시프터
되고 있는 이 시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아시아의
주요 경제국으로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선·후진국의
브리지국가로서
한국의 스마트리더십이
기대된다.

.....

다. 시장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新자유주의에 대한 한계점이 극명하게 노정되면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빚어진 시장실패를 정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조정해 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시장개입이 국제적인 정책 공조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을 재정이 선도하고 있고, 재정정책을 통하여 경제규율을 재정립해 가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패러다임이 시프터 되고 있는 이 시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아시아의 주요 경제국으로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선·후진국의 브리지국가로서 한국의 스마트리더십이 기대된다.

둘째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적자생존의 이른바 정글(jungle)법칙이 확산되면서 산업이 한계기업, 거품기업, 내실기업, 新성장산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기업 중 한계기업과 거품기업은 퇴출되거나 과감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밟게 되는 대신, 위기에서 성장동력을 선점하는 기업은 탄탄한 내실을 바탕으로 미래주도 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기술력과 소프트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고효율 천연가스, 태양광 및 연료전지 등 그린(green)산업을 중심으로 新성장사업을 위한 기회 발굴이 본격화 되고 있다.

셋째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단이 된 금융패러다임이 다극화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위기를 몰고 온 금융시스템을 바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전 세계 자본시장 통합,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파생상품, 작동하지 않는 제각각의 규제제도 등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우선 부실금융자산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신속한 처리와 함께 은행자본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감시·감독체계를 보강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규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 재검토, 탐욕의 산물이었던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개발과 승인제한 등 금융감독을 엄격히 재정립하도록 국제적으로 금융패러다임의 공조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규율 설정과 금융감독체제 정비는 국제 금융패러다임 변화와 커플링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고안, 설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넷째로, 유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지구촌의 관심이 아시아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종래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경제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회생의 新성장엔진으로 아시아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환보유고(3조 달러)와 무역흑자 그리고 절반에 육박하는 美 국채 보유는 세계경제의 힘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있다. 글로벌경제 주도권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서구화를 표방하던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서 떠오르는 아시아에 무게중심을 둔 아시아나제이션(Asianization)으로 시프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침내 아시아 기업들이 오히려 선진시장에서 자산과 주식매입을 함으로써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의 역할관계가 180도로 바뀌는 소위 리버스 글로벌라이제이션(Reverse Globalization)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선도할 국가전략 개요

글로벌 위기 이후 전 세계경제에서 아시아경제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큰 변화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가 선진경제의 추종자로서 동조화해 왔다면, 앞으로는 아시아경제의 선진경제에 대한 디커플링 현상이 세계경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다가올 아시아경제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도 아시아시장을 새로운 경제성장기반으로 흡수하고, 투자와 교역의 주요 파트너로서 발전시킬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경제에 큰 고통과 시련을 던진 것에 틀림없다. 위기의 강도는 기존의 경제시스템과 가치, 그리고 산업지형도와 경제리더십을 뒤흔들 정도로 실로 깊고 광범위하다. 위기의 터널 속에서도 글로벌 위기 이후 불어닥치고 있는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통찰력을 갖고 스마트하게 준비함으로써 희망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KIP

.....
 위기의 터널 속에서도
 글로벌 위기 이후
 불어닥치고 있는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통찰력을 갖고 스마트하게
 준비함으로써 희망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관세평가와 이진가격제도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
정재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srkim@kipf.re.kr)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2005)인 우리나라도
2012년 이후에 형성될 후속
기후변화체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I. 서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기상이변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는 엘니뇨현상도 그 크기나 발생 빈도 및 지속성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동해안 지역의 경우 평균 해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국립수산진흥원(2005)이 발표하였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 속도는 최근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 2007)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25~9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를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평균 GDP의 0.6% 감축비용이,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GDP의 1.2%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체계에 대한 인위적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을 규정한 기후변화협약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2005)인 우리나라도 2012년 이후에 형성될 후속 기후변화체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시대, 국제적 자원 확보 경쟁 및 청정에너지의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는 등 국제환경 변화는 국내의 에너지소비

체계의 효율화와 동시에 친환경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새 정부의 미래성장 전략인 ‘녹색성장(green growth)’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policy instruments)으로서 적절한 조세 및 재정정책 마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1980년대부터 환경친화적 세제를 마련해 온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역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그만큼 환경세로써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0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목적세가 폐지 내지 정비되는 만큼, 환경세 또는 탄소세(가칭)를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탄소세의 도입 형태 및 적정 수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탄소세 도입의 장단점과 도입방식을 검토하며, 제Ⅳ장에서는 탄소세 도입시의 효과를 세수, 산업경쟁력, 그리고 소득 재분배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이다.

최근 새 정부의
미래성장 전략인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적절한
조세 및 재정정책의
마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Ⅱ. 탄소세 도입의 형태 및 적정 수준

1. 에너지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표 1>에서와 같이 유류제품에 대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하여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그리고 조세 이외에 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및 품질검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 관련 가격구조 및 조세체계는 본연의 조세정책적 목표로서 에너지효율성 촉진과 환경적 외부성의 내부화 기능이 미흡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한 저에너지가격정책으로
인하여, 환경 및 에너지효율성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표 1〉 에너지원별 과세현황 (2009. 1)

구분		휘발유 (원/ℓ)	등유 (원/ℓ)	경유 (원/ℓ)	중유 (원/ℓ)	LPG(원/kg)		LNG ¹⁾ (원/m ³)
						프로판	부탄	
관세 ²⁾	기본	5%				3%		3%
	할당(잠정)	1%				0%		1%
개별 소비세	기본	-	90	-	17	20	252	48.47
	탄력	-	63	-	-	14	275 (160.6원/ℓ)	33.93
교통 에너지 환경세	기본	475	-	340	-	-	-	-
	탄력	514	-	358.54	-	-	-	-
교육세 ³⁾		77.1	13.5	53.78	2.55	-	41.25 (24.09원/ℓ)	-
지방주행세 ⁴⁾		154.2	-	107.56	-	-	-	-
부가가치세		10%						
수입부과금		16				-		19.58
품질검사수수료		0.430				0.027		-
안전관리부담금		-	-	-	-	4.5		3.9
판매부과금		36 (고급)	-	-	-	-	62.283 (36.42원/ℓ)	-
세금합계 ⁵⁾	금액	869.02	160.63	639.70	81.51	157.33	510.71 (298.41원/ℓ)	101.37
	가격 점유율	63.9%	17.4%	48.5%	12.0%	10.0%	35.1%	13.7%
소비자 가격		1,360.90	925.42	1,318.05	681.60	1,576.58	1,453.93 (850.26원/ℓ)	741.85

주: 1) 09. 1월 셋째주 평균가격 기준(단, 중유는 11월 평균 가격 기준)
 2) 휘발유, 등유, 경유의 관세는 제품수입관세인.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해 사용하며 원유의 관세는 기본 3%, 할당 1%임.
 3)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단 프로판 및 LNG는 제외
 4)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
 5)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판매부과금
 1. 등유, LPG프로판, LNG 탄력세를 적용기간: 2008. 12. 1~ 2009. 2. 28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표 2〉에서와 같이 2005년 기준 5.9억톤으로 1990년 대비 90.1% 증가하였으며, 이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그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의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한 저에너지가격정책으로 인하여, 환경 및 에너지효율성(에너지원단위)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의 추진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부가가치 창출력 미흡, 에너지 절약 인식 부족 등으로 에너지원단위도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임을 <표 3>에서 알 수 있다.

<표 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 (2005)

관련 지표	우리나라	순위	비고
배출량	5.9억톤	6위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증가율('90~'04)	90.1%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1인당 배출량	12.28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증가율('90~'04)	69.5%	1위	2위 터키(36.2), 3위 스페인(35.6)
GDP당 배출량	0.59톤/천\$	8위	1위 호주(0.80), 7위 미국(0.61)
증가율('90~'04)	△32.9%	5위	1위 터키(13.4), 2위 포르투갈(21.4)

자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새로운 전환 - 기후변화 4차 정부종합대책』, 2007

우리나라
 현행 에너지 관련
 가격구조 및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환경오염(에너지소비)에 따른
 일차적인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체계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1), 2)} 비교

구분	1990년	2000년	2006년	연평균 증감율(%)		
				'90~'00	'00~'06	'90~'06
한국	0.22	0.25	0.22	1.2	△2.3	△0.1
미국	0.27	0.24	0.21	△1.2	△3.0	△1.7
일본	0.15	0.16	0.15	0.5	△1.4	△0.2
OECD	0.22	0.20	0.18	△1.4	△2.7	△1.9
중국 ³⁾	0.47	0.22	0.22	△10.2	△0.1	△4.6
EU(27개)	0.19	0.16	0.15	△1.7	△1.1	△1.5

주: 1) TOE/천\$, 2000년 불변 PPP기준

2) 구매력지수(PPP)는 국가별로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비용을 각국의 통화로 나타낸 가격비로서 각국 통화 구매력을 같게 한 통화비율로 국가간 효율수준 비교시 널리 이용되고 있음

3) 홍콩 미포함

자료: Energy Balances of OECD, NON-OECD Countries, IEA, 2008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소비 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 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경제활동에 내부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에너지 관련 가격구조 및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환경오염(에너지소비)에 따른 일차적인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체계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체계가 복잡한 데다 명확한 근거 없이 각종 에너지원별로 조세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비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사회적 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CO₂와 대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치가 68.4조원으로 GDP 대비 8.73% 수준이므로, 현재 징수되고 있는 GDP 대비 환경관련 세부담은 이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자선택의 왜곡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각종 감면으로 에너지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교통세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과세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그림 1]을 통해 GDP 대비 환경관련세수 비중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71%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인 2.92%이나, 탄소세를 일찍 도입한 북유럽국가들(핀란드 3.27%, 네덜란드 3.63%, 노르웨이 3.67%, 덴마크 4.65% 등)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이들 선진국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구조 및 조세체계에는 환경적 외부성이 아직 충분히 내재화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에너지효율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환경관련 세수가 1.67%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내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는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사회적 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CO₂와 대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치가 68.4조원으로 GDP 대비 8.73% 수준이므로, 현재 징수되고 있는 GDP 대비 환경관련 세부담은 이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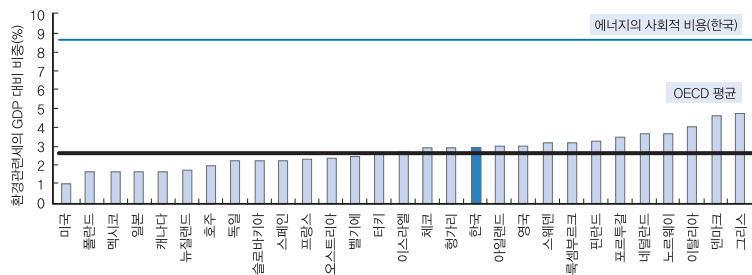
〈표 4〉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2004년 기준)

(단위: 억원)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비용(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연간)	합계(연간)
에너지부문	34조 1,426	15조 6,153	49조 7,579
전력부문	12조 8,496	4조 8,775	17조 7,271

주: 대기오염물질은 CO₂, NO_x, SO_x, PM, VOC 기준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7.11) 추정치

[그림 1] 환경관련세의 국제비교: GDP 대비 세수 비중 (2005년)



자료: OECD(2008),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7

2.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가. 기존 관련 문헌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과 적정 탄소세의 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 소득세 체계의 왜곡하에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이른바 이중배당효과(double dividend effect)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Bovenberg and de Mooij(1994), Goulder(1995), Bovenberg and Goulder(1996), Fullerton(1997), Parry et al.(1999) 등에 의하여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CO₂ 배출의 사회적 비용 대비 적정 탄소세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 효용함수 구조에서 최종소비재와 여가수요 사이의 약분리성(weak separability) 및 동조성(homotheticity)을 가정하는 특수한 경우(special case)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가정에 의존하는 경우에 탄소세의 도입은 세수입의 환류효과보다 조세간 상충효과가 더욱 커져 CO₂의 한계피해비용(marginal environmental damage, MED)에 대비한 탄소세(t_D^*)의 적정 수준 비율 $\Omega(= t_D^*/MED)$ 는 항상 1보다 작게 된다¹⁾.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정 탄소세의 도입 수준은 현실적으로 CO₂ 배출 재화와 여가수요의 상대적 대체성 및 기타 수요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또한 기존세제나 정부지출 조정 등 탄소세 관련 세수의 활용방식 등에도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조세체계의 왜곡이 존재하는 차선의 경제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탄소세의 적정 수준은 오염 배출의 한계피해비용(즉, 전통적 Pigouvian 수준)인 MED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되며, 오염배출재와 여가 소비의 상대적 대체탄력성(교차가격효과), 오염배출재의 수요탄력성 ϵ_D , 노동 공급탄력성 ϵ_U , 기존 조세체계의 소득세율 t_L , 그리고 배출량 총량 할당에 따른 기업 초과이익의 세율 t_{II} 등 각종 주요 매개변수 및 정책변수들의 관계 및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²⁾. 가령 이러한 경우에 한계피해비용 대비 신규 탄소세의 적정 수준의 비율(t_D^*/MED)에 관한 보다 일반화된 세율 공식은 다음과 같이 Pigou적 요소와 Ramsey적 요소의 적정 조합으로 구성된다(Kim, 2002; West and Williams, 2007).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정 탄소세의 도입 수준은
현실적으로 CO₂ 배출 재화와
여가수요의 상대적 대체성 및
기타 수요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 이러한 경우 Goulder(1995)와 Bovenberg and Goulder(1996)에 따르면 Ω 는 '한계공적부담비용(marginal cost of public fund; MCPF)'의 역수로서 표현되므로 그 값은 항상 1보다 작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약분리성 및 동조성을 가정하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적정 탄소세 수준은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비용에 따른 MCPF를 1.07에서 1.25 사이로 가정할 경우 오염 배출의 한계피해비용 MED 대비 대체로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 여기서 분모의 항 (+M)은 기존 조세체계 t_L 의 왜곡비용에 따른 '한계공적부담비용(marginal cost of public fund; MCPF)'을 의미한다. 또한 효용함수의 약분리성 및 동조성을 가정하는 선행 연구에서는 $\phi = 0$ 이나, 이 값은 현실적으로 0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탄소세의 적정 수준은 에너지원별 여가수요와의 대체탄력성과 에너지원별 수요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CO₂ 배출 1톤당 한계피해비용의 약 60~1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mega(= t_D^*/MED) = \frac{1}{(1+M)\left(\frac{\epsilon_D - \phi}{\epsilon_D}\right)} = \frac{1}{[1 - [t_L/(1-t_L)]e^U]^{-1}\left(\frac{\epsilon_D - \phi}{\epsilon_D}\right)} \quad (2.1)$$

또는

$$\Omega(= t_D^*/MED) = \frac{1}{(1+t_{\pi}M)\left(1 + \frac{M(\phi - t_{\pi})}{1+t_{\pi}M} \frac{1}{\epsilon_D}\right)} \quad (2.2)$$

여기서 $M = [1 - [t_L/(1-t_L)]e^U]^{-1} - 1$ 은 국가별로 상이한 기존 소득세 체계의 한계초과부담(marginal excess burden)의 크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탄소세 도입에 따라 세수중립적으로 기존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세제개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에 적정한 탄소세의 수준을 CO₂ 배출의 한계피해비용의 크기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식 (2.1)에서 국세통계연보와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참조하여 이철인(2004, p.153)과 같이 소득세의 한계실효세율의 기본치는 15%로, 노동공급탄력성은 Stuart(1984), Browning (1987), Russek(1996), Fuchs, Krueger and Porterba (1998) 등 관련 주요 문헌에서 제시하는 0.1에서 0.3 사이의 평균치로서 0.2를 가정한다. 또한 에너지수요탄력성은 Pindyck(1979), Berndt and Wood(1979), Griffin and Gregory(1981), Jorgenson and Wilcoxon(1993) 등 에너지수요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는 0.5에서 1.5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탄소세의 적정 수준은 개별 에너지상품과 여가수요의 약분리성(weak separability)을 가정하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수준(가령, 오염의 사회적 피해비용의 70~80% 정도)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 [그림 2]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탄소세의 적정 수준은 에너지원별 여가수요와의 대체탄력성과 에너지원별 수요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CO₂ 배출 1톤당 한계피해비용의 약 60~1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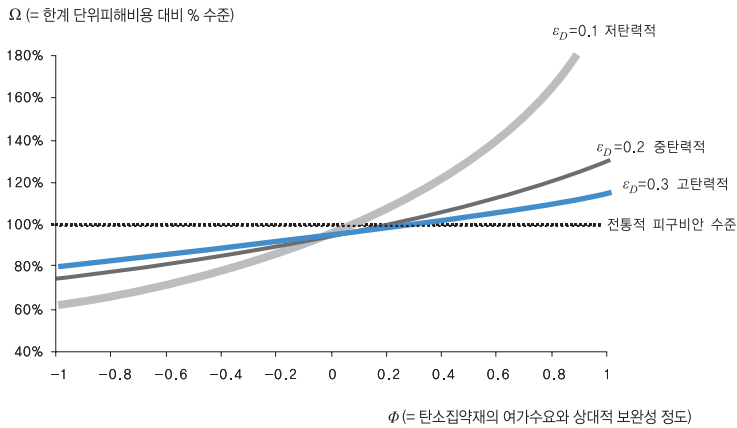
한편, 최근의 관련 문헌들은 여러 가지 가정하에 각종 요인들을 감안하여 CO₂ 배출의 가격(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가격)의 적정수준을 추정하였는데, 대체로 CO₂ 톤당 \$5~\$85 수준으로 다소 광범위하다. 가령 Tol(2007)의 경우는 CO₂ 톤당 \$5~\$20으로, Stern(2007)은 CO₂ 톤당 약 \$85로 추산하였다. 그리고 다소 포괄적 추정치로 Nordhaus and Boyer(2000)와 Nordhaus(2008)

3)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대체탄력성 및 각종 관련 탄력성의 계량경제학적 실증 분석에 기반한 적정세율의 추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는 CO₂ 톤당 \$9.5~\$2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욱이 Pizer(2002)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Nordhaus가 산출한 적정수준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Weitzman(2008)은 불확실성하에서 탄소에 대한 사회적 적정 가격을 CO₂ 톤당 \$50로 추산하였으며, 이는 인플레이션하에서 세율을 일정 비율 물가에 연동하여 상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06년에 173.6백만TOE로 1990년대(75.1백만TOE)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3배 이상 높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보여주었다.

[그림 2] CO₂ 배출의 한계피해비용 대비 적정 환경세 수준
(세수중립적 세계개편 시나리오)



나. 사회적 비용의 추정

본절에서는 전통적인 피구비안 수준(Pigouvian level)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탄소세 적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휘발유, 경유, 부탄, 등유, 프로판, LNG, 중유, 무연탄, 유연탄 등 각종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피해비용(MED)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구성되는 환경오염의 피해비용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을 살펴보면,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06년에 173.6백만TOE로 1990년대(75.1백만TOE)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3배 이상 높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보여주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최종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1998년에 8.5%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5〉 최종에너지부문별 소비추이 전망

(단위: 백만TOE)

구분	1990	1998	2006	2010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90~'06	'06~'10	'10~'30	'06~'30
계	75.1	132.1	173.6	190.2	225.4	245.1	5.4	2.3	1.3	1.4

출처: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그리고 에너지부문의 CO₂ 배출 전망을 살펴보면, 2005~2010년 사이 연평균 약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2020년 1.8% 증가, 2020~2030년 1.6% 증가로 점차 증가 추이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에너지부문 CO₂ 관련 주요 지표 전망

(단위: 백만TOE)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항목	단위						'05~'10	'10~'20	'20~'30
CO ₂ 배출량	백만 tCO ₂	499.8	567.6	603.9	676.1	789.8	2.6	1.8	1.6
GHG/인	tCO ₂ /인	10.34	11.51	12.14	13.53	16.02	2.2	1.6	1.7
GHG/GDP	tCO ₂ /백만원	0.70	0.62	0.55	0.51	0.40	-2.1	-2.1	-1.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현재 앞의 〈표 4〉에서와 같이 CO₂ 배출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2004년을 기준으로 약 20조원에 달하며 에너지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인 탄소세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CO₂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구성된다.

〈표 7〉 에너지부문 CO₂ 배출에 따른 비용 추정

(단위: 백만TOE)

구분	총계	연료연소(부문별)					탈루성 배출		
		소계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광업, 농림어업, 가정/상업, 공공/기타	소계	석탄 생산	석유 및 천연가스
1990	78,905	77,185	12,105	26,121	13,507	25,452	1,720	1,529	191
1995	118,532	117,513	26,503	39,564	24,592	26,854	1,019	510	510
2000	139,684	138,283	40,105	45,170	27,746	25,261	1,402	382	1,019
2002	150,674	149,145	46,763	47,273	30,230	24,911	1,529	287	1,242
2003	153,350	151,757	48,165	48,037	31,186	24,369	1,593	287	1,306
2004	156,153	154,337	52,561	47,305	30,772	23,700	1,816	287	1,529
2005	158,694	156,817	54,458	47,169	31,255	23,935	1,878	255	1,623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배출 통계DB (<http://www.keei.re.kr>), 2006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세(가칭) 도입 또는 기존 에너지세의 강화 수준은 원칙적으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먼저 에너지의 CO₂ 배출량의 경우에 열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위당 배출량으로 계산할 경우, 열량이 높은 B-C유나 LNG등이 무연탄, 유연탄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세(가칭) 도입 또는 기존 에너지세의 강화 수준은 원칙적으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원별 CO₂배출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고유한 CO₂ 배출계수를 산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기서는 김승래 외(2008)에서와 같이 영국의 Cambridge Econometrics의 CO₂ 가격의 적용을 위해 에너지원별 IPCC의 탄소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⁴⁾.

〈표 8〉 연료별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 (2005)

연료	IPCC탄소배출계수×에너지열량환산계수×44/12	단위당 CO ₂ 배출량
휘발유(kℓ)	0.783×0.740×44/12	2.12(tCO ₂ /kℓ)
경유(kℓ)	0.837×0.845×44/12	2.59(tCO ₂ /kℓ)
등유(kℓ)	0.812×0.820×44/12	2.44(tCO ₂ /kℓ)
B-C유(kℓ)	0.875×0.935×44/12	3.00(tCO ₂ /kℓ)
부탄(kℓ)	0.713×0.637×44/12	1.67(tCO ₂ /kℓ)
프로판(천kg)	0.713×1.105×44/12	2.89(tCO ₂ /천kg)
LNG(천m ³)	0.637×0.955×44/12	2.23(tCO ₂ /천m ³)
무연탄(M/T)	1.100×0.460×44/12	1.85(tCO ₂ /M/T)
유연탄(M/T)	1.059×0.595×44/12	1.06(tCO ₂ /M/T)

주: 이산화탄소배출량 추정시 에너지열량환산계수는 순발열량 적용
 자료: <http://co2.kemco.or.kr/> 자료 수정

4) 에너지원별 CO₂ 배출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로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만든 배출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IPCC 계수의 경우 석유환산(TOE)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연료별 에너지열량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연료별 물량단위에 맞게 재추산하여 사용한다.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탄소의 함량에 따라 화석 연료의 가격에 부가되는 부과금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McKinsey의 Antonio Volpin 및 영국의 Cambridge Econometrics의 분석에 따르면 2008~2012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톤당 25유로(31,828원)⁵⁾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이용하여 CO₂ 배출비용을 산정⁶⁾하였다. 에너지원별 단위당 CO₂ 배출량에 그 배출권 가격인 31,828원/tCO₂를 곱하면 CO₂의 에너지원별 단위당 배출비용을 <표 9>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표 9> 에너지원별 단위당 CO₂ 배출비용 추정

연료	단위당 사회적 비용	
휘발유	$2.12 \times 31,828 / 1000 =$	67원/ℓ
경유	$2.59 \times 31,828 / 1000 =$	82원/ℓ
등유	$2.44 \times 31,828 / 1000 =$	78원/ℓ
B-C유	$3.00 \times 31,828 / 1000 =$	95원/ℓ
부탄	$1.67 \times 31,828 / 1000 =$	53원/ℓ
프로판	$2.89 \times 31,828 / 1000 =$	92원/kg
LNG	$2.23 \times 31,828 / 1000 =$	71원/m ³
무연탄	$1.85 \times 31,828 / 1000 =$	59원/kg
유연탄	$1.06 \times 31,828 / 1000 =$	34원/kg

자료: 김승래 외(2008)

Ⅲ. 탄소세의 장단점 및 도입방식 검토

교토의정서는 가입국들이 감축해야 할 정량적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tradable permit) 시장의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제도 설계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거래비용이 높고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에 수반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탄소세의 활용을 촉구해왔다. 탄소세는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행정비용이 적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탄소의 함량에 따라 화석 연료의 가격에 부가되는 부과금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 탄소세의 적정수준은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소위 피구비안 수준(Pigouvian level)에서 결정된다. 탄소세 부

5) 2007년 평균 1유로 = 1,273.12원으로 가정

6) 이산화탄소의 경우 조기시상, 질병 등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하여 배출권 가격을 사용한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환경오염비용의 변화액이라기 보다는 기업체의 한계저감비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변화액의 추정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효율적으로 총 저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염원인자 개개인은 탄소세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세의 역진적인 성격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탄소세의 장점이 단지 오염을 줄이는 것이라면 환경기준 설정이나 직접 규제방식보다 더 큰 유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탄소세 부과와 장점은 총 저감비용 최소화와 오염 저감의 지속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수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탄소세 부과는 오염원인자에게 기술진보 유인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술진보는 오염 저감비용을 시간에 따라 더욱 절약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환경관련 세제는 정부에 보통세나 환경관련 목적세로서의 세수를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관련 세수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정부의 각종 녹색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에 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탄소세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감축목표, 구체적 세율 결정, 배출량 거래제와 연계, 불확실성 및 정보의 문제, 소득재분배, 국제경쟁력의 보완 문제와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전통적인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최근 OECD의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 탄소세제에 대하여 더욱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탄소세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감축목표, 구체적 세율 결정, 배출량 거래제와 연계, 불확실성 및 정보의 문제, 소득재분배, 국제경쟁력의 보완 문제와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1. 부과방식의 해외사례

가. 유럽국가

유럽국가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대체로 전반적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소득 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즉,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높아진 세부담을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를 취하여 환경관련 세를 강화하는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을 단행한 유럽국가들은 <표 10>에서와 같이, 탄소세 도입 당시에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 소득관련 세수비중이 소비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했던 국가들의 탄소세 도입 당시 세수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국가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대체로 전반적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소득 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세수중립적 세계개편을 단행하였다.

〈표 10〉 EU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당시와 세부담 구조 비교

(단위: %)

	핀란드 (1990)	네덜란드 (1990)	스웨덴 (1991)	노르웨이 (1991)	덴마크 (1992)	독일 (1992)	한국 (2006)
소득세 ¹⁾	43.1	32.2	37.3	35.5	56.9	31.9	29.5
개인소득세	38.5	24.7	34.2	25.8	53.6	28.0	15.2
법인소득세	4.6	7.5	3.1	9.7	3.3	3.9	14.3
사회보장기여금	21.7	37.4	28.6	25.9	3.1	38.4	21.0
소비세 ²⁾	32.6	26.4	26.9	34.9	32.4	26.9	32.6
부가가치세	19.4	16.4	16.6	17.4	19.9	16.5	25.9

주: 1)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1000)

2) Taxes on goods and services(50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특히 이들 국가 중에서 개인소득세 관련 세수가 소비세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덴마크의 경우, 환경세를 도입한 이후 세수 비중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탄소세가 도입될 당시 소득세 비중이 52.7%에서 2006년에는 39.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부가가치세나 환경세(green tax)는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덴마크의 조세구조 변천 (1993~2007)

(단위: %)

	1993	1994	1997	1998	2002	2006	2007
소득세 ¹⁾	52.7	48.4	44	42.7	42.7	39.6	41.1
사회보장기여금	2.3	2.2	2.1	2.1	2.5	2.1	2.0
VAT	20.2	20	20.2	20.3	20.6	21.4	21.8
Green taxes	7.3	8.2	9.3	9.9	9.9	9.5	9.2
기타 ²⁾	17.5	21.2	24.4	25.0	24.3	27.4	25.9

주: 1) municipality, church, county 포함

2) 자본이득세, 상속증여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 포함

자료: Danish Ministry of Taxation, 2008

이러한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환경규제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원에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동시에 부과하였다. 탄소세의 경우 탄소 함유량에 따라 일정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탄소세 세율은 기존의 에너지세에 비하여 1/5~1/1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리고 환경관련 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거두어들인 세수는 특히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R&D 촉진을 유도해 나가는 데 활용하였다.

〈표 12〉 탄소세 도입 국가들의 세율 비교¹⁾(2008년 2분기 기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²⁾	노르웨이
도입연도		1990	1991	1992	2001	1991
세수 용도		일반재원	일반재원	일반재원	사회보험료 감면	일반재원
유종별 세율	저유황 연료유	103.2원/kg	102.9원/ℓ	63.1원/kg (10%는 환급)	-	109.8원/kℓ
	경질연료유	87.9원/ℓ	489.9원/ℓ	53.2원/kg (산업용·가정용 10% 환급)	-	109.8원/kℓ
	경유	86.9원/ℓ	489.9원/ℓ	52.3원/ℓ	-	-
	휘발유	76.9원/ℓ	367.0원/ℓ	48.2원/ℓ	-	163.8원/kℓ
	천연가스	32.5원/m ³	-	47.4원/m ³ (가정용만)	3.2원/kWh	-
	석탄	79.5원/kg	산업용 : 80.4원/kg 기타 : 321.5원/kg	52.1원/kg (산업용에 대해 50% 환급)	25.2원/kWh	99.9원/kg

주: 1) 환율('08. 7.)은 EUR : 1606.74원, SEK : 169.92원, DKK : 215.38원, PENCE : 20.27원, NOK : 199.71원
2) 영국은 기후변화세로 명칭함.

일본은 세계개혁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세제 위에 새로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으로 신규 환경세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세율도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세계개혁 차원의 환경세 세율의 10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후 지구온난화 대책의 경제적 수단으로서 환경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환경세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환경세의 구체안'을 발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환경세 구체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세는 유럽의 환경세와는 세율이나 세제 도입 방식 등에서 약간 다르다. 유럽, 특히 북구의 국가는 전체적인 세계개혁의 차원에서 환경세(탄소세)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유럽국가들의 환경세 세율도 일본의 안과 대비하여 대체로 높은 편이며,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높아진 세부담을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세계개혁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세제 위에 새로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으로 신규 환경세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세율도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세계개혁 차원의 환경세 세율의 10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현재도 일본 기업은 에너지 절감 제품의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새

일본은 국제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완화를 위해 다양한 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하고 있다.

로운 부담을 안게 될 경우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세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개혁 차원이 아닌 단순히 기존의 세제 위에 세목을 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환경세의 도입이 증세론과 연결되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하고 있다. 철강 등 제조용의 석탄, 코크스, 농림어업용 A중유 등은 면세 조치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대규모 업체의 경우 정부와의 자주적 감축협약(voluntary agreement, VA)의 이행 실적에 연계하여 80%까지 세부담을 경감해준다. 그리고 운수사업 대책으로 경유 등에 관하여도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자를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에 관하여 면세점(免稅點)을 설정하였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소매 사업소가 소비한 석탄, 중유, 천연가스는 비과세하였고, 저소득자를 위해서 등유에 관하여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 밖에도 가솔린 등 화석연료의 수출을 면세하고 있고, 발전용 석탄에 대해서 면세정책을 취하고 있다.

〈표 13〉 일본의 에너지원별 환경세(안) 세율 변화

(단위: 엔/단위량)

에너지원	단위	세율	
		2004년	2008년 ³⁾
석탄	kg	1.58	1.58
휘발유	ℓ	1.52	1.52
등유	ℓ	0.82 ¹⁾	1.63
경유	ℓ	0.86 ¹⁾	1.72
제트연료	ℓ	0.81 ²⁾	1.61
중유	ℓ	1.77, 1.83	1.77, 1.96
천연가스	kg	1.76	1.76
LPG	kg	1.96	1.96
도시가스	m ³	1.38	-
전기	kWh	0.28	-

주: 1) 세율을 일률적으로 1/2로 경감
 2) 항공기제트연료만 적용, 업무용 제트연료는 1.61엔 적용
 3) 전기, 도시가스는 발전·가스사업자가 이용하는 화석연료에 대해 과세
 자료: 環境省, 『環境税の具体案』, 각 연도

2.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유럽국가들이 탄소세 도입 당시의 세수비중에서 소득관련 세수가 높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과 비교해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2006년 기준 소득관련 세수가 총세수 대비 29.5%를 차지하는 반면, 소비세 비중은 32.6%로 나타나고 있어,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을 단행한 유럽국가들과 비교해서 간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직접세의 감세와 함께 환경세 강화를 추진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조세중립적 세계개편 방식과는 다소 다른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일단 직접세 인하와는 별도로 환경세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의 환경세 구체안과 유사하게 기존의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⁷⁾.

기존의 에너지세제와는 별도로 ‘명시적인’ 탄소세 도입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세체계와는 별도로 탄소세와 같이 명시적으로 신규 세목을 신설할 경우, 기존 과세베이스의 조정없이 별도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충실하게 과세할 수 있다. 즉, 신규 세목을 신설할 경우, 기존 조세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과세표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탄소세 신설은 초기 도입 이후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목표의 변화 및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체계의 조정 및 정비가 용이하다. 탄소저감을 위한 조세부과의 가격신호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신규 세목(탄소세)으로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며, 그렇지 않다면 기타 요인에 의한 기존 에너지세제의 세율조정에 의해 탄소세 부과와 본래 취지가 상쇄되어버릴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세제와는 별도로 신규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할 경우 징수된 신규 세수를 탄소저감사업에 특정하여 세수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방식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기후변화협약의 대비라는 세목의 도입 취지를 특정화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신규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할 경우 오히려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는 세제의 단순화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그동안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목적세 중심으로 운용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기존의 각종 목적세의 정비가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의 환경세 구체안과 유사하게 기존의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7) 유럽국가들은 탄소세 도입으로 증대된 세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을 완화시키거나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낮추는데 사용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전반적 세제개혁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세제 위에 지구온난화대책에 따른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임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에너지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세제의 환경세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시적인 탄소세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IV.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

1. 세수 효과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세수는 GDP 대비 약 2.92%로 북구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본절에서는 CO₂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를 예측하여 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CO₂ 배출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에너지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에너지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때 부과되는 환경세제로 적정한 탄소세의 크기는 일차적으로 CO₂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구성된다. 앞의 <표 9>에서 산출한 에너지 단위당 CO₂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2007년 에너지평균가격을 가지고 탄소세의 예상세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CO₂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세와 세수

에너지원별	단위당 탄소세율(원)	2007년 평균 에너지가격 (원)	에너지가격 상승율 (%/100)	2007년 에너지사용량 (천kl, 백만m ³ , 천톤)	예상세수 (억원/년)
휘발유(원/ℓ)	67.5	1525.9	0.0442	9,608	6,483
경유(원/ℓ)	82.4	1272.7	0.0648	17,248	14,218
등유(원/ℓ)	77.7	936.5	0.0829	4,161	3,232
B-C유(원/ℓ)	95.5	491.3	0.1944	14,155	13,515
부탄(원/ℓ)	53.2	773.8	0.0687	7,552	4,014
프로판(원/kg)	92.0	1330.6	0.0691	3,160	2,907
LNG(원/m ³)	71.0	637.4	0.1114	18,183	12,906
무연탄(원/kg)	58.9	89.2	0.6600	9,696	5,709
유연탄(원/kg)	33.7	73.8	0.4565	84,430	28,458

주: 탄소세 부과 기본세율은 영국의 Cambridge Econometrics의 CO₂배출권의 가격(톤당 25EUR)을 적용하여 31,828원/t-CO₂로 가정

2.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03년 기준으로 산업부문(33.4%) 및 발전부문(31.4%)이 65% 가량, 그리고 수송부문(21.4%) 및 가정·상업 등 기타부문(13.8%)이 35% 정도이며, 최근에는 수송부문 및 가정·상업 등 기타 부문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 일부 국가주력 산업용 및 가정용, 생계형 사업용 등에 대해서는 탄소세적 기능 강화에 연동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일정정도의 관련 세부담을 경감(가령 50~80% 환급) 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산업별로 미치는 가격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Fullerton(1995), Wier et al(2005), Hassett et al(2007) 등과 같이 경제의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CO₂ 배출 1톤당 탄소세율 25유로(또는 31,828원)가 한국경제의 업종별 가격경쟁력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철강 및 금속제품, 운수보관, 비금속광물제품(시멘트), 석유화학, 비철금속, 수송기계(자동차 및 조선), 펄프지류 등의 원가경쟁력이 기타 업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환경세 도입시 기업의 세부담 중립 차원에서 법인세 등 기타 세제 혜택이나 경감조치를 적극 연계하거나, 아니면 비세제적 요소인 배출권거래제 도입,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이나 기타 자발적 감축협약(VA)과 병행하여 세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⁸⁾.

또한 에너지절약, 청정생산시설, 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장비, 시설, 건물에 대한 투자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최근 10% → 20%) 및 영구화하여 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제품 및 소재에 대한 각종 세금 경감(가령 관세 50% 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탄소세적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적 에너지세수의 활용은 산업부문의 각종 기후변화 대책의 미래 에너지 및 환경관련 저감·적응 사업이나 R&D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기타 취약계층 민생 보조나 일부 산업계의 법인세나 고용지원 부담완화에 사용 가능해야 한다.

환경세 도입시 기업의

세부담 중립 차원에서 법인세 등 기타 세제 혜택이나 경감조치를 적극 연계하거나, 아니면 비세제적 요소인 배출권거래제 도입,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이나 기타 자발적 감축협약(VA)과 병행하여 세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가령 기간산업인 철강, 금속소재, 석유화학, 비철금속,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산업계 업종별 배출권 거래제나 기타 자발적협약제도(VA)의 이행(CDM, 공정효율화, 기타 감축,적용 노력) 실적을 환경세 도입 및 강화시의 각종 세제 혜택이나 경감조치와 적극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주요부문을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그룹(산업·발전부문 vs. 수송·가정·상업 및 기타 하류부문)으로 나누어 차별적인 정책포트폴리오 믹스(policy portfolio mix)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 전력부문에서의 국내 배출권 할당제 및 거래제 도입, 기업별 강제할당, 그리고 (민관의) 자발적 감축 협약(VA) 강화, CDM이나 에너지효율개선, 오염저감 및 친환경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수송부문, 가정상업, 기타 하류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탄소세 도입 또는 탄소 비례 에너지세제를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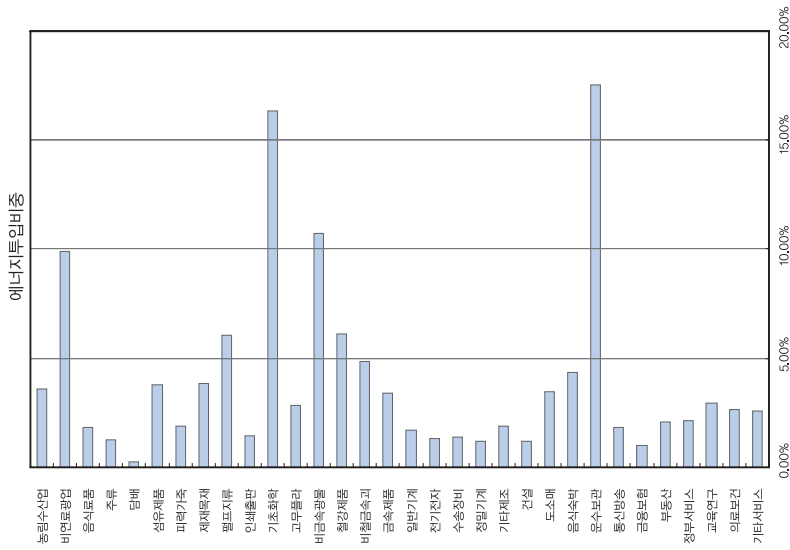
〈표 15〉 탄소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가격파급효과 (25 EUR/t-CO₂의 경우)

(단위: %/100, 2003 I - O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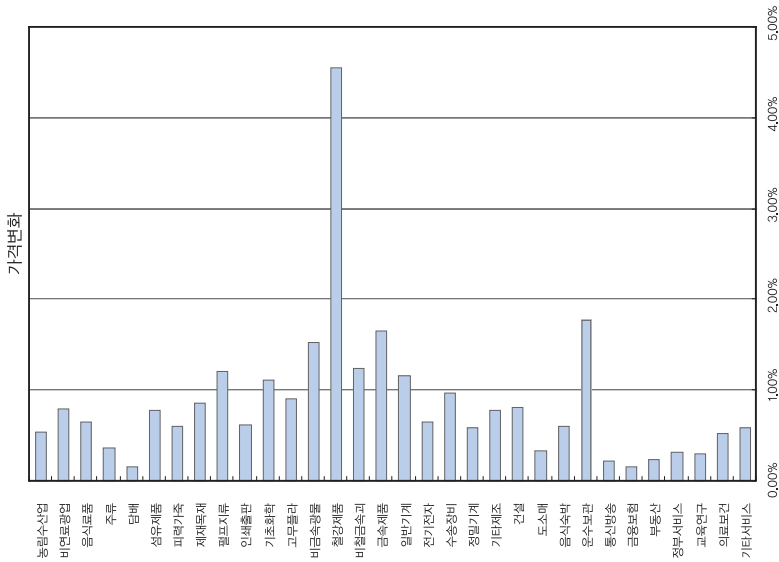
업종	매출액비중	부가가치율	에너지투입비중	가격변화
농림수산업	0.0226	0.5944	0.0360	0.0053
비연료광업	0.0018	0.6651	0.0989	0.0078
음식료품	0.0315	0.2108	0.0184	0.0064
주류	0.0041	0.6788	0.0128	0.0035
담배	0.0038	0.7568	0.0024	0.0014
섬유제품	0.0227	0.3165	0.0379	0.0077
피혁가죽	0.0031	0.3219	0.0189	0.0058
제재목재	0.0023	0.2839	0.0387	0.0084
펄프지류	0.0083	0.2892	0.0609	0.0119
인쇄출판	0.0081	0.3558	0.0143	0.0060
기초화학	0.0455	0.2273	0.1635	0.0110
고무플라	0.0168	0.3319	0.0281	0.0090
비금속광물	0.0135	0.3110	0.1070	0.0152
철강제품	0.0367	0.2011	0.0609	0.0453
비철금속괴	0.0073	0.2084	0.0484	0.0123
금속제품	0.0165	0.3613	0.0341	0.0163
일반기계	0.0311	0.3069	0.0173	0.0114
전기전자	0.0917	0.2825	0.0130	0.0063
수송장비	0.0607	0.2644	0.0142	0.0095
정밀기계	0.0046	0.2996	0.0117	0.0057
기타제조	0.0077	0.3361	0.0190	0.0076
건설	0.0812	0.4515	0.0121	0.0079
도소매	0.0459	0.6025	0.0345	0.0032
음식숙박	0.0307	0.4210	0.0433	0.0059
운수보관	0.0359	0.4476	0.1751	0.0177
통신방송	0.0248	0.6056	0.0184	0.0020
금융보험	0.0432	0.7102	0.0104	0.0015
부동산	0.1042	0.6797	0.0206	0.0022
정부서비스	0.0332	0.6974	0.0217	0.0030
교육연구	0.0375	0.7795	0.0291	0.0029
의료보건	0.0264	0.5257	0.0264	0.0050
기타서비스	0.0451	0.2811	0.0257	0.0058
열공급업	0.0010	0.3844	0.5198	0.0498
수력	0.0003	0.7187	0.0389	0.0018
화력	0.0080	0.4214	0.4492	0.0540
원자력	0.0056	0.7440	0.0490	0.0025
자가발전	0.0009	0.2484	0.6320	0.2772

주: '매출액 비중'은 전 산업에서 해당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부가가치율'은 해당산업의 부가가치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에너지투입비중'은 업종별 매출액에서 에너지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의미

[그림 3] 업종별 매출액 대비 에너지비용의 비중



[그림 4] 업종별 탄소세 부과 가격파급효과 (25 EUR/t-CO₂의 경우)



탄소세는 약간 역진적이나, 그 탄소세의 세수 일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나 세금감면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득재분배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음을 보였다.

3.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에너지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높으므로 다소 역진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CO₂ 배출 1톤당 탄소세율 25유로(또는 31,828원)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의 10분위별 세부담에 미치는 일반균형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이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계의 에너지소비 직접부담액과 비에너지상품 가격상승에 따른 간접부담액을 모두 합계한 총부담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에 따라 2007년 연평균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15만9천원, 소득10분위는 59만9천원, 그리고 가계전체 평균은 33만 9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세부담 변화의 귀착효과를 소득 분포에 관한 불평등계수인 Gini계수로 평가해보면 그 크기는 세전 0.3408에서 세후 0.3421로 약 0.383% 정도로 다소나마 악화된다⁹⁾.

그러나 소득분위별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총소비, 석탄제품, 가스, 전기의 소비 비중과는 달리, 수송연료인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 비중의 경우는 [그림 6]에서와 같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크게 높아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의 강화에 따른 역진성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전이나 역진성 완화에서 세율조정이나 특정 세금의 감면 내지 완화를 통한 조세지출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 등 세입측면에서의 전반적 에너지세제 강화는, 오히려 세출측면에서 에너지복지 등 기초에너지사용권 보장을 위한 '소득분배-중립적(distribution-neutral)'인 예산운용 방안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분배적 형평성 고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가령 최근 Callan et al.(2009)가 아일랜드에 대한 탄소세의 활용방식과 재분배 효과를 살펴본 결과, 탄소세는 약간 역진적이나, 그 탄소세의 세수 일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나 세금감면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득재분배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음을 보였다.

9) 여기서 Gini계수는 소득이 어느정도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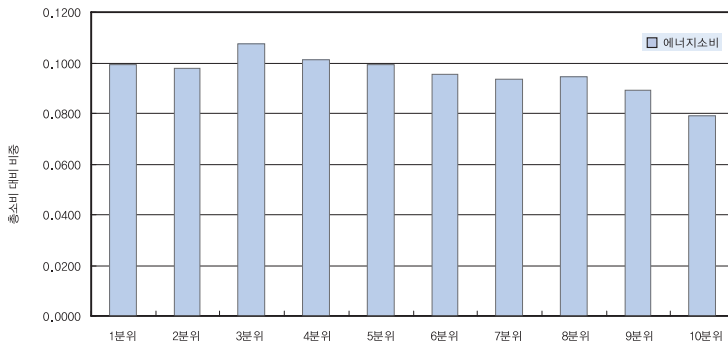
〈표 16〉 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25 EUR/t-CO₂의 경우)

(단위: 천원, 200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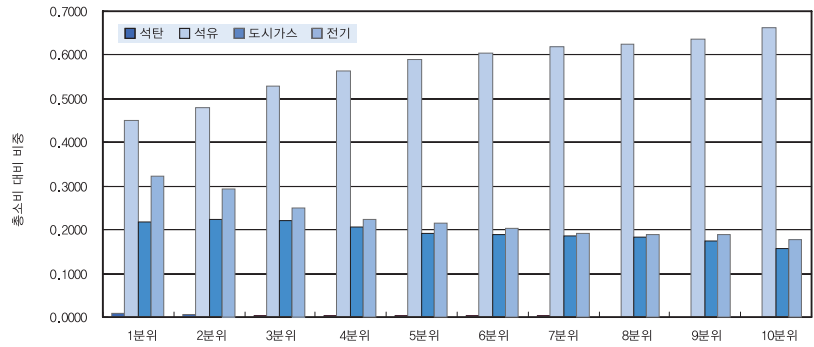
소득계층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경상소득	5702.4	13954.3	19838.2	24954.1	29901.4	35093.4	40654.7	47700.2	58424.3	87566.4	36380.2	
소비지출	11680.7	14954.8	18374.8	20907.4	23564.1	26605.5	28989.6	32043.0	36137.6	52035.5	26529.9	
〈추가부담액〉												
비에너지부담	68.3	85.3	102.4	118.8	132.1	149.9	165.0	175.9	204.3	294.9	150.3	
에너지부담	90.9	112.2	150.0	162.9	176.8	193.3	204.7	227.7	241.8	304.5	189.0	
석탄제품	7.4	5.1	3.5	5.5	3.4	4.7	2.8	1.6	2.8	1.7	4.0	
석유제품	37.9	50.6	75.3	86.3	99.9	111.2	121.4	137.0	147.7	196.6	107.7	
도시가스	28.1	36.5	48.3	48.8	49.9	53.2	56.2	62.3	62.9	72.1	52.5	
전기	17.4	20.0	22.9	22.2	23.6	24.2	24.4	26.9	28.4	34.2	24.8	
총부담	159.2	197.6	252.4	281.6	308.9	343.1	369.7	403.6	446.2	599.4	339.3	
비중	소득 대비	0.0279	0.0142	0.0127	0.0113	0.0103	0.0098	0.0091	0.0085	0.0076	0.0068	0.0093
	총소비 대비	0.0136	0.0132	0.0137	0.0135	0.0131	0.0129	0.0128	0.0126	0.0123	0.0115	0.0128

주: 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의 총 부담 변화를 지니계수로 살펴보면, 소득 대비 지니계수는 세전 0.3408에서 세후 0.3421로 0.383%증가, 그리고 총 소비 대비 지니계수는 세전 0.2288에서 세후 0.2292로 0.156%증가

〔그림 5〕 소득계층별 에너지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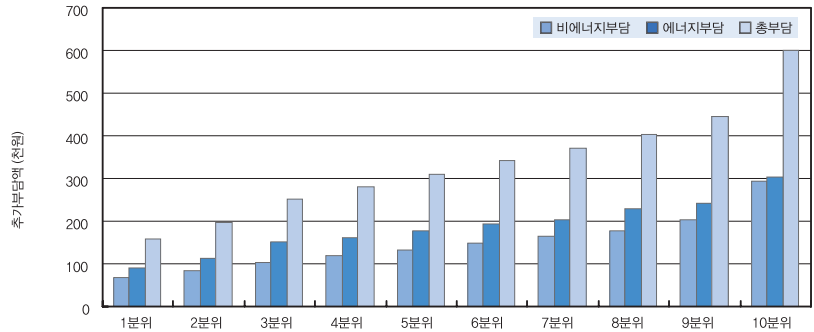


[그림 6] 소득계층별 에너지원별 소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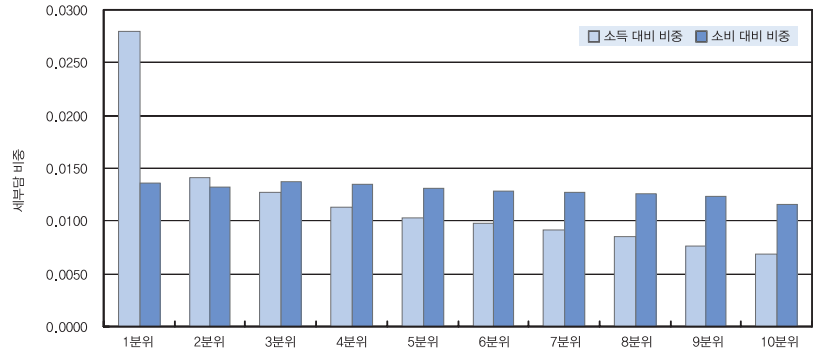


[그림 7] 탄소세 부과의 소득계층별 귀책(25 EUR/t-CO₂의 경우)

(a) 추가부담액



(b) 추가부담액의 소득 및 총소비 대비 비중



V. 정책시사점 및 향후 과제

최근 우리나라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low-carbon green growth)’을 국가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각종 관련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세제는 시장 기능과 외부성 교정기능에 더욱 충실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¹⁰⁾. 특히 정부는 과거의 단순한 명령과 통제(command & control)의 규제방식보다는 탄소세 도입 등 시장기반 수단(market-based instruments)을 통하여 가계 및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적정 가격신호를 일관되게 주고,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의 유인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향후의 세제개편 방향은 에너지세제의 탄소저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원별로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한다.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기존의 각종 목적세의 정비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세율은 사회적비용을 반영한 이상적 에너지세율에서 출발하되, 산업경쟁력, 서민부담 및 종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탄소세 도입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형 수출주력 업종에 집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 관련 세목과 세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새정부 출범 이후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대규모 감세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유럽의 조세중립적 차원의 직접세에 대한 추가적 인하 방식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탄소세 도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 기술 및 환경 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보조 등 재정지출 확대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탄소세 도입 이후 중장기적으로 세율의 점진적 강화가 필요할 경우 유럽의 사례에서와 같이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관련세 인하나 사회보장기여금 완화와 적극 연계하는 전반적 세제개편 차원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OECD나 EU Directive의 권고와 같이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입측면의 사전적인 세율조정보다는 사후적인 재정지원 및 직접 보조 등의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기존의 각종 목적세의 정비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10)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기타 특정의 정치적 요인들에 의거하여 유류세 등 에너지관련 세제를 일정기간 완화하는 것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며, 경제주체의 소비패턴 및 투자행위에 대한 가격의 신호 기능을 왜곡하는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중장기적으로
세율의 점진적 강화가
필요할 경우 유럽의
사례에서와 같이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관련세 인하나
사회보장기여금 완화와
적극 연계하는 전반적
세제개편 차원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재정지출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세입측면에서 전반적인 에너지세 강화는 세출측면에서의 '소득분배-중립적(distribution-neutral)' 인 예산운용 방안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세수의 운용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관련 재정지출의 소득보전효과를 높일 경우, 기존 에너지세제 체계의 효율개선의 파급 효과는 더욱 커져 분배구조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KIF**

<참고문헌>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새로운 전환 - 기후변화 4차 정부종합대책 (5개년 계획, 2008~2012)」, 2007. 12.
- 김승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재정포럼』, 11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7. 11.
- 김승래 · 강만옥, 「에너지 · 환경세제 개편방안」,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계개혁』, 한국재정학회 세계개편위원회(편), 도서출판 해남, 2008.6.
- 김승래 · 김정인, 「CGE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규제의 국내산업별 영향분석」, 『환경경제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환경경제학회, 1996.
- 김승래 외, 『기후변화협약 대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10.
- 김승래 외, 『세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8-12, 한국조세연구원, 2008. 12.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06.
- 한화진, 「교토의정서 체제의 의미와 정책 방향」, 『환경포럼』제8권 제5호, 2004. 7.

環境省, 「環境税の具体案」, 2004, 2005, 2006, 2007.

環境省, 「國內排出量取引制度のあり方について中間まとめ」, 環境省國內排出量取引制度検討會, 2008. 5

Bovenberg, A. and de Mooij, “Environmental Levies and Distortionary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4, 1994, pp. 1085~1089.

- Bovenberg, A.R. and L. H. Goulder, "Optimal Environmental taxation in the presence of other taxes: General Equilibrium Analyses," *American Economic Review* 86, 1996, pp. 985~1000.
- Callan T. et al., "The 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a Carbon Tax in Ireland," *Energy Policy* 37(2), 2009, pp. 407~412.
- Fullerton, D., "Environmental Levies and Distortionary Taxation: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87, 1997, pp. 245~251.
- Hasset K., A. Mathur, and G. Metcalf, "The Incidence of a U.S. Carbon TAX," *NBER Working Paper* 13554, Cambridge, MA, 2007.
- Kim, S.-R.,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Presence of Other Taxes,"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1: No.1, Article 4, 2002, pp. 1~25.
- Nordhaus, W.D. and J. Boyer, *Warming the World: Economic Models of Global Warming*, MIT Press, Cambridge, MA, 2000.
- Parry, I. "Pollution Taxes and Revenue Recycling,"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9, 1995, ss. 64~77.
- Parry, I., R. Williams, and L. Goulder, "When Can Carbon Abatement Policies Increase Welfare? The Fundamental Role of Distorted Factor Market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9, 1999, pp. 52~84.
- Stern 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American Economic Review* 98(2), 2008, pp. 1~37.
- West S. and R. Williams, "Optimal Taxation and Cross-Price Effects on Labor Supply: Estimates of the Optimal Gas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 2007, pp. 593~617.
- Weitzman, M., "On Modeling and Interpreting the Economics of Catastrophic Climate Change," *Dept of Economics Working Pap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2008.
- Wier M. et al., "Are CO₂ Taxes Regressive? Evidence from the Danish Experience," *Ecological Economics* 52, 2005, pp. 239~251.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제도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cheung@kipf.re.kr)

다국적기업의
거래규모 증가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 서론

경제의 개방화 및 세계화 추세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¹⁾의 출현과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를 증가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거래는 세계 교역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2007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23만여 법인사업자 중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은 9,890개로 전체 법인사업자의 4.3%에 불과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수입규모는 2007년말 기준 전체 수입금액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거래규모 증가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국적기업은 개별 국가의 세율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²⁾ 조정을 통해 소득과 비용을 국제적으로 배분하여 다국적기업 전체의 세후 순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단순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그림 1]과 같이 A국가에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있고, B국가에 해당 자회사가 있다. A국가의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B국가의 세율은 20%이다. A국에 있는 모회사가 제조원가 300인 제품을 B국에 있는 자회사에 800(혹은 500)에 판매하고 B국의 자회사는 해당 제품을 B국에 있는 여러 대리점들에게 동일하게 1,000에 판매하는 사례를 비교해 보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국에 있는 모회사가 B국에 있는 자회사에 800에 판매하는 경우(사례 1) 다국적기업의 전체 세후 순이익은 460인 반면, B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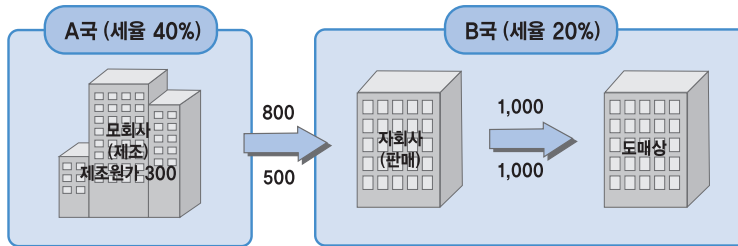
1) OECD(1995)에서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 기업의 그룹'을 다국적기업 그룹이라고 정의하고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인 기업'을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이라고 정의한다.

2)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즉 모회사와 자회사 등과 같이 관련기업(related parties) 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있는 자회사에 500에 판매하는 경우(사례 2) 다국적기업의 전체 세후 순이익은 520으로 증가한다. B국에 있는 자회사가 여러 대리점들에게 동일하게 1,000에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세후 순이익이 달라지게 된다. (사례 1)과 (사례 2)를 비교해보면, A국의 과세수입은 200에서 80으로 감소한 반면, B국의 과세수입은 40에서 100으로 증가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이진가격 조정으로 인해 해당국가의 세수입이 변화하는 사례이다. 하지만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60만큼의 세금이 감소하여 그 만큼의 세후 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은 관세와 내국세 신고에 대해서도 상반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동일한 수입물품이라도 관세 신고액은 낮추고 내국세 신고액(비용)은 높이려고 한다.

[그림 1] 다국적기업 거래예시



<표 1> 다국적기업의 예시(내국세의 경우)

구분		모회사(A국)	자회사(B국)	합계
사례 1 (800)	이 익	500	200	700
	세 금	200	40	240
	순이익	300	160	460
사례 2 (500)	이 익	200	500	700
	세 금	80	100	180
	순이익	120	400	520

다국적기업은 관세와 내국세 신고에 대해서도 상반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은 동일한 수입물품이라도 관세 신고액은 낮추고 내국세 신고액(비용)은 높이려는 인센티브가 있다. 그 이유는 거래가격(수입액)을 낮출수록 관세 납부액이 감소하고, 반대로 내국세는 거래가격(비용)을 높일수록 내국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단순한 예시를 이용하여 이를 설명해 보자. 앞선 예시에 추가적으로 B국은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율은 단순히 30%라고 가정하자. B국에서만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A국에 있는 모회사의

세수입 측면에서 관세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관세평가 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닌지에 초점을 두는 반면 내국세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내국세 비용을 과대 신고한 것이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세금, 이익 등은 앞선 예와 동일하게 변화가 없다. 따라서 B국의 변화에만 주목하면 된다.

A국에 있는 모회사가 B국에 있는 자회사에 800에 판매하는 경우(사례 1) 다국적기업이 부담하는 관세는 240인 반면, B국에 있는 자회사에 500에 판매하는 경우(사례 2) 부담하는 관세는 150이다. 거래가격(수입액)이 800에서 500으로 낮춤으로써 관세 납부액이 240에서 150으로 감소한다. 즉, 거래가격(수입액)을 낮출수록 관세 납부액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사례 1)과 (사례 2)의 내국세 납부액을 비교하면 거래가격이 800에서 500으로 낮춤으로써 내국세 납부액은 40에서 150으로 증가한다. 다시 바꿔 말해, 내국세는 거래가격(비용)을 높일수록 내국세 부담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관세와 내국세 납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인센티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다국적기업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내국세율, 관세율 등을 감안하여 전체 세후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³⁾

〈표 2〉 다국적기업의 예시(내국세와 관세의 경우)

구분		모회사(A국)	자회사(B국)	합계
사례 1 (800)	이 익	500	200	700
	내국세	200	40	240
	관 세	-	240	240
	순이익	300	-80	220
사례 2 (500)	이 익	200	500	700
	내국세	80	100	180
	관 세	-	150	150
	순이익	120	250	370

이러한 납세자(다국적기업)의 상이한 동기로 인해 세수입 측면에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와 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즉, 세수입 측면에서 관세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관세평가 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닌지에 초점을 두는 반면 내국세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내국세 비용을 과대 신고한 것이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양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동일한 거래에 대해 상이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적용되고 내국세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⁴⁾. 물론 해당 과세당국도 관세청과 국

3) 이 밖에 다국적기업들은 환율, 외환통제, 국내 규제 등도 고려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내국세율과 관세율만의 간단한 예시를 제시했다.

4) 우리나라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의 증가로 국내외 특수관계자 간의 대외거래가 증가함으로써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청으로 상이하다. 이런 상이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상이한 거래가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상이한 국제기구에서 상이한 과세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국제간 수입물품 거래의 관세 목적상 과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약⁵⁾에 근거한다. 우리나라도 WTO 회원국으로서 WTO 관세평가협약을 우리나라 관세법에 반영하고 있다⁶⁾. 반면, 다국적기업의 국제간 수입물품 거래의 내국세(법인세) 목적상 과세평가는 대부분 국가들이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OECD Guideline을 참고하고 있다⁷⁾. 아직까지 이런 상이한 과세가격 평가방법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화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다국적기업 간의 동일한 거래를 놓고 한 과세기관은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고, 다른 과세기관은 너무 낮다고 의심하는 등 두 과세기관이 이중의 잣대로 각각 평가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다. 따라서 관세와 내국세 과세가격 평가의 조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국제적인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관세와 내국세 과세관청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II. 관세평가 및 정상가격 평가제도 비교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의 평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라는 것이 영향을 주지 않은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이다. 즉,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 목표로 인해 WTO 관세평가협정과 OECD에서 제시한 평가방법⁸⁾⁹⁾을 비교해 볼 때, 서로간에 유사한 평가방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관세평가에서의 제2방법(동종동질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제3방법(유사수입물품 거래가격)은 제3의 거래를 기준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정상가격 산출에 이용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과 유사하다. 관세평가에서의 제4방법(국내판매가격 역산가격)과 정상가격 산출에 이용되는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은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판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의 평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라는 것이 영향을 주지 않은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이다.

- 5)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으로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WTO 관세평가협약이라 칭하고 있다. WTO 회원국은 모두 이 협정문을 국내법에 규정하여 준수해야 한다.
- 6)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 7) OECD는 국가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고자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Administrations”를 발표하였다. OECD Guideline은 참고사항으로 규정처럼 준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국제기준으로 이에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 8) 관세평가방법은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언급한 6가지 방법이 있다.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방법),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4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5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등이다.
- 9)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OECD에서 크게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원가산법(Cost Plus Method),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기타 합리적 방법 등이다.

관세평가는 물품 자체에 중점을 두어 거래당사자의 특징에는 관심을 두지 않지만 내국세평가에서는 수입물품보다는 거래당사자들의 특징을 더 고려한다.

단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게 비교될 수 있다. 또한 관세평가에서의 제5방법(산정가격)과 정상가격 산출에 이용되는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은 원가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하게 비교될 수 있다.

〈표 3〉 관세법과 국조법상의 평가방법 비교

구분	관세법상 평가방법 (Customs Valuation)	국조법상 평가방법 (Transfer Pricing)	
유사	1. 신고가격(실제 거래가격)	신고가격(실제 거래가격)	
	2. 동종동질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	전통적 가격 방법
	3. 유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4. 국내 판매가격 역산가격		
	5. 산정가격	2. 재판매가격	
4. 이익분할법	거래 이익법		
5. 거래순이익률법			
차이	이익률법은 사용 안함		
기타	6. 기타 합리적 방법(Fall back method)	6. 기타 합리적 방법 (Hybrid)	

그러나 대략적인 평가방법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역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과세당국 간 과세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관세평가는 물품 자체에 중점을 두어 거래당사자의 특징에는 관심을 두지 않지만 내국세평가에서는 수입물품보다는 거래당사자들의 특징을 더 고려한다. 내국세평가는 관계회사 간의 전체 거래를 보는 반면, 관세평가는 단지 수입물품의 가치만 집중적으로 고려한다. 이 밖에 관세 목적상 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비용 및 지급금액은 내국세에 의해 결정되는 동일한 물품의 원가(inventory value)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밖에 관세의 거래가격 평가와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평가에 대한 차이점을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4〉 관세와 이진가격의 평가기준 비교

	관세	이진가격
국제기준	• WTO 관세평가협약 - 법적 구속력	• OECD 이진가격과세지침 - 참고 및 권고
평가방법 적용	• 평가방법은 적용 순서에 따라 - 법적 구속력	• 적절한 평가방법 사용 - 법적 구속력 없음
국내법	• 관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기관	• 국경의 법집행 기관 - 관세청	• 내국세 과세집행 기관 - 국세청
과세 목적	• 국경을 넘는 재화에 대해 과세 - 국제적 관례, 전형	•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소득의 왜곡 방지
평가대상	• 개별 수입물품 자체 - 유형자산	• 기업의 전체 거래 - 유형 및 무형자산
평가고려요소	• 수입물품 가격 - 가치평가 - 가격	• 기업의 이윤 - 소득평가 - 소득
평가대상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경우	•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평가시기	• 수입시점	• 매매(소유권 이전)시점 - 과세연도 결산 후
환율 적용시기	• 수입신고 시점	• 회계 규정에 따름

우리나라 국조법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위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관세평가와 정상가격 산출에서 대략적인 평가방법이 유사하지만, 정상가격 산출에서 이용되는 이익률법은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평가방법이다.

특히, 내국세에서는 관세평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화에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되는 APA¹⁰⁾를 보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순이익률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 국조법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은 APA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 쌍방 APA에서는 1건에 대해서만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였을 뿐 나머지 쌍방 APA에서는 모두 거래순이익률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APA에서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절반 이상 사용하고 있다.

10) APA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제징정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되는 APA를 보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순이익률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표 5〉 우리나라 APA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현황(2007년)

(단위: 건)

정상가격 산출방법	일방 APA	쌍방 APA	합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	-
재판매가격법	-	-	-
원가가산법	3	1	4
이익분할법	1	-	1
거래순이익률법	9	6	15
합 계	13	7	20

자료: 국세청, 「2007 APA 연차보고서」, 2008, 9

〈표 6〉 미국 APA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현황(2007년)

(단위: 건)

산출방법	건수
CPM(operating margin)	87
Residual profit split	11
Comparable profit split	≤ 3
Cost with no markup	≤ 3
Cost Plus Method	≤ 3
Resale Price Method	≤ 3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not based on published market data	≤ 3
Other	≤ 3

주: CPM(Comparable Profits Method)은 거래순이익률법과 거의 동일한 산출방법으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자료: US Internal Revenue Service, Announcement and Report Concerning Advance Pricing Agreements, March, 2008.

〈표 7〉 캐나다 APA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현황

(단위: 건)

	종결	진행중	총계
TNMM	43	26	69
Profit Split	29	10	39
Resale Price	11	1	12
Cost Plus	14	14	28
CUP	19	10	29
합계	116	61	177

주: 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자료: 캐나다 CRA, APA Program Report 2007~2008, 2008.

〈표 8〉 호주 APA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현황

(단위: 건, %)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건	(%)	건	(%)	건	(%)	건	(%)	건	(%)
TNMM	14	(56.0)	13	(56.5)	19	(50.0)	14	(51.9)	23	(74.2)
Profit Split	5	(20.0)	3	(13.0)	9	(23.7)	3	(11.1)	2	(6.5)
Residual profit split		-		-		-	4	(14.8)	4	(12.9)
Resale Price	1	(4.0)		-	1	(2.6)	1	(3.7)		-
Cost Plus	4	(16.0)	1	(4.4)	2	(5.3)	3	(11.1)		-
CUP	1	(4.0)	5	(21.7)	5	(13.2)	2	(7.4)	2	(6.5)
Cost allocation		-	1	(4.4)	2	(5.3)		-		-
합 계	25	(100.0)	23	(100.0)	38	(100.0)	27	(100.0)	31	(100.0)

주: 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Advance Pricing Arrangement Program, 각 연도.

관세 혹은 내국세 목적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다음, 관세 및 내국세의 차이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Ⅲ. 관세평가 및 정상가격 평가제도 비교

1. 미국 IRC 제1059A조

동일한 이전가격에 대해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이 단일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이는 관세와 내국세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을 찾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과세기관이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상가격 범위를 찾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관세 혹은 내국세 목적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다음, 관세 및 내국세의 차이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059A조를 이용하고 있다.

제1059A조에서는 수입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자산 원가 및 재고가격을 산정할 때 관세 목적상 신고한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관세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내국세 과세 표준을 높게 신고하려는 인센티브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곧 내국세와 관세 목적의 과세평가가 동일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 의회의 입법취지에서조차도 내국세 및 관세의 회피에 따른 세수손실 방지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에 한정한다고 하고 있을 뿐 내국세 목적의 과세평가와 관세 목적의 과세평가가 동일해야 됨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에서도 관세와 내국세의 상이한 과세가격이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89년 미국 재무부는 미국 재무부 규정(§ 1.1059A-1)을 제정하였다. 재무부 규정(§ 1.1059A-1)은 관세평가의 조정(Adjustments to customs value)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관세평가액에 특정비용을 추가하여 조정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운송비용, 보험료, 조립비용 그리고 관세평가에 고려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으면서 내국세 과세에서는 포함된 비용 등이 관세평가 조정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1992년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제1059A조를 적용하더라도 관세평가보다 내국세 과세가격이 더 클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재무부 규정(§ 1.1059A-1)에 의해 납세자가 내국세 목적으로 특정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평가에서는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경상비, 행정비용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내국세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재무부 규정(§ 1.1059A-1)에 의해 관세평가에 고려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으면서 내국세 과세에서는 포함된 비용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또한 상이한 과세가격이 납세의무자의 부적절한 신고 혹은 부정합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제1059A와 같은 조항을 우리나라 국조법에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미국처럼 관세평가 조정항목으로 인해 내국세평가액이 관세평가액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관세평가 조정항목의 적용 여부 등으로 인해 미국처럼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닌 경우는 제1059A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세평가액이 관세평가액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무관세(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1059A조의 적용을 받지 않다. 그 이유는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제1059A조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내국세를 위해 관세평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한다면 대부분의 수입물품들이 FTA로 인해 무관세(0%)로 수입되게 된다. 따라서 한·미, 한·EU FTA 등으

로 제1059조A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미국과 EU에 위치한 다국적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들 간의 거래에 대해 제1059조A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 제도적 실행방안

국제적으로 상호 조화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정상가격이 조화되기 위해 우리나라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

제도적 실행방안으로 우선 관세 및 내국세 과세기관 사이의 상호 협조를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 간 정보교환, 양 기관의 공동 사전심사, 그리고 양 기관의 공동조사 등을 들 수 있다.

가. 정보교환

다국적기업은 이전거래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납세신고를 해당 세목에 따라 해당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된다. 즉, 관세와 내국세에 대해 담당 과세당국에 각각 납세신고를 한다. 이런 이유로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당국은 납세정보의 상호 교환 및 정보교류가 없다면 납세자의 납세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과세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OECD는 내국세와 관세 과세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줄이고 특히, 기관이 분리된 국가에서는 원활한 정보교환이 서로의 조화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 간의 과세정보 교환 필요성은 양 기관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국제조세의 이전가격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정보교환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공감대 속에서도 그동안 정보교환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아마도 납세자의 납세정보 보호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¹¹⁾.

따라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교환가능한 정보 범위에 대한 상호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구체적이고 한정된 정보교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 과세기관으로 정보교환에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도적 실행방안으로 우선 관세 및 내국세 과세기관 사이의 상호 협조를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 간 정보교환, 양 기관의 공동 사전심사, 그리고 양 기관의 공동조사 등을 들 수 있다.

11)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과 관세법(제116조)에 의해 납세자의 납세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비밀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교환가능한 정보 범위에 대한 상호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캐나다에서는 양 과세기관 간의 정보교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캐나다 세관에 제공한 정보는 캐나다 세관(Canada Border Service Agency)에서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평가 혹은 원산지 확인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세관에서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한 정보는 정상가격 산출에만 사용해야 한다.

캐나다의 국내법으로 캐나다 국세청에서 캐나다 세관으로, 캐나다 세관에서 캐나다 국세청으로의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물론 비밀준수의 무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상호 혹은 다자간 조약에 의해 금지된 정보라면 양 기관 간의 MOU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MOU에 의해 제공받은 정보라 하더라도 사생활보호법, 정보보호법, 혹은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 제재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미국은 내국세법(IRC) 제6103(l)(14)조를 통해 미국 세관 조사에서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미국 세관의 조사결과 관세, 내국세 및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세수의 누락분을 추가 징수하기 위한 기타의 조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납세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세관이 관세심사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내국세 세무조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호주의 양 과세기관은 1997년 6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ustralian Customs Service and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를 체결하여 다국적기업의 가격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이전가격 문제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 밖에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필리핀 등에서도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하여 내국세 기관 및 관세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결론적으로 정보교환은 양 과세기관 간의 정상가격에 대한 상호조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시발점이며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 과세기관 간의 이러한 정보교환은 부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양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과세금액의 불일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탈루 의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된다.

12) WCO/OECD Conference on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

나. 공동 사전심사 및 조사 가능성

양 과세기관 간의 공동으로 사전심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 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전자격의 정상가격과 관세평가의 거래가격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동 사전심사 혹은 공동조사는 이전자격 문제에 대한 접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과세당국 간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납세와 관련된 비용 및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과세기관의 공동 사전심사 혹은 공동조사를 통해 단일 과세가격으로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양 과세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전자격 및 과세가격이 조정될 여지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쌍방(Bilateral) APA¹³⁾에 신청된 경우 양 국가 간의 이전거래이기 때문에 이전자격은 내국세와 관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쌍방 APA에 신청된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 양 과세기관의 공동 사전심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청에서 ACVA¹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APA를 신청한 기업에 ACVA도 함께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쌍방 APA를 신청한 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APA와 ACVA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동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납세자인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제안되고 있으며, 양 과세당국도 공감하고 있다. 이전자격과 관련된 조사를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당국에서 시차를 두고 각각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중복 낭비적인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과세기관의 공동조사는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얼마나 큰 사안이기에 양 과세기관에서 동시에 공동조사를 실시할까라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공동조사 사실을 통보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도 중복 조사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기회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양 과세기관 간의 이러한 정보교환은 부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양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과세금액의 불일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탈루 의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13) 쌍방(Bilateral) APA는 납세의무자인 다국적기업이 특정 거래와 관련된 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APA를 동시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자회사와의 이전거래에 대해 APA를 신청할 때 우리나라 국세청뿐만 아니라 미국의 IRS에게도 APA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이를 쌍방 APA라고 한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은 미국 IRS와 함께 서로 협조를 통해 이전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이와 달리 해당 다국적기업이 일방의 과세관청에만 APA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이런 경우 일방(Unilateral) APA라고 명명한다.

14) ACVA는 관세 과세가격 사전약정제(Advance Customs Value Arrangement)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에 대해 사전에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에서는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의 거래상황 판단방법

WTO 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에서는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거래상황을 둘러싼 상황(Circumstances of Sale)을 검토하는 '거래상황 판단방법', 그리고 비교가격(Test Values)이 거래가격에 근접하는지를 평가하는 '비교가격방법'이다.

WTO 관세평가협약은 거래상황 판단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예시(example)로 제시하고 있다¹⁵⁾. 첫째, 특수 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둘째,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셋째, 대표적인 기간(예를 들어 1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얻어진 기업의 이윤(a profit)과 모든 비용(all costs)을 합한 금액인 전반적 이윤(over all profit)을 해당 가격이 확실히 되찾을(recovery)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우이다. 이들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WTO 관세평가협약에서는 비교가격(Test Value)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특수 관계가 없는 동일한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또는 둘째, 관세평가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들과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이에 근접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관세 목적상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 규정을 이용하여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의 경우 동일한 브랜드의 물품을 동일한 수입국에 특수 관계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코카콜라 모회사가 코카콜라 원액을 자신의 자회사에게만 제공하고 다른 기업에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상황 판단방법의 첫 번째 예시와 비교가격방법의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덧붙여 거래상황 판단방법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대부분 실무적으로 가격비교(Test Value)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충으로 관세목적상 특수관계의 영향 유무를 판단함에

15) WTO 관세평가협정 Annex 1 Interpretative Notes, Note to Article 1

있어서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정상가격을 찾아낸다는 측면에서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인정 원칙은 OECD Guidelines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관세 목적상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정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OECD Guidelines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기업간 정상가격 원칙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관세당국은 거래가격에 관해 보다 직접적인 관련 정보가 가능하지 않으면 OECD Guidelines에 규정된 방법 중의 하나로부터 도출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관세평가 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⁶⁾. 캐나다에서는 이와 함께 OECD Guidelines에서 제시된 방법들 중 관세 측면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방법들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¹⁷⁾.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독립거래로 인정되는 거래상황을 2가지만¹⁸⁾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 규정대로 3가지 사항에 대해 법에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면 캐나다는 OECD Guidelines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독립거래로 인정되는 거래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제시한 3가지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3가지를 모두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제시하는 거래상황 판단방법이 3가지 예시(example)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캐나다처럼 추가적인 독립거래로 인정되는 거래상황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현재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OECD Guidelines 등을 감안하여 독립거래로 인정되는 거래상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WCO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선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3가지를 모두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세계관세기구에서도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16) The CCRA will accept, for valuation purposes, a price paid or payable which is derived from one of the methods set out in the OECD's report, unless there is information on prices available which is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specific importations.

17) Canada Border Service Agency(2001).

18) ①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②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국제적으로도 WTO와 OECD에서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독자적인 과세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조화된 과세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I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이 증가하면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평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 원론적으로 동일한 이전가격에 대해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역시 관세와 내국세의 평가는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과세가격, 즉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의 과세가격을 산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그러나 단일가격이 원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관세와 내국세는 세목의 명칭이 다른 것처럼 과세목적이 상이하다. 관세는 물품 자체에 중점을 두어 수입물품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내국세에서는 수입물품보다는 거래당사자들의 특징과 관계회사 간의 전체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한다면 단일가격으로 조정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예외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세당국 간 과세목적이 상이하고 과세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 상이한 거래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관청도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상이한 거래가격이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WTO와 OECD에서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독자적인 과세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조화된 과세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전가격은 국제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가 국제적 기준 설정에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상호 조화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관세 혹은 내국세 목적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다음, 관세 및 내국세의 차이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방법, 즉,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059A조를 설명하였다. 미국의 제 1059A조는 내국세 신고의 비용을 관세 목적상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차이로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할 수밖에 없고, 이

런 상이한 과세가격이 납세의무자의 부적절한 신고 혹은 부정합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 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무관세(0%)로 수입되는 물품은 제1059A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이로 인해 향후 한·미 FTA, 한·EU FTA 등이 체결된다면 미국과 EU에 위치한 다국적기업들 간의 거래에 대해 제1059조A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과 국세청이 관세와 내국세 평가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양 과세기관의 상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실행방안으로 양 과세기관 간의 정보교환, 공동 사전심사, 그리고 공동조사 등을 제시하였다.

관세와 내국세에 대해 담당 과세당국이 다른 상황에서 양 과세기관의 납세정보의 상호 교환 및 정보교류가 없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과세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과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 기관 간 교환 가능한 정보 범위에 대한 상호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교환은 추가적으로 납세자가 양 과세기관에 신고한 과세금액의 불일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과세탈루 의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양 과세기관 간에 공동으로 사전심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 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진가격의 정상가격과 관세평가의 거래가격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동 사전심사 혹은 공동조사는 이진가격 문제에 대한 접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과세당국 간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납세와 관련된 비용 및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은 현재 다국적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이진가격의 이중결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이다. 그렇지만 한 시스템에서 결정된 과세표준이 다른 시스템에서도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양 과세기관이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상가격 범위를 찾아내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이진가격의 정상가격 산출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동일한 사양의 TV 가격이 판매처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일가격보다는 가격범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세평가는 그 동안 단일평가 금액에 익숙했지만, 이진가격에 대해서는 내국세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평가금액이 타당한 가격범위 안에 존재한다면 받아

공동 사전심사 혹은

공동조사는

이진가격 문제에 대한

접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과세당국 간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세평가는 그 동안 단일평가 금액에 익숙했지만,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내국세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평가금액이 타당한 가격범위 안에 존재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들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WTO 관세평가협정 규정대로 3가지 사항에 대해 법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OECD Guidelines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독립거래 인정 상황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제시한 거래상황 판단방법 2가지만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제도 운영의 폭을 너무 좁히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관세기구(WCO)의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독립거래로 인정되는 거래상황에 대해 추가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KIPF

<참고문헌>

국세청, 『2007 APA 연차보고서』, 2008.
 Australian Taxation Office,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Program, September 2007.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TRANSACTION VALUE METHOD FOR RELATED PERSONS(CUSTOMS ACT, SECTION 48) MEMORANDUM D13-4-5 Ottawa, April 9, 2001.
 Canada Revenue Agency, CRA APA Program Report 2006~2007.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 1995.
 US Internal Revenue Service, Announcement and Report Concerning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March 2008.
 WCO/OECD Conference on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 May 2006.
 WCO/OECD Conference on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 May 2007.

Report

정책토론투리포트



■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 본 원고는 2009년 4월 23일~24일 양일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 일 시 2009년 4월 23일(목) ~ 4월 24일(금)
- 장 소 서울 올림픽파크텔 4층 베를린홀
- 2009. 4. 23(목) 09:00~09:30 **개회사 및 축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축 사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 축 사 靳方軍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 09:30~11:30 **Session 1.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 사 회 자 이만우 고려대 교수
 - ▶ 발 표 자 (한국)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 付广軍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연구원
 - ▶ 토 론 자 (한국) 이 영 한양대 교수
(중국) 蔡文軍 내몽고자치구 지방세무국 부주임
- 11:30~13:00 한국조세연구원장 초청 오찬
- 13:00~15:00 **Session 2. 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방향**
 - ▶ 사 회 자 한상국 전북대 교수
 - ▶ 발 표 자 (한국)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중국) 劉 怡 북경대 교수
 - ▶ 토 론 자 (한국) 이철인 서울대 교수
(중국) 靳方軍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 15:00~15:30 Coffee Break
- 15:30~17:20 **Session 3. 과표양성화와 소득세 정상화 방안**
 - ▶ 사 회 자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 ▶ 발 표 자 (한국)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 陳文東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연구원
 - ▶ 토 론 자 (한국) 공용표 국제청 개인납세국 국장
(중국) 周曉軍 국가세무총국 소득세과
- 2009. 4. 24(금) 09:00~11:00 **Session 4. 경제위기와 소득세 정책**
 - ▶ 사 회 자 구정모 강원대 교수
 - ▶ 발 표 자 (한국)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중국) 靳方軍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 ▶ 토 론 자 (한국) 임병인 충북대 교수
(중국) 劉 怡 북경대 교수
- 11:00~11:10 Coffee Break
- 11:10~12:10 **종합토론**
 - ▶ 사 회 자 곽태원 서강대 교수
 - ▶ 토 론 자 (한국)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 靳方軍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劉 怡 북경대 교수
付广軍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연구원
- 12:10~12:30 **폐 회**



Session 1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주제발표 1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소득세의 주요 특징으로, 세부담의 누진도는 크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제항목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 현재 상태에서 세부담 누진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소득세 규모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축소하는 경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사업소득포착률을 제고하거나 소득공제 수준을 동결(또는 소폭으로만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폐지 시에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로 인해 야기되는 소득유형간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 악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득재분배 목적의 근로소득세 관련 소득공제 축소 시에는 사업소득포착률 제고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 유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공제수준이나 세율구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정기적으로 조정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증세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실질소득 증가분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을 보전하기 위한 물가상승 보전분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현행 체계에서

는 간헐적으로 소득세법을 개편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편체계하에서는 개편시에 수년간 누적되었던 세부담 조정압력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 대폭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과도한 세부담 경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008년말 세법개정을 통한 소득세 개편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2008년 말에 단행되었던 소득세 개편은 실효세부담률을 하락시키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증세효과를 중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누적효과를 일시에 해소하고자 함에 따른 충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제구간이나 한도, 세율구간 등을 대상으로 물가연동제를 실시하여 자동조절장치를 구축하는 방안에도 검토해볼 만하다.

주제발표 2

중국의 개인소득세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분석

付广军/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연구원

중국 국민경제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총체적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은 모두 뚜렷하게 제고되었다. 이와 동시에 일련의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바, 그 중 불공정한 소득과 분배,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현상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에만 의거해서는 철저히 해결할 수 없는바, 정부가 소득분배 영역에서 일정한 조절통제수단으로 조절해야 한다. 여기에서 세수수단은 소득분배를 조절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소득분배를 조절함에 있어서 주요 세목으로서 주민의 빈부격차를 억제하고 공정분배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경제발전수준 등 요인의 제약으로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세수소득의 6.98%(2007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의 성장속도를 가속화하고 중국의 전체 세수소득 가운데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려면 개인소득세 세제를 완비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실시함에 강도를 일층 높이는 동시에 개인소득세를 주축으로 한 세수분배의 조절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개혁과 완비에 있어 지난 시기는 주로 노임소득 공제비용기준 인상에만 관심을 두어 왔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개인소득세제를 완비하려면 반드시 개인소득세세율 및 등급차(級次) 설계에서의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개인소득세의 개혁은 재정소득요소를 고려해야 할 뿐더러 그 소득조절분배 기능 발휘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실정을 놓고 말하면 개인소득세율과 등급차를 합리하게 설정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세율을 간소화하여 소득분배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조절작용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 것이다.

토론요약

소득세 비중 높이려면 감면 및 비과세 줄여야

이영/한양대 교수

성명재 박사의 논문은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의 소득분배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높은 연구이다. 소득공제액을 바꿨을 때와 세율을 변화시켰을 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율인하에 대하여 학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하면서, 누진도 자체는 크나 소득분배효과는 작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소득세 비중이 작다는 것을 그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소득분배효과를 누진도와 소득세 자체의 크기로 구분하여, 누진도는 문제가 없지만 소득세 비중에 문제가 있어서 소득분배효과가 작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율이 높는데 소득세 비중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에서 감면 및 비과세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지적대로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이 소득분배효과가 낮은 원인이라면, 소득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결국 감면 및 비과세 조항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소득분배효과가 개선된 수치를 제시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수치와 조금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Luxembourg income study를 이용하여 계산한 경우 지니를 개선하는 정도가 약 9%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제문에서는 그 보다 작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Luxembourg income study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조세를 통해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정도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평균 10% 정도이고 미국의 경우 10% 정도, 우리나라가 약 3.6%, 유럽은 10% 이상으로 개선되는 나라가 많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평균적인 성향을 보면, 지출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적이전에 의한 개선효과가 조세보다 2.5~3.5배 정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출로 하는 것보다는 연금제도를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표 1〉 주요 선진국의 조세와 공적이전의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효과

국가	년도	지니계수		재분배 크기(지니계수 개선율, %)						재분배중 조세 기인 비중	
		사적 소득	가처분소득	조세	공적이전				전체 재분배비	공적 연금 제외 시	
					공적 연금	실업 보험	기타	공적 연금 제외 시			
(1)	(2)	(3)	(4)	(5)	(6)	(7)	(8)	(9)	(10)		
벨기에	1997	0.481	0.260	45.9	13.1	32.8	22.2	4.6	6.0	28.5	55.3
덴마크	1992	0.426	0.236	44.6	10.6	34.0	13.4	6.8	13.8	23.7	34.0
네덜란드	1999	0.440	0.248	43.6	15.3	28.3	21.4	0.8	6.1	35.1	68.9
스웨덴	2000	0.447	0.252	43.6	8.3	35.3	16.8	4.2	14.3	19.0	31.0
핀란드	2000	0.430	0.247	42.6	9.8	32.8	16.0	3.4	13.4	23.0	36.8
독일	2000	0.459	0.264	42.5	12.0	30.5	20.9	2.2	7.4	28.2	55.6
프랑스	1994	0.485	0.288	40.6	3.5	37.1	23.9	3.3	9.9	8.6	21.0
노르웨이	2000	0.406	0.251	38.2	9.9	28.3	14.5	1.1	12.7	25.8	41.8
오스트리아	1994	0.452	0.311	31.2	10.8	20.4	6.2	3.3	10.9	34.8	43.2
영국	1999	0.500	0.345	31.0	5.8	25.2	8.4	1.1	15.7	18.7	25.7
캐나다	2000	0.413	0.302	26.9	9.7	17.2	9.0	1.7	6.5	36.0	54.2
미국	2000	0.469	0.368	21.5	10.7	10.9	6.4	0.3	4.2	49.5	70.4
12개국 평균		0.444	0.281	36.6	9.8	26.8	14.3	2.7	9.8	28.0	45.1
한국	1996	0.302	0.298	1.3							
한국	2000	0.374	0.358	4.3							

출처: Mahler and Jesuit (2004) 표 A1, 표 A2, 표 A3 중 나라별 가장 최근 연도만 보고, Mahler and Jesuit (2004)는 엄밀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LIS (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를 이용하여서 계산. 제 (10)열은 저자가 계산. 한국에 대한 수치는 유경준 (2003)의 표 2와 표 3로 LIS와 비교가능한 데이터와 자료처리기법을 사용. 단, 한국에 대한 (1)열의 수치는 시장소득에 대해서 계산.

공제를 축소했을 때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비과세 대상자가 줄

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과세대상자 내에서 보면, 공제 축소 자체는 소득분배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한 소득세 비중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소득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까지 진행하였으면 좀 더 주장하는 바가 명확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세자 비중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개인적인 의견은 소득세는 높게 과세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 2%p 인하는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소득세제개편, 정치적 실현 가능 여부 중요

付广軍 연구원의 논문은 중국의 소득세 현황과 추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 같다. 소득세는 아직 낮은 비중이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목인 것 같고 중국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세뿐만 아니라 지출 측면도 함께 고려하자는 의견도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공제액 확대나 세율구조 단순화는 단순히 제도적인 분석만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경에 따른 총 세수나 소득재분배의 변화를 분석하려면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세제 변경 시 경제행위 변경(behavior changes)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선진국에서도 하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최소한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제비용에 관한 논의에서 명목금액으로 800위안에서 1,600위안, 2,000위안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실질가치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공제를 하는 이유는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지불능력이 감소하므로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에서 교육이나 의료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공제액을 높이면, 세금 경감액은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겠지만 경감률은 고소득자가 작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하지만 세율이나 세율구조의 단순화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반해 중국은 각각의 소득원에 대해 과세하고 있고 향후에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세 개혁방향,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병행

蔡文軍/내몽고자치구 지방세무국 부주임

성명재 박사의 논문은 상세한 통계수치를 제공하고 통계분석방법을 통해 한국의 최근 20년간의 소득세 과세효과와 분배효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2008년 세계개혁 효과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 한국의 소득세제와 분배효과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발표하신 내용 중 중 인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과세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1987년 33%에서 2007년도에는 62.6%까지 높아져서 20년 동안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데, 1994년에 1.42%에서 2007년에 6.98%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높았다는 증거이고 또한 개인소득세제가 완비되면서 세수관리도 향상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둘째, 각 계층별 세수부담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2007년 가구별 임금소득이 최저소득계층이 2만 4천원이고 최고소득계층은 667만 4천원으로 최상위와 최하위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또 고소득계층의 세수부담률이 증가하고 저소득계층의 세부담은 낮아지고 있다. 최하위계층의 경우 소득세부담률이 1982년 0.33%에서 2007년 0.27%로 낮아졌고 최상위계층은 1982년 6.54%에서 2007년에는 7.31%로 증가하였다. 이런 변화로 봤을 때, 소득세 분배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소득세 분배효과가 영미국가에 비해 낮지만,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높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소득재분배 효과는 1% 미만이다.

넷째, 한국의 소득세 비용공제 범위가 다양하고 넓은다는 점이다. 비용공제 항목이 5개인데, 중국보다 훨씬 다양하게 공제하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의 세계개혁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한국의 현재 소득세제가 종합과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분류과세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개혁방향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고 중국에도 적합한 방향이다. 개혁을 통해 중국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발표자 답변

하후상박식 소득세제개편, 왜곡 결과 초래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OECD에서도 다양한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각국의 공식통계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상무부에 있는 census bureau의 통계를 이용하여 재계산한 것이다.

오늘의 주제가 소득세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세제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 차원에서 소득재분배를 전개한다면, 소득세로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재정지출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세제는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선별적으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재정지출은 선택적으로 targetting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제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지만, 조세저항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대안으로, 공제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키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공제효과를 떨어뜨리는 방안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물가연동제 같은 경우 물가상승에 의한 부분과 실질소득 증가부분이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 물가상승에 의한 부분만 연동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과세자 비율이 적절한가를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인도 알 수가 없지만 연구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영 교수의 경우 세율인하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최근 소득세법 개정은 하후상박식이다. 하지만 이는 왜곡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이고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 모든 과세구간에 동일하게 2%p씩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세등급 간소화와 공제기준 상향 조정

付广軍/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연구원

중국은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분류과세하고 있고 임금 및 급여소득에 대해 9단계로 과세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절반 이상이 4~5단계를 채택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최고세율이 45%이므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소득세는 중국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소득세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논의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학계의 의견이지만 이 의견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급을 간소화하고 공제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정책의 목표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중국은 공제가 주로 생계형 공제이다. 공제금액을 2,000위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교육비와 의료비를 고려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각 성마다 소득수준과 교육 및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전국적으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가 아닌 총액 공제를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크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이 중요하고 많이 실시하고 있다. 도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은 세제보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빈부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ession 2

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방향

주제발표 1

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방향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세수기반도 협소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세자 비중도 증가추세에 있지만 절대적 수준에서 여전히 낮아 이를 증가시키지 않고는 향후 납세순응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조세/국민 부담률 상승추세가 매우 급격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단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득세 부담률은 2000년 이후 세율인하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신중한 접근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향후 소득세 세부담 증가율을 경상성장률(혹은 임금상승률) 대비 일정범위 내로 조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소득세 역할 증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소득세 누진구조로 인하여 소득증가율에 비해 소득세수 증가율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므로 그 범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개인소득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사회보장부담 증가와 함께 소득세 비중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세제로 인해 개인의 실효세율 증가율은 쉽게 높아질 수 있어 소득세제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2009~2010년에 예정된 종합소득세율인하는 세부담 증가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소득세의 역할 증대와 함께 면세자 축소, 소득과약을 제고, 공제제도의 개선 등 구조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면세자 축소와 소득과약을 제고는 소득세에 대한 국민 신뢰성(납세 순응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공제제도의 개선과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는 납세순응비용의 축소와 소득재분배 강화에 효과적인 정책이다. 2009년에 첫 급여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면세자 축소, 소득과약을 제고 등의 정책은 전반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면세자 축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특별공제의 축소 등을, 소극적으로는 각종 공제제도의 3~5년간 명목금액 동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득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율인하, 과표구간 조정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09~2010년 예정된 소득세율 인하정책은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고려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의 대체도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소극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모니터링 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정책변화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득과약을, 저소득층 세부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소득세 부담구조 정상화 이후 정책방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저소득계층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구규모별 세부담 불균형은 저소득층에 특화된 자녀세액공제의 도입, 근로장려금제도(EITC) 확대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빈곤 지원제도로서도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CTC와 EITC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CTC 중심제도를 운영하다가 근로유인 효과를 위해 2008년부터 WITB제도를 도입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 혹은 계획 중인 직접적 재정지출 정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소득과세의 세원 확충을 위해 기존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허용되고 있는 저율과세 및 비과세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각종 양도소득에 대해 중장기적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 2

개인소득세제의 구체적인 문제와 개혁방향

劉 / / 북경대학 경제학원 교수

중국의 조세제도에서 개인소득세는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 개인소득세를 설치한 이래로 임금소득 비용의 공제 기준액을 조정해 온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세율구조에 대해 별다른 정비를 하지 않았다. 기존의 세율 설계는 여러 부분에 있어 이미 중국 경제, 사회분야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국민수입 분배 중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 그러하다. 이것은 세수가 재정수입 확보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의 收入分配기능을 실현하는 것 또한 힘들게 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세율은 분류세제형식에 상응해 소득의 항목이 다르고 적용되는 세율 또한 차이가 있다. 개인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임금소득은 5~45%의 9등급의 초액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영업자의 생산, 영업소득과 기업단위의 사업과 임대소득은

5~35%의 5등급의 초액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즉, 근로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소득, 이자및주식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한 소득과 국무원 재정부분이 징세를 확정해 준 기타소득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외에 일회성 근로소득 중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소득액이 2만원안과 5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50%를 더 징수하고 5만원 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를 더 징수한다. 원고료소득은 징수해야 하는 세액에서 30%를 감해준다. 개인 소득세제가 각종 소득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다르면 세부담이 달라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금소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초액누진세율 구조가 현재 중국 국민의 임금수입 분포와 맞지 않고 또한 초액누진방식이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를 공평하게 만드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종합해 보면, 중국의 임금소득세에 적용되는 초액누진세율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임금소득 분포와 관련된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둘째, 등급의 수를 적절하게 통합해야 한다. 셋째, 중국경제와 거주민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세율 설계의 적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토론 요약

경제 형태 고려한 소득세제 구축해야

이철인/서울대 교수

발표자의 견해들 중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형태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포괄주의 소득과세제도'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의 도입에 관한 부분이다. 중국의 경우, 1980년도에 도입한 소득세제를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최근에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자께서 '포괄주의 소득과세제도'를 지향하여 종합과세제도로 이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단, '포괄주의 소득세제'가 무엇보다 앞서 지켜져야 하는 철칙이라고 보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재정학 분야의 '최적소득과세 이론(optimal income taxation theory)' 과도 부분적으로 충돌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험이 중국의 세제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징을 가지는 데 비하여 중국의 경우 이와 다른 경제 형태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오히려 중국은 포괄주의 소득과세제도의 본래 이상에 가까운 세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점진적 개혁방향이 있어서 중국의 경우에는 분류소득의 항목의 하나로서 '기타소득'의 범주를 신설하고 소득을 점진적으로 포괄하면서 본격적인 '포괄주의 소득과세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세분화된 과세단계를 단순화하자는 주장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타당한 지적으로 판단되며, 최적 소득과세제도의 관점에서도 소득구간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제고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단순화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의 분포 등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중

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소득구간의 조정이 빈번할 수 있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원천징수제도' 강화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세무조사의 강도 및 주기 등 납세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각종 관련제도(예: 가산세)를 도입·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전통이 있어 아마도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고 가정하기로 하자. 공제제도는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건없이 공제제도를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저소득층의 후생을 생각하면서 공제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경험에 대해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형평성을 위하여 공제를 확대하였으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경제학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공제제도가 과도하게 되어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역설적 상황에 대해 고려하기 바란다.

모든 납세자 대상 신고의무 부과 필요

靳方軍/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먼저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소득세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편방향을 잘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듣고 질문할 내용과 느낀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려이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며, 이는 사회 안정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둘째,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에 대한 균형에 대한 내용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의 균형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한국의 경우에 이를 세제에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셋째, 종합소득과세-분류소득과세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분류소득을 병행한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에 의무자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중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제3자의 정보공유관련 문제, 과세장애, 사회적 조건과 같은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다.

제3자의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자연인의 신고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등 법적 장애가 존재하므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세장애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이 4:6 정도의 비율로 세수를 나눠서 징수하고 있는데 거주자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넷째, 자진신고하는 납세자의 수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 자진신고하는 납세자의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섯째, 세율에 대한 것이다. 중국의 최고세율은 45%로 상당히 높지만,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자 답변

중국 과세체계 연간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한국이 어떻게 세제에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법인이 부담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개인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인소득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을 그냥 배당소득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전의 배당소득으로 계산하여 포함한 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이후에 법인단계에서 부담했던 법인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이 종합소득과세-분류과세체계로 가는 방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신고대상을 확대한 부분은 탈세와 관련지어 볼 때 중요한 부분으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중앙과 지방 간의 과세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중국의 과세체계가 매월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연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Session 3

과표양성화와 소득세 정상화 방안

주제발표 1

과표양성화와 소득세 정상화 방안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숙제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측면에서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제와 세정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세정 측면에서는 첫째, 1999년 9월부터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정착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야 하며, 둘째,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소액거래에 대하여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며, 셋째, 무기장가산세율의 인상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장의무자의 확대, 넷째,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원칙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하며, 다섯째, 혐의거래 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안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만병통치약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한 정책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때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이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정책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

로 추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납세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2

과세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陳文東/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연구원

개인소득정보를 장악하여 과세근거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에서의 기초이자 관건이다. 중국은 20세기 90년대 초부터 주민과 비주민에 대해 통일적인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정보를 파악하고 과세근거 투명화를 촉진하며 개인소득세의 과학화, 전업화와 일상화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일부 관리목표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진정으로 종합과 분류가 서로 결합된 세제패턴하의 징수관리 개혁을 이룩하여 과세근거를 투명하게 하려면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고소득자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잘 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신용카드의 보급에 의한 과세근거 투명화가 필요하다. 넷째,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수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즉, 개인소득세의 일상화 관리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근거를 투명화해야 한다.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려면 우선 관리 면에서 신용카드를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비현금결제를 추진하며 은행과 세무기관 간의 정보교류를 해야 한다. 이 밖에 벌금과 장려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한면으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세무검사를 진행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위법의 대가성을 감안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정확하게 신고하게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실 납세자에 더욱 많은 장려 조치를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에 의해 납세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토론요약

과세표준 양성화, 거래내역의 확보가 중요

박해영/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서기관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발표 논문에 잘 정리가 잘 되어있으므로, 본인은 한국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원천징수로 파악되는 소득(이자, 배당 등)은 원천징수의 내역으로 과세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 따라서 원천징수로 파악되지 않는 과세소득(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소득)의 파악이 과세표준 양성화의 핵심이다. 이들에 대한 수입금액 노출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현금영수증의 도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Cross-Check 등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도입으로 세원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신용카드 등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현재 65~70%에 이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또한, 수입금액이 과세인프라에 의해서 노출되기 위해서는 관련 경비의 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장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비과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

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한 신고를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 노출이 어려운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005년 이후 축적된 세무조사 자료를 통해 수입금액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및 기준경비율제도 등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 과세자료의 수집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먼저,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의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차인의 주택월세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사용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영수증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실상에 맞게 경비율제도를 운영하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배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처벌제도와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周曉軍/국가세무총국 소득세과

조세분야 교류에 관해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한국과 중국의 담당자에 감사드린다.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며, 둘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강제적 규정을 통해서 관련 당국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처벌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강제적 규정은 근로자 급여에 대한 기장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중요하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납세자의 비

율을 낮추고 기준경비율 적용 납세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이는 무기장 자영업자에 대해, 기장사업자보다 조세상 유리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장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용공제에 있어서 실제금액에 대한 전액공제나 초과공제를 허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가 커야 한다. 이를 위해, 가맹점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재진 박사의 논문은 중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과세표준 양성화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기초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는 국가의 법률 수준, 데이터의 관리 수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 의식과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비현금결제 활성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간의 과세자료의 공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발표자 답변

제도시행시 납세자 의식수준 고려해야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중국은 빈부격차(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문제), 높은 Stick and Carrot 정책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사용은 납세자의 의식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납세자가 탈세를 하는 경우, Stick은 무리한 정책일 것이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한국도 도입한 제도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세혜택제도는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였다. 반대사유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이 과세표준 양성화에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단지 세수손실만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훌륭한 IT기반으로 인하여 카드단말기의 보급이 빨랐고,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과세혜택을 부여하여 빠른 속도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활성화 되었으며, 국세청은 카드결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를 보았다. 특히,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한 문제는 소비자와 가맹점 간의 문제로, 이에 대한 조세저항으로부터 정부는 빠지게 되었다.

문화적·심리적 문제도 중요

陳文東/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연구위원

중국의 경우, IT 시스템과 신용카드 업무에는 문제가 있어, 비현금 거래를 보급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IT가 없던 시절에도 많은 나라에서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종합과세하였다. 따라서 IT 시스템 등의 문제가 종합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단지 기술수준이 발전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아니고, 과세인프라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Session 4

경제위기와 소득세 정책

주제발표 1

경제위기와 소득세 정책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점이 높고 과세 미달자의 비중이 높아 소득세 감세로 인한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작게 나타날 수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정상화하는 과제는 단기적인 소득세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소득세제의 정상화에 기초하여 소득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세개혁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소득세제 개편은 소득세의 정상화를 거쳐 소득세의 선진화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득세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세정책이 갖는 재분배기능과 소득세의 누진도를 재평가하고 중산층 복원과 중산층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조세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세제 및 세정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①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② 기장 유도, 전자기장을 도입하고, ③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고, ④ 영수증 수수질서를 확립시키며, ⑤ 가산세제도와 조세범처벌법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세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하므로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소득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일괄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하는 개산공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른 인적공제문제를 해결하고, 공제제도를 단순화시켜 과다한 조세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특별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본과세 개혁 조치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완전한 종합과세로 이행하도록 기존 금액을 폐지하고 예외없이 종합과세로 하되 조세부담은 낮추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양도차익과세도 여타의 소득과 같이 종합과세로 하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저소득층 자신의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정지출 정책과 조세지원 정책을 결합한 EITC의 올바른 도입방안으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자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기존 복지제도의 틀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일세와 이중소득과세의 도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득세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소득세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심각한 훼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세제 선진화는 소득세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뒤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일세와 이중소득과세를 검토하

는 과정을 통해 달성가능 할 것이다.

주제발표 2

중국의 개인소득세 제도 개황

新方軍/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중국 현행 개인소득세제도는 198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경제사회 발전단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복잡한 변화과정을 거쳤다.

중공중앙 11기 3중 전회 이후 개혁·개방이 점차 심화되면서 중국경제는 신속히 국제경제에 융합되었으며 외국과의 경제, 기술, 문화 교류도 끊임없이 늘어났다. 따라서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소득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국민도 다원화로 소득을 획득하게 되었고 소득수준도 끊임없이 제고되었다. 국가의 경제권익을 수호하고 개인소득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1980년 9월 10일 전국인대 제5기 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통과, 반포하였으며 반포한 날부터 실행하였다. 같은 해 12월 14일 재정부는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신중국의 첫 개인소득세법이었다. 본 소득세법은 중국 경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소득 및 중국 경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 중국에서 소득을 획득할 경우 모두 법에 따라 징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제경제 거래에서 중국의 정당한 세수이익을 수호하고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근무하거나 기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권장하며 개인소득 세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두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

국무원은 이미 개인소득세제 개혁을 정부의 중요한 업무내용으로 간주하고 향후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가 서로 결합된 개인소득세제를 실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세제 패턴은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의 일부 장점을 흡수하여 납세자의 부당한 내원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 종합적인 징수를 하므로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해 특정방법과 세율로 징수하기에 일부 부당한 성질을 띤 소득에 대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원칙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세제 패턴은 징수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가 종합소득세제보다 엄격하지 않으므로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며 사회경제 발전 수준이 극히 불균형한 중국 국정에 비교적 적합하다.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조절 강도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 중국의 당면 상황하에서 합리적이고 실행 또한 가능하다.

중국의 세제개혁의 기본원칙은 “세제를 간편히 하고 과세기준을 확장하며 세율을 낮추고 징수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세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당연히 개인소득세 제도개혁도 망라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개혁으로 놓고 볼 때 과세기준을 확장하고 세율을 낮추며 징수관리를 엄격히 진행하는 것은 마땅히 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요 내용이어야 한다.

토론 요약

유동성을 높이는 정책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필요

임병인/충북대 교수

첫 번째로 안중범 교수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 타개 정책과 관련하여 야당 측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한계효율과 관련하여 타당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린다면, 과거의 세계 대공황을 타개하면서 습득된 학습효과인지, 세계 주요국들은 지나치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유동성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한 이후 경제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세와 재정정책을 취한 이후에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경제위기 해결을 위하여 가치분소득을 높여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증가시키자는 의견인데,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물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진 부소장님의 발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장구조 모형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담배세나 주세는 인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담배나 주류 같은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증세를 목표로 세금을 올리더라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하여 어떠한 연구가 있는지, 또 재정건전성이 증세만으로 해결되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중국에서는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원천징수제도와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탈세와 누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자료나 통계가 중국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중국의 공제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중국에서는 세율구조는 9등급과 5등급으로 나누고 단지 20%만을 부과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원배출의 효율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연구나 정부 대응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세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 말아야

劉怡/북경대 교수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난 30년 간 연구를 해왔지만, 안중범 교수의 발표내용은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독특한 관점이 많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독특한 관점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다면, 면세점과 한계세율에 관련된 내용이다. 안 교수께서는 면세점과 최고 한계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중국의 2004~2005년 연구에서 임금에 대한 한계세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문이 있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중국의 명목세율이 25%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주

는 명목세율은 20% 이하라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따라서 현재 명목세율인 45%가 너무 높으며, 따라서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그 연구 이후에 2007년부터는 학계의 관점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즉 45% 명목세율이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즉 효과가 큰 45%의 명목세율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안 교수의 논문을 보고 명목세율을 2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기존의 제 의견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안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주제이다. 소득세제의 역할 중 하나가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을 맞추는 것인데, 이러한 세제는 정치의 수단과는 따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들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감세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의 합리적인 분석과 연구에 의해서 조세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조세정책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본이득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완전히 감면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자본이득에 대하여 앞으로 증세가 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안 교수께서 의견을 말씀하였는데, 그렇다면 장기적 자본이득은 세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단기적 자본이득은 어떻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고 싶다. 한국의 논문들을 읽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다시 말씀드린다.

발표자 답변

물가연동제 채택, 신중히 고려해야

안종범/성균관대 교수

임병인 교수께서 하신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드리다면, 우선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인하요구에 대하여는 한국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의 경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세특례가 지나치게 많고, 많은 탈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하는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서는 감세와 재정정책을 병행하는 유동성을 높이는 정책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때문에 연제가 경제의 저점인가하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점은 아무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가연동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중국처럼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채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물가연동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물가상승 폭이 높아지면 채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이 교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중국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45%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이득에 관하여서는 한국에는 주식시장에 단기매매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의 단기매매 인구 수가 세계에서 1위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건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자본이득에는 과세를 하고 장기자본이득에는 비과세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세율구조 간소화 위한 연구 진행

靳方軍/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중국의 담배세와 주세는 특소세에 속한다. 따라서 특소세에 대한 원리부터 중국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원천징수와 자진신고에 따른 탈세와 누락 가능성에 대하여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탈세와 누락 가능성에 대하여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특별공제는 매우 단순하다. 중국의 공제제도에 대한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제도에 대한 여러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공제가 큰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세율구조를 비용을 9등급과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서는 중국에서는 간소화를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중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고소득자에게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종합토론 1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 도입 필요

인종범/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제의 공통과제와 소득세제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 방법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 소득세제의 공통과제이다. 한국과 중국은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중국측 논문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한다. 한국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996년 이후부터 기준금액을 정해 기준금액 이상은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지만,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다. 한국도 주식양도차익은 앞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추세에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dual income tax를 채택하여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과 중국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해 먼저 과세하고 나중에 저세율로 효율화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지금 체제에서 바로 효율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6개월 이상의 장기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매매차익 과세에 대해 양도차손 공제가 인정되어 주가의 단기 급락이 있어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주식에 대한 과세가 불리한 것은 아니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에서 소득세제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의 조세 또는 재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대처방안에서 관심영역과 재정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소득세 체제 개혁 진행

新方軍/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중국 경제는 체제전환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시장 경제 건설을 위한 조정작업이 진행중이고 이에 따라 조세제도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개혁에 대해서도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인소득세 체제 개혁은 법제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2005년에 개인소득세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최초로 공청회를 열었다. 세법개정을 하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공청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큰 사건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과학적·민주적 입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등 다원화 과정을 거쳤다. 공청회 이후에 면세점은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하였고 세무행정상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다.

중국 소득세제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소득세의 비용공제 제도이다. 두 차례 조정이 있었지만 많은 논란 가운데 있다. 비용공제 기준을 올릴 것인지, 기준 미달자를 제외할 것인지, 납세의식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 세무전문가는 비용공제를 5,000위안 또는 8,000위안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인구가 수억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

둘째, 징세모델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입시기를 잘 판단하면서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병행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이는 인민회의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셋째, 중국 주민들의 납세의식 제고도 중요하다. 중국의 납세의식은 향상중이며 법적 개혁도 진행 중이다.

넷째,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개인소득세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종합과세제도가 필요하며 재정 확대를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오히려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세계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번 한중 심포지엄은 양국의 소득세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소득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개인의 비용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은 목적에 부합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줄여 준다고 본다.

종합토론 2

세제의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설계 긴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劉怡/북경대 교수

임재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장

한중 심포지엄을 통해, 양국의 조세발전을 위해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근로소득의 경우 많은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 과세자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제제도를 정비하고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는 과세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통하여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산화 효과를 가져왔는데, 신용카드 거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병원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소득세제 개편방안 중 물가연동제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우수한 면이 인정되나 실제 도입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 소득세 관련 의원입법이 매년 수십 건씩 발의되는 현실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은 자칫 세수결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자본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우대하여 과세하는 이중소득세제(Double Income Tax)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는 이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매우 강조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자본이득에 대해 더 우대하여 과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성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과 아울러 민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의 과학성이라 함은 세제의 설계를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정교히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면세점을 낮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득세율을 낮춤에 있어서 이것이 자본유입 및 투자증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 즉, 국민의 정서이다. 정치가들은 국민의 감정적인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단순한 비용공제보다는 한국과 같이 다양한 계층에 맞는 공제제도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즉, 민심을 반영하여 국민을 만족시키고 세계화를 만족시키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의식을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다.

둘째,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이다. 세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형평성을 강조할 경우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손실이 없을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한 경제상황에서 자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경우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며,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즉, 효율성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본에 대해 우대하는 조세정책과 조세의 형평성 간에 균형이 필요하 하겠다.



종합토론 3

현실 여건 고려하여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인이 이해하기에는 현재 중국은 빈부격차(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농촌간의 빈부격차문제), 높은 현금 거래비중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민주화, 개방화가 진행되고 중국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중국세제의 개편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조세개혁 작업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중국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벤치마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현재 소득세의 과세구간과 세율, 공제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제 개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과세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세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9단계 과세구간을 4단계로 조정했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4단계 과세구간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면제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면세점의 조정은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유연성'이지만, 실제로 세제는 유연성이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대신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당시에는 IT 인프라가 제

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자본이득의 파악이 어려웠고, 정부 입장에서도 주식양도에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과세가 가능한 거래세 제도가 행정부담 측면에서 더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그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조세원칙의 차원에서 불합리한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상기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세제도가 한번 잘못 설계되어 도입되면 이를 개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를 무조건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조세제도를 설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세제도가 국민들의 납세의식이나 문화, 세정여건에 너무 앞서 나가면 납세자들이 적응하는데 애로를 겪을 수 있는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세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세정책 수립에 한국사례 많은 도움될 것

付广軍/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연구원

본인은 오늘 네 번째 세션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금융위기와 소득세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금융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상품거래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금융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 생각한다. 작년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GDP를 상당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수출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은 금융위기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중국의 GDP 총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출대금이 달러로 결제되는바, 유로화 결제는 2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국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중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거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조세정책 역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소득세의 역할은 크지 않다. 2008년 말 현재 중국의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98%에 불과한바, 소득세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득세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거시정책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점차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 금융위기는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정부의 조세정책 수립에 한국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KIPF**

政策研究



정책연구

-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
김승래 · 김형준 · 이철인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노욱 · 원종학 · 김 진 · 박명호
- **우리나라 성 인지 예산 및 조세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박노욱 외
-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김정훈 · 김현아
-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김승래 · 박상원 · 김형준
-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안종석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준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인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는 자본왜곡을 심화시키고 자본과 고급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야기하는 등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여 소비세제의 비중을 제고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 제고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저성장시대의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적 조세경쟁의 심화와 법인세 인하 경쟁 추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환경관련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원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조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전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조세체계의 적정화 방향 및 수준을 검토하는 문제는 조세 및 재정정책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이론적인 측면 이외에도, 경제성장이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및 공공선택적인 요소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최근 급속한 개방화와 양극화 심화 및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하에서,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공평과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 및 각종 요인들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체계는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현행 조세체계가 적정수준과 다를 경우 해당 세목별 세율 체계를 조정하여 국가적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 전체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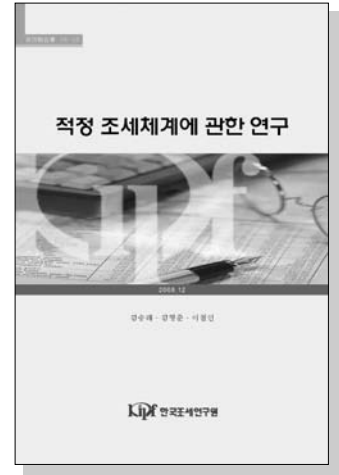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엄밀한 조세이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단순히 국제비교 분석이나 ITC지수에만 의존하여 국제적인 평균치 추세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적정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존의 단순 국제비교나 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Ballard et al(1985), 김성태 외(1999), 김승래·김우철(2007) 등의 효율성 측면의 비용분석에서 나아가 전반적 조세체계의 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중요한 조건이다. 먼저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세목의 한계초과부담이 크다는 것은 해당 세목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 전체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조세제도의 세목별 효율성, 형평성 및 단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합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2조 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경제잉여 뒀은 2조 6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국민경제적 이득은 전체적으로 약 3천억원, 세수 대비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수의 손실은 초래되지만, 법인세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제전반적 효율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킨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률적 법인세율 인하는 법인소득 크기가 큰 대기업과 자본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대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기타 세제 변화 및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또한 향후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 관련 자본소득세 인하가 다른 세목 조정과 함께 세수중립적(revenue-



B5 변형/ 165면
2008. 12

neutral)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거나, 신규 세수의 환류를 통한 각종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 정책과의 조합에 의해 계층별 귀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최종소비자의 후생변화로 추정된 김승래·김우철(2007)의 주요 세목별 조세효율비용(MEC) 승수를 이용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증세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를 살펴보면,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사회후생 감소)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0.298조원, 0.212조원으로 부가가치세의 0.155조원 대비 각각 1.92배, 1.37배에 이른다.

또한 주요 세목별 증세의 소득분배의 형평성(equity)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를 현행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1조원 증세의 경우에 지니계수가 각각 0.0264%(약간 누진적), 0.1999%(다소 누진적)가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는 0.0399%(약간 역진적)가 늘어나 직접세 대비 소득 불평등이 다소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역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에 이로 인한 귀착효과는 고소득층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크기는 현행 소득세에 대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법인세에 대한 일률 감세로부터 유발되는 부(-)의 소득형평성 효과를 다소나마 완화할 정도의 미약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명확함을 의미한다. 오히려 취약 계층 보호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재정지원이 세율 조정보다는 역진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증세의 경우에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측면에서 종합한 '조세-성과 행렬(tax matrix)'을 통하여 현행 조세체계 조정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이에 따르면 일률적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의 경우 조세의 효율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가장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일률적인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의 경우에 법인세가 기타 세제에 비하여 조세의 형평성 및 단순성 측면에서 약간의 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효율비용 감소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주요 세목 중에서 비용-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소득세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교하여 분배적 형평성 제고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일차적인 정책적 목표로서 부각될 경우에 조세누진성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의 일률적인 세부담 조정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비교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8-08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노옥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정부 재정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부터는 OECD 국가뿐 아니라 신흥부국 및 개도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정보의 생산을 위한 투자와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4년의 본격적 운영 경험이 축적되었으므로, 제도가 의도한 바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축을 구성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제도의 기획, 지침 마련, 교육 및 국제 정책교류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본원 성과관리센터 연구진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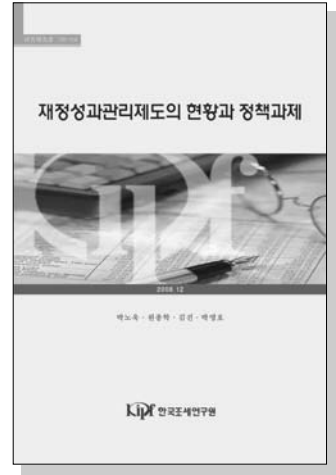
재정성과관리제도에는 제도의 운영을 위한 하부구조적 성격의 요소와 제도의 운영 자체와 관계된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소 중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부 구조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부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진다. 재정사업이 달성한 성과에 관한 정보, 재정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정보, 그리고 예산을 목표에 따라 분류한 프로그램 예산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축인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중앙관서들이 매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조직의 임무에 적절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그리고 단위과제 등을 포함한 성과목표체계를 수립하고, 성과목표와 단위과제별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1년 후에는 달성 정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계획서와 보고

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정보 자체가 제대로 개발되어야 하며,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체계가 예산편성 과정의 의사결정단위인 프로그램 예산구조와의 정합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기존 제도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자체의 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용정보의 경우는 현재 간접비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점진적으로 또는 선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발생주의의 도입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정합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성과목표체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 단년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정보가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매년 정부 예산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미국 예산당국인 OMB의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을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서, 그 이후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도입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목표관리제도와는 달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평가 결과의 분석,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활용도,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자, 국회 관계자, 부처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 분석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평가대



B5 변형/379면
2008. 12

상 선정의 적절성, 성과정보와 비용 정보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단위사업이므로, 프로그램 예산과 성과목표 체계의 정합성 제고와 평가 대상사업의 이력관리 강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다부처가 관련된 사업군에 대한 평가 필요성을 제안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시범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정보에 있어서는, 결과지표의 개선과 효율성 및 장단기 지표의 도입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부처 자체가 실시한 사업평가에 대한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사업평가를 권장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점수뿐 아니라 사업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의 실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와 개선 방안 제시는 실제 부처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선 방안도 예시와 함께 이루어져서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내용



은 제도 운영 담당조직인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공유되었으며, OECD 국가들과의 정책교류에서도 활용되었다. 그 결과, 평가지침과 제도 운영 방안의 개선에 실제 반영되었으며, 재정성과관리제도와 관련된 OECD 관계자 회의에서도 발표되고 공유되었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8-09 『재정성과관리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성 인지 예산 및 조세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박노옥 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외

조세제도와 예산사업을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 인지 조세와 예산제도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성 인지 예산운동이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6년에 국가재정법에 성 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0년부터 각 부처는 성 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예산당국과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화는 출산 장려와 더불어 여성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역할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 수입과 지출도, 변화된 여성의 역할에 맞게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 인지 조세 및 예산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본 연구가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별도로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연구 진행과정에서 다른 연구과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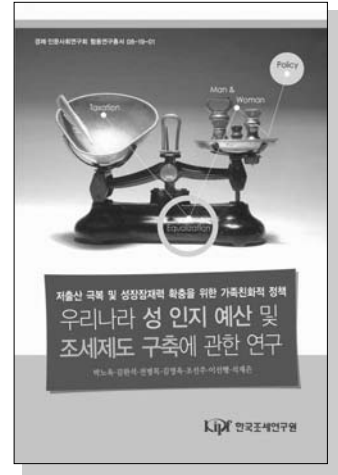
의 중복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어, 연구 주제의 분담을 분명히 하였다. 여성부와 여성정책연구원 중심으로 국가재정법에 명기된 성 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을 위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와 중복되지 않는 영역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성 인지 예산제도 자체의 도입을 위한 연구보다는, 조세제도와 정부 예산사업 분석에 있어서 심층 분석 및 평가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연구진은, 조세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원의 연구진과 조세법 관련 전문가, 그리고 여성문제 전문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성 인지 예산제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외국 전문가들도 초대하여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고, 연구 결과의 개선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조세제도의 성 인지적 분석과 정부 예산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제도의 성

인지적 분석은, 세법상의 양성 불평등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소득세법상의 양성 불평등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변경시켰을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도 특성상 성별 차등이 발생하기 쉬운 소득 관련 과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과세단위, 세율, 과표구간 등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성별 불균형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공제제도의 운영에서는 여성근로자 추가공제, 여성에 대해 완화된 부양가족 기준 등 여성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 외 자산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단위가 세대단위로 조세제도의 기본단위인 개인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가정 내 이차소득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의 자산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성별 불균형은 제도 도입 당시의 목적과 성별 균형 등을 감안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도출되었다.

정부 지출의 성인지적 분석은, 정부 예산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 사례로서 국민연금 수급의 성 인지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예산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 방법론 연구에 있어서는, 정부 예산사업을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하고 있다. 예산 지출의 양성 평등성, 사업 산출물의 양성 평등성, 그리고 사업 결과의 양성 평등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음을 논하고, 기존의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사업 분석은 주로 사업 지출 또는 서비스 수혜의 양성 평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업 지출과 수혜의 양성 평등성 분석도 엄밀한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지출이나 수혜의 귀착분석 방법론으로 수혜귀착분석(BIA)방법



B5 변형/375면
2008. 12

과 예산사업의 수요에 대한 추정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추정법(CV)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기존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성별 영향평가제도의 심층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예산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의 현황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성 인지적 분석이 용이한 사업 유형을 제시하면서, 분석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성 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방법론의 적용 사례로서,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전 국민이 수혜 대상인 국민연금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현금이 지급되는 사업이고, 자격 요건이 법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동시에 분석을 위한 데이터도 가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에 대해 성별 수급자 및 가입자 현황, 연금자원의 성별 배분, 수급 및 가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국민연금수급 가능성이 근로기의 노동공급에 성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여성에게 적절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경제활동참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근로연령기의 소득활동 및 보험료 각출에 연계하여 수급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사회보험적용률이 낮은 취약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에는 여성의 가정에서의 아동 및 노인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여 연금권을 지원하는 부분이 없으며,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는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남편의 연금권을 공유하거나, 남편의 연금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유족연금 등을 통한 여성의 연금권 확보의 가능성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개별연금 수급권의 확보를 보장하도록 하고, 연금의 급여수준이 빈곤을 방지하는 안정적 노후소득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양성 평등 확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는 취지에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 취약계층과 여성을 보호하고, 성별 노동 특성이 반영된 국민연금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성별 노동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사례로서, 근로경력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비교적 관대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관계에 놓인 여성들에게 육아로 인한 급여 상실을 막아주고, 이혼 시 연금분할제도와 유족급여는 이혼 및 사별여성이 결혼기간, 배우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연금을 받

도록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8-10 『우리나라 성 인지 예산 및 조세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김정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첫 번째는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정형화 단계에 접어든 재정분권과 관련된 1세대 이론 및 2세대 이론을 평가의 틀로 삼아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평가하였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이 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방재정 규모의 확충이 경제성장애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서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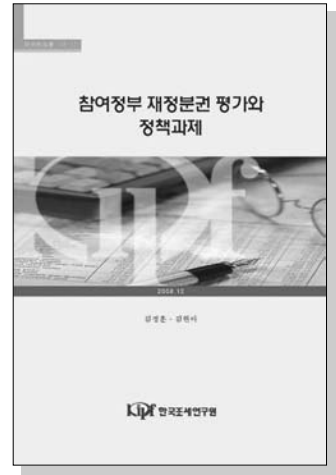
참여정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재정분권 정책의 특징은 이전재원의 확대를 동반하는 지자체 재정 자율성의 신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재정분권 이론인 「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1세대 재정연방주의의 이론적 틀 내에서는 일반교부금이나 조건부교부금 모두 효율성이나 형평성 관점에서 일정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라 할 수 있는 Robin Boadway의 시각이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Boadway, 2004). 한편 1990년대부터 본격

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2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은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재정의 외형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Barry Weingast, Vito Tanzi, 그리고 Jonathan Rodden 등이 이러한 시각을 갖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순수한 지방세가 아닌 이전재원, 지방채, 또는 세원공유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한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가 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전재원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또한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도 확대시킨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평가가 「2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의 관점에서는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재정분권 및 경제성장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결과를 평가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재정분권을 왜 하는가'이다. 분권은 참여정부가 3대 국정목표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물론 참여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을 특정 정부가 추진한 일회성 정책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출범한 1995년 이후부

터 분권, 특히 지방재정의 확대에는 일정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소득세 도입, 지자체의 세출 기능 확대 등은 모두 특정 정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정분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이 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답변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재정분권을 왜 하는가에 대한 평가, 즉 재정분권의 요인(要因)에 대한 평가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비교 계량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Panizza(1999), Arzaghi and Henderson (2005)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재정분권의 수준, 즉 지방세 비중이나 지방세출 비중은 한 국가의 소득, 민족적 이질성, 면적, 인구 등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평가만큼 그 요인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하다 보고 있다. 따라서 Panizza(1999), Arzaghi and Henderson(2005) 등에 나타난 방법론을 바탕으로 재정분권의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영·현진권(2006)에 의하여 수행된 바 있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방법론을 공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이 강조되는 이유, 특히 지방재정의 외형 확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수도권 집중, 특히 서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새



B5변형/141면
2008. 12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기존의 실증분석 모형을 변형하여 수도권의 영향력, 특히 수도권의 인구 규모가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재정분권에 대한 국제비교 실증분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재정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이터의 한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OECD에서 생성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보고서의 국제비교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국제비교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외형적 재정분권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재정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소득, 민족적 이질성, 면적, 인구)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갖는 변수는 인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이 강하게 추진되는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OECD

평균보다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인구 변수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큰 또 다른 요인은 수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에 거주하는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지방재정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이유에 대한 하나의 가설이 제시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최근 재정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형평성, 효율성, 자율성 등의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OECD 국가 기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인구 규모와 특히 큰 규모의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분권에 대한 정치적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의 지난 몇 십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분권의 강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연방국가 또는 연방적 분권 형태를 띠는 국가들의 평균적 경제성장률이 단일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와 단순 회귀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분권 국가 형태가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인구 규모와 수도권 집중이 분권에 대한 정치적 수요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재정분권의 확대가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높은 수준의 재정분권에 대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일단 내릴 수는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Weingast(2007)처럼 연방제와 같이 강력한 분권적 국가형태 자체가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재정연방주의의 대가라 할 수 있는 Robert Inman은 민주적 연방제가 경제적 성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하였다(Inman, 2007). 결론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재정분권이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분권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분권의 내용과 형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축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8-11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상원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형준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005년 2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것을 계기로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에너지관련 세제의 탄소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장기반의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른바 ‘녹색성장(green growth)’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조세 및 재정정책의 효율적 운용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UN을 중심으로 한 기후·환경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과 관련,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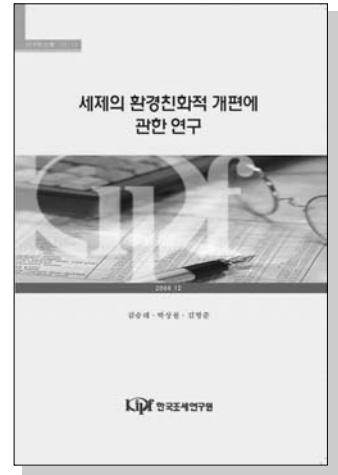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조세체계는 아직까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피해 비용을 시장가격에 제대로 전달하고 반영하는 구조가 미약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존 에너지자원이 열악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

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취급되어 왔다. 이는 각종 에너지원 간의 소비패턴 및 투자구조의 왜곡을 초래하여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효율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투자방향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₂ 발생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롯하여 오존층 파괴, 산성비 문제, 사막화 현상 등 지구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화석연료의 사용 억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커다란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명제하에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은 대내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방지 측면에서 각종 환경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관련 각종 세제의 정비를 종합적인 차원의 조세 및 예산시스템의 개혁방안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환경친화적 조세 및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환경친화적 방향으로의 개편(environmental fiscal reform)과 관련하여 환경세 부과 원칙과 관련 세수의 활용 등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은 대체로 환경규제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환경관련 조세 및 재정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초부터 기존의 에너지에 대한 과세 외에도 CO₂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향후 환경 및 에너지정책의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왔다. OECD 국가들의 에너지관련 조세의 과세구조는 일반소비세 외에 에너지세, 환경세, 유황세, 탄소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특히 탄소세는 CO₂ 배출 감축을 목표로 도입되어 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협정 수단 등과 병행하여 실시되어 CO₂ 저감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환경관련세를 대체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보통세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세나 기타 환경세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수중립적인 입장에서 근로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고용 및 투자의 증대를 유인하는 이중배당(double dividend)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가령 스웨덴(1990), 덴마크(1993), 네덜란드(1996), 핀란드(1997), 독일(1999), 영국(2001) 등 6개 EU 국가들은 대규모 세계개편을 단행하여, 환경오염 비용을 보다 잘 반영하는 에너지 부문 세제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국가 전반적 조세



B5년형/185면
2008. 12

부담을 노동관련세에서 환경관련세(에너지, 수송 등)로 명시적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EU 국가들의 세계개편 총규모는 매년 250억유로에 달하며, 이러한 방향의 세계개편은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및 고용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적 조치와 자발적 대책(협약), 경제적 수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그동안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후 지구온난화 대책의 경제적 수단으로서 2004년 11월에 환경세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환경세의 구체안'을 발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환경세 구체안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세는 세율이나 세제 도입 방법 등에서 유럽의 환경세와는 약간 다르다. 유럽, 특히 북구의 국가는 전체적인 세계개혁 차원에서 환경세(탄소세)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의 환경세 세율은 일본의 안과 대비하여 대체로 높은 편이며,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해 높아진 세

부담을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으로 보전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환경성이 도입하려고 하는 환경세의 경우, 세계개혁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 위에 새로이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으로 신규 환경세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세율도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세계개혁 차원의 환경세 세율의 1/1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환경성이 환경세 구체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현재까지 환경세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문제 때문이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세계를 도입하여 기업이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될 경우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세제의 운용방향은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 강화나 환급 등 세출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행 에너지세제의 대대적인 탄소 저감적 역할을 제고하여 세제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기후변화대책 자원 마련을 위해서 별도로 탄소세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때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와 같이 에너지원간 세율 책정을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오염의 피해비용에 따라 더욱 합리화하고, 동시에 관련 세수를 저에너지소비형·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이나 노동 및 자본관련 세제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나 세계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관련 세제를 환경세

로 통합·개편하면서 탄소세적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타 소득관련 세제의 부담 완화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에너지 및 자동차관련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산업경쟁력, 서민 부담, 국제적 필요 감축량, 종전 세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세율 산정시 산업 및 서민계층 부담과 현행 세율과의 격차 등을 각종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한 후 세율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규 탄소세 도입의 경우는 CO₂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 소비형 주력 기간산업에 집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존 세목과의 세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기타 자동차 관련 세제와 각종 배출부과금 등은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보완·개편하고, 오염저감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나 각종 효율기준 강화와 같은 비세제적인 수단을 조세체계 개편과 병행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에너지효율적 차량에 면세·보조금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이 아닌 연비 또는 CO₂ 배출량 배출가스 등급에 기초하여 연계하여 세계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또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환경관련 세수입의 사용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부담금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는데, 환경관련 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환경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의 구조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



며, 효율성이라는 경제학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세수가 환경에 재투자되고 있는 것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관련 조세를 강화할 때, 그 사용의 적정성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부담금에 대한 개편과 더불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일반 회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나 조세와 성격이 유사한 부담금은 일반 세금으로 전환하여 부담금과 특별회계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에 대비하는 실천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에너지 및 자동차 부문의 세제개편, 환경 및 에너지관련 제(諸) 부담금의 효율적 정비 등 세제 전반의 환경친화적 방향으로의 개편의 경제적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경제의 친환경 생산 및 소비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경제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세제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8-12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안종석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총공공재정 중 60%를 지출한다. 그러나 세수입을 보면 국가의 총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데, 그 괴리는 국고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국고지원금으로 보충된다. 국고지원금 중에서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어지는 지원금을 일반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일반보조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보조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책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배분방식인데, 이는 일반보조금의 배분이 원하지 않았던 지방정부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간 세입 확보 능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형평화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가 완전히 제거되어 모든 지방이 동일한 규모의 세입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방정부는 자체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 절약 노력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조장하여 장기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일반보조금의 배분방식을 설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중 일반보조금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통교부세에 초점을 맞춰 배분방식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문제점

보통교부세에 초점을 맞춰 배분방식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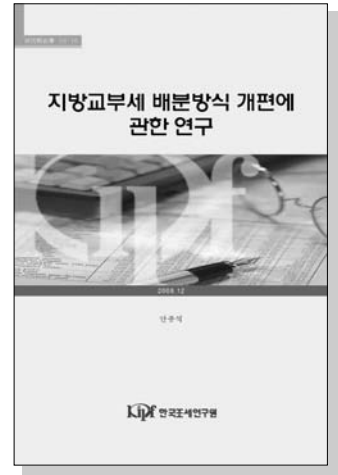
첫째, 재원의 수직적 불균형 보정을 위한 부분과 세입 확보 능력 형평화 부분, 공공재 공급비용 격차를 보정하는 부분을 모두 통합하여 '재정부족액' 이

라는 하나의 지표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인해 제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교부세에 대해 세수입이 부족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공공재 공급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평가되어 받은 것인지 파악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제도의 투명성이 낮다. 재정부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기준재정수입(수요)액은 다시 기초수입(수요)액, 보정수입(수요)액, 그리고 자체 노력 인센티브로 구성되며, 각각 독립된 방식을 통해서 추정되므로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셋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실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표준세율의 8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산정방식을 보면 추계에서 정산까지의 기간(3년)을 통합하여 볼 때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을 합하면 실제 지방세 및 경상세의 수입의 80%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보 노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넷째, 기준재정수요액 추정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특정 변수의 변화가 기준재정수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계산과정을 모두 따라가 보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항목 기초수요액은 해당 항목의 재정지출자료를 설명변수에 회귀분석하여 추정한 표준행정수요액과 일치한다.



B5변형/191면
2008. 12.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는 다른 방식으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제시한 측정단위가 아닌 다른 변수들이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요소에 포함되며, 그 중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다.

3.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방안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방교부세의 목적별 구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지방교부세의 목적별 구분은 지방교부세를 일반보조금의 세 가지 목적 즉, 수직적 재원불균형 보정, 세수입 확보능력 격차 보정, 공공재 공급비용 격차 보정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에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근거로 영국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시 계산해 보면 우리도 현재의 지역별 배분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

공공재 공급 보장을 위한 지원과 공공재 공급비용 격차 보정을 위한 지원, 그리고 세입 확보능력 격차 보정을 위한 지원으로 쉽게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의 지방교부세를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형평화 효과를 파악해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재 공급비용 격차 보정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수직적 형평성 보정을 위한 보조금 및 세입 형평화 보조금을 배분한 이후 지역별 1인당 세입규모가 평균치의 92%에서 114%까지로 평균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에는 95~122%까지 최대치와 최저치의 격차가 줄어들고, 군은 96~104%로 세입 형평화 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세입규모 격차가 거의 대부분 공공재 공급비용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그동안 실제 세수입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나 이는 모든 이론적 연구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지적하고 있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실제 발생한 자체세입이 아니라 세입 확보 능력의 지역간 격차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방법은 표준조세체계 또는 평균조세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또는 평균세율을 곱하여 세입 확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실제 세수입과 관계없이 자체 노력을 통해 세수입을 확대하면 그로 인한 세수입 증가분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수입이 감소하였을 경우 그 책임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자체세입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항목이 필요 없게 된다.

기준재정수요액 측정과 관련해서는 측정항목의

축소,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요소의 정비, 기초수요 및 보정수요 추정, 자체 노력 인센티브 항목의 정비가 주요 이슈가 된다. 측정항목 수가 몇 개가 되어야 적절한지에 대해서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 인공과 면적 등 아주 기초적인 변수들로만 기준재정수요를 추정하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측정 항목의 수에 대해 사전적으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 통폐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후 그 원칙에 따라 측정항목의 통폐합 여부를 판단하였다. 전체적으로 현행 17개 측정항목을 8개 항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측정항목에 대해 표준행정수요액이 그대로 기준재정수요액이 된다는 전제하에 현행 표준재정수요액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산정요소와 산정함수를 제시하였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8-13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09-09

요약

- 5월 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조세피난처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함
 - 미국 내 투자기업보다 해외투자기업에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현행의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미국 내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영국의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9년 4월 22일 2009예산안(Budget 2009)을 의회에 제출함
 - 세법 개정관련 주요 정책기조는 경제위기에 따른 후속 지원, 재정건전성을 위한 선별적인 증세, 저탄소성장 지원 등임
- 일본은 세법 개정을 통해 2009. 4. 1.부터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과세 면제하는 영토적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를 채택함
 - 일본 다국적기업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1. 미국 국제조세 관련 조세개혁 방안 발표

- 5월 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질의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피난처를 근절하기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함
 - 미국 내 투자기업보다 해외투자기업에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현행의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미국 내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04년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능동적 소득(active income)의 약 2.3%를 미국에서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음
 - 올해 1월에 나온 美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00대 대기업 중 83개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2003년에 미국 기업이 보고한 전체 해외소득 중 약 1/3 가량이 버뮤다, 네덜란드 그리고 아일랜드로부터 얻은 것임
- 오바마 행정부는 5월 말 발표 예정인 전체 예산안에 포함될 국제조세 분야의 추가 개편안과 더불어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 약 2,100억달러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계개편안을 제시함

- 첫째,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과세이연 규정(Deferral Rule)을 개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허점(loophole)을 차단함
- 둘째,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 축소를 통해 조달되는 추가적인 세수를 이용하여 R&D 공제제도를 영구화함
 - R&D 공제제도의 영구화는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R&D 비용의 75%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바, R&D 공제의 영구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됨

〈표 1〉 미국의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개편방안

	현행규정	개편안	세수효과 (FY 2011~ FY 201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기업은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미국에 송금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경비에 대해 지출 즉시 공제가 가능함 - 그 결과 해외투자기업이 미국 내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조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해외투자지원경비(R&D 비용 제외)의 손금산입 시점을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시점과 일치시킴	약 \$601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미국 기업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공제액을 부풀리거나 공제시기를 앞당기고 있음 - 일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 국내투자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원천소득 총액에 대해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총액에 기초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 •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불허함 	약 \$430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규정 형태로 R&D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981년에 R&D 공제제도가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13번에 걸쳐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연구 및 혁신에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R&D 공제를 영구화함	약 \$745억

■ 이와 더불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조세피난처의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계개편안을 제시함

- 첫째, 해외 자회사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게 해 줌으로써 해외 자회사 간의 소득의 이전에 대해 과세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허점(loophole)을 제거함



- 둘째, 개인의 조세피난처 악용을 근절함
- 셋째, 국제조세에서 tax gap을 줄이기 위해 국제청인력을 보강함

〈표 2〉 조세피난처 근절을 위한 세계개편방안

	현행규정/제도	개편안	세수효과 (FY 2011~ FY 201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모회사가 조세 피난처와 그 밖의 국가에 각각 하나씩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 간에 이전되는 소득(예를 들면 대여금 이자)은 모회사의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과세함 - 그러나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들은 "check-the box" 규정¹⁾을 이용하여 해외 자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의 이전에 대해 과세를 회피해 옴 	<p>특정 해외 자회사는 미국의 과세 목적상 별도의 법인으로 보도록 함</p>	약 \$865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I(Qualifying Institution) 제도²⁾가 정보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QI가 취하여야 할 입증절차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 손쉽게 원천징수의무를 빠져 나갈 수 있음 - QI가 아닌 금융기관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QI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바, 금융기관이 합법적인 QI의 운영과 불법적인 non-QI의 운영을 통해 탈세의 도관(conduit)으로서 기능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줌 - QI는 미국 고객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없는바,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법을 근절하기 위해 QI제도를 강화함 - 미국 금융기관이 QI가 아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30%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원천징수 금액의 환급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규 준수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미국인이 QI가 아닌 금융기관에 해외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FBAR 신고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고 추정함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특정 연년 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QI가 아닌 금융기관의 	약 \$8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고객이 외국법인 뒤에 숨는 경우 QI의 보고 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³⁾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국제청이 납세자에게 신고서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음 • QI제도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규정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부유층 납세자를 단속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부족함 -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가 과소 신고 금액의 20%로 제한되어 있음 - 해외계좌를 보유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기간(3년)이 지나치게 짧음 - 미국인이나 제3자가 해외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해외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을 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제청의 조사 능력에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에 20만달러 이상의 잔액을 갖고 있었다면 FBAR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⁴⁾ - 통상적인 지배하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 QI인 경우에만 QI 자격을 부여함 • 국제청이 국제조세 관련 탈세사건의 기소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수단을 제공함 -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불이행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를 두 배로 증가시킴 - 국제조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가능기간을 6년으로 연장함 - 미국 고객에 대한 QI의 정보보고의무를 미국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 - 미국 고객이 외국법인 뒤에 숨어 정보보고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함 - 미국의 투자자가 소득세 신고 때 QI가 아닌 해외 금융기관에 이체하였거나 QI가 아닌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받은 자산이나 자금을 대해 신고하도록 함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아래와 관련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인을 위해 해외 사업체를 설립하는 거래 • 미국인을 위해 해외 금융계좌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해외 금융계좌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거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조세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약 800명의 국제청 직원을 신규채용함

- 주: 1) 자회사의 법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과세 목적상 자회사를 모회사의 지점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따라서 check the box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과세 목적상 해외 자회사가 드러나지 않게 됨.
- 2) 미국의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증가기관이나 도관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이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법률 개정시 Q제도를 도입함. Q로 인정받은 금융기관은 국세청이 지정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보보고의 무가 있는 이자를 지급받는 미국인 고객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는 정보보고의무가 면제되는 등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3) 당해 역년 중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계좌를 가진 미국인은 재무부 금융범죄 수사국(FinCEN) 또는 국세청에 (TD Form 90-22.1)을 신고해야 함.
- 4)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반증(反證)을 들어 그 추정을 전복시킬 수 있음

2. 영국 2009예산안 발표

-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 22일 2009예산안(Budget 2009)을 의회에 제출함
 - 세법 개정관련 주요 정책기조는 경제위기에 따른 후속 지원, 재정건전성을 위한 선별적인 증세, 저탄소 성장 지원 등임
- 2009 예산안상 세법 개정 사항을 주요 정책기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2009예산안
(1) 경제위기에 따른 후속 지원정책	
법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율 인상(21% → 22%)의 적용시점을 2010년 4월 1일까지 연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납세지원서비스(Business Payment Support Service)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급계획에 따른 세금납부를 허용할 목적으로 도입한 기업납세지원서비스를 확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GBP 50,000을 한도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이는 법인의 경우 2008년 11월 24일부터, 비법인 사업체의 경우 2008-09 사업연도 및 2009-10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함

법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속상각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4월부터 신규 투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첫해 연도에 40%의 가속상각을 허용함 - 이는 요건을 갖춘 공장 및 기계에 GBP 50,000을 초과하여 투자한 법인에 대해 적용함 • 친환경 감가상각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4월부터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CO₂배출량에 따른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배당에 대한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7월 1일부터 해외배당에 대해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함
개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저축 계좌(ISA)의 투자한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4월 6일부터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는 ISA에의 연간 투자한도금액을 인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ISA의 경우 현 GBP 7,200에서 GBP 10,200으로 인상하고, 현금 ISA의 경우 현 GBP 3,600에서 GBP 5,100으로 인상함 - 또한, 50세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는 이를 2009년 10월 6일부터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당 공제금액을 2010년 4월부터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된 공제금액보다 GBP 20을 더 인상함
기타 간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등록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과세매출액 기준금액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인상함 (GBP 67,000 → GBP 6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면제 기준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이 GBP 175,000(현 GBP 125,00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액 인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함



구분	2009예산안
----	---------

(2) 재정건전성을 위한 선별적인 증세

- 최고세율 구간 추가
 - 2010년 4월부터 소득세 과세구간에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추가하여 소득세 과세구간을 현 두 단계에서 세 단계로 확대함
 - : 이는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 목적임

〈영국의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GBP)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37,400	20% ¹⁾	
37,400 ~ 150,000	40% ²⁾	40% ²⁾
150,000 ~		50% ³⁾

주: 1) 저축소득에 대해서는 GBP 2,440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
 2) 배당소득의 경우 32.5%의 세율을 적용
 3) 배당소득의 경우 42.5%의 세율을 적용

- 고소득자에 대한 인적공제 폐지
 - 과세표준이 GBP 100,000을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2010년 4월부터 소득세 인적공제를 서서히 폐지함
-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pension contributions)공제 제한
 - 2011년 4월부터 소득이 GBP 150,000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는 연금공제를 기본세율인 20%로 제한함

(3) 저탄소성장 지원정책

- 연료세(fuel duty) 인상
 - 2009년 9월 1일부터 주요 연료세를 리터당 2펜스를 인상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4월 1일 리터당 1펜스를 인상함

〈영국의 주요 연료세〉

구분	2009년 4월 1일 이후 적용 (£/litre)	2009년 9월 1일 이후 적용 (£/litre)
무연가솔린	0.5419	0.5619
중유	0.5419	0.5619
경유	0.6319 ¹⁾	0.6519

주: 1) 2009년 5월 1일 이후 적용

- 쓰레기매립세(landfill tax) 인상
 - 쓰레기매립세의 표준세율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4월 1일 톤당 GBP 8만큼 지속적으로 인상함
 - 한편, 비활성 쓰레기에 적용되는 톤당 GBP 2.50의 저세율은 2010-11년 동안 동결함

-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 구간 수 확대 및 인상
 - 저탄소 차량의 구입 및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 3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자동차 소비세(vehicle excise duty) 구간 수를 7개에서 13개로 확대함
 - : 이는 운전자가 선호하는 차종 중에서 저탄소 사양을 중심으로 차량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4월부터는 동 유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3개 구간간 세율 차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임
 - 또한 2010년 4월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초연도 세율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저탄소 차량 구매를 더욱 촉진함

〈영국의 개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소비세〉

과세구간	CO ₂ (g/km)	2008. 09	2009. 10	2010-11		2011. 12
				최초연도 세율 ²⁾	표준세율	
A	~100	£0	£0	£0	£0	£0
B	101~110	£35	£35	£0	£20	£20
C	111~120		£35	£0	£30	£35
D	121~130		£120	£0	£90	£90
E	131~140	£120	£120	£115	£110	£110
F	141~150		£125	£125	£125	£125
G	151~165	£145	£150	£155	£155	£155
H	166~175	£170	£175	£250	£180	£180
I	176~185		£175	£300	£200	£200
J	186~200	£210	£215	£425	£235	£235
K	201~225		£215	£550	£245	£245
L	226~255	£400 ³⁾	£405	£750	£425	£425
M	255~		£405	£950	£435	£435

주: 1) 2001년 3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 적용
 2) 신규구입 차량에 대해 적용
 3) 2006년 3월 23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 적용

기타 간접세

3. 일본 영토적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 도입

- 일본은 세법 개정을 통해 2009년 4월 1일부터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과세 면제하는 ‘영토적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를 채택함으로써 일본 다국적기업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영토적 과세체계란 일본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획득하는 이익이 국내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 대신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말함
 -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국제조세 분야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일본이 ‘영토적 과세체계’를 도입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모두 높은 법인세율과 ‘전세계 기준’에 의한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국가였음
 -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 ‘전세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미국 외의 ‘전세계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모두 세율이 30% 미만임
 - <표 3>은 Fortune Global 50개 회사의 본사 주재 국가 및 각 국가의 법정세율 및 과세방식에 대해 보여주고 있음

<표 3> 본사 주재국별 Fortune Global 50개 회사

본사 주재국	회사 수	회사 수 비중(%)	2009년 법정세(%) ¹⁾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미 국	17	34	35	전세계 기준 (Worldwide with credit)
프 랑 스	6	12	33.33	영토적 과세체계
독 일	5	10	15	영토적 과세체계
영 국	4	8	28	영토적 과세체계로 전환 중 ²⁾
네 델 란 드	2	4	25.5	영토적 과세체계
일 본	4	8	30	영토적 과세체계
중 국	3	6	25	전세계 기준
벨 기 에	2	4	33	영토적 과세체계
이 탈 리 아	2	4	27.5	영토적 과세체계
스 위 스	1	2	8.5	영토적 과세체계
한 국	1	2	22	전세계 기준
룩셈부르크	1	2	21	영토적 과세체계
멕 시 코	1	2	28	전세계 기준
러 시 아	1	2	20	전세계 기준
합계/평균	50	100		-

주: 1) 부가세 및 지방세 등은 포함하지 않은 법인세율임.
 2) 4월 22일 발표한 예산안에 영토적 과세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Fortune Global 500, calculations by Ernst & Young LLP, IBFD Global Tax surveys



| 정책 흐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추진
-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대한 IMF 전망 관련
-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국회 의결
- 내년 재정목표 '위기 후 기회 선점·재정건전성 확보'
-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 전국 지방세 고지서 전자메일로 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추진

* 본 자료는 2009년 5월 7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시장 정상화, 일자리나누기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4월 입법추진 세계개편' 이 국회를 통과함(09. 4. 30)에 따라
 -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개정 대상 시행령(4개)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국무회의(09. 6. 2)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임

◇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재외동포 전용펀드 관련 :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 4335)
- 임시투자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관련 :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 4132)
- Job-sharing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관련 : 소득세제도과(2150-4153)
- 기업구조조정, 은행자본확충펀드 관련 : 법인세제도과(2150-4172, 4174)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대상 : 조특·소득·법인·농특령 등 4개 세법 시행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법 개정내용〉

- ◇ '99. 12.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09. 4. 12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가 노후차 말소·이전 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의 70% 감면(감면한도 : 차량당 250만원 수준)
-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10%, 단, 1대당 2대 이상 감면시는 40%) 추정
 - ⇒ 다음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감면신청, 증빙자료 확인 및 제출 등 절차
 - 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정방법

- (세부 절차) 신차 구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자동차회사 등은 노후차 보유 여부(4. 12일 현재)만 확인하여 자동차 판매시 개별소비세 등을 즉시 감

면하고, 추후 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

- (추징방법)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자동차제조사·수입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신차구입자'에게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직접 추징

- * ① 노후차 말소·이전등록 또는 신차의 신규등록기간(2개월)을 지키지 않은 경우
- ② 노후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를 감면받은 경우 중, 최초로 노후차교체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의 감면세액 및 가산세
- ③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등 제조사·수입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② 기업의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법 개정내용〉

- ◇ 기업의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일정률'을 추가로 세액공제
- ⇒ 다음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추가공제율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며, 추가 공제율은 '10%'로 함

〈참고 : 추가공제액 산식(법 내용)〉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10%

1)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 투자 진행 중인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 개시된 금액

2)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시행령 사항)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3}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월수}}{12}$$

* 기간이 36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월로 환산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대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지방 10%, 수도권 3%)는 적용함

③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 세부사항 규정

〈법 개정내용〉

- ◇ 기업구조조정의 적시 추진을 위한 지원세제 마련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10년까지 한시적으로 분할과세·과세이연 등 허용
 - * (재무구조 개선관련) 자산매각, 주주의 자산증여, 감사(조직 변경 관련) 기업 양도, 주식 교환
 - 해운업에 대해 '10년까지 톤세* 포기 허용
 - *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운임이 높을 때는 일반 법인세보다 유리하나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을 때는 법인세보다 불리
 - ⇒ 다음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기업구조조정 관련 감면세액의 추징방법
 - 톤세 포기시 법인세 과세방법 등

- (감면세액 추징) 3년 내 사업폐지 또는 구조개선 계획 미이행, 3년 내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톤세제도 일반 법인세 전환시 과세방법 규정) 톤세 적용기간에도 계속 일반 법인세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전환 후 과세소득 계산
- * 감가상각 등 결산 조정사항은 톤세 적용기간 중 한도액만큼 손금산입한 것으로 간주

④ Job-sharing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부사항 규정

—〈법 개정내용〉—

- ◇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법 §30의 3)
 - 소득공제 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당해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 다음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상시근로자 기준, 임금총액 산정방법 등

- (상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 등 제외
- (임금총액)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
- 중도 입사·퇴사자 등 직전연도와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의 연간 임금총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예) 7.1일 입사·퇴사자의 경우 6개월분의 임금감소분에 대해 소득공제
- 회사의 합병·분할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의 임금을 합산하여 연간 임금총액 계산

⑤ 재외동포 전용펀드 배당소득 감면 세부사항 규정

—〈법 개정내용〉—

- ◇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10. 12.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여 '12. 12.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 펀드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 분에 대해서는 5% 분리과세
- ⇒ 다음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감면대상 재외동포의 범위,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요건, 감면배제 예외 사유, 감면시 제출서류 등

- (재외동포의 요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자,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 거주자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 취득자 및 그 2·3세
- (전용펀드의 요건) : 자통법상 집합투자기구&가입자 전원이 재외동포& 국내자산(부동산 포함)에만 투자

2.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1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세 부사항 규정

— (법 개정내용) —

- ◇ 비거주자의 국채·통안채 이자소득·양도차익 비과세
 -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해 취득·보관·양도하는 국채 등을 포함
- ⇒ 다음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준수사항 및 비과세 신청 절차

- 적격 금융기관의 자격·승인·의무를 규정
- ※ 국내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투자 외에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비과세 허용

(적격 금융기관의 자격·승인·의무)

- ① 자격 : 조세조약 체결국가에 본점 등이 있는 외국 증권예탁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서 외국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 등
- ② 승인 : 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장이 승인
- ③ 의무 : 비거주자 신원확인, 투자자별 계좌개설 등 관련자료 보관·비치 등

-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 (직접투자) 이자 지급시 투자자가 면제신청서 제출
 - (간접투자) 이자 지급시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면제신청서 제출

2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 원천징수에 따른 자금운용기회가 박탈되는 문제점 해소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신설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현행 규정상 자동차 취·등록시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중. 농특세 부담도 비과세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 본 자료는 2009년 5월 7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현 경제상황 평가

① (거시경제상황) 금융시장 안정과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경기침체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1/4분기에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전기비 성장률이 (+)로 전환

GDP 성장률 국제비교(%)

	08					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전기비 연률)	1.1	0.9	2.8	△0.5	△6.3	△4.0	△6.1	△4.3	△1.8	△0.4
유로(전기비)	0.7	0.6	△0.2	△0.2	△1.6	△4.1	△1.7	△1.1	△0.6	△0.2
일본(전기비)	△0.6	0.3	△1.2	△0.4	△3.2	△6.6	△2.7	△0.8	△0.7	△0.1
한국(전기비)	2.2	1.1	0.4	0.2	△5.1	△2.0	0.1	-	-	-

註) 미국·유로·일본의 09년 성장률은 09.3월 OECD 전망치(단, 미국 1/4분기는 실적치), 한국의 09년 1/4분기 성장률은 실적치

- 그러나, 회복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하여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

* '07~'08년 평균 성장률 3.7% 중 정부 소비·투자의 기여도는 0.6%p이나, '09. 1/4분기 성장률 △4.3%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5%p

② (위험요인) 금융·실물여건의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위험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아직 위험요인 지속

- (대외부문) 외환수급 개선 등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나, GM 파산가능성·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등 불안요인 상존

* 한국물 CDS(5년) : ('08. 12월) 318bp → ('09. 2월) 437bp → (4월) 248bp

* 외환보유액(억달러) : (08. 12월) 2,012 → ('09. 3월) 2,063 → (4월) 2,125

- (금 융) 신용보증 확대 등 자금경색 해소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성 존재

-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 제기

- (기 타) 석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불안요인 상존

-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 3구는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세 시현

* 강남3구 아파트가격 주간 상승률(%) : (3.30)0.14 (4.6)0.34 (4.13)0.43 (4.20)0.12

③ (구조개혁) 각 부문의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로 인하여 성장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 필요

- 가계부채가 많으며 기업부문의 부채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국가별 GDP 대비 차입금 비율(% , 한은, '09. 4)

- 개인 : (한국) 78.3, (미국)100.5, (일본) 66.2, (영국) 100.5, (호주)110.5
- 기업 : (한국)112.8, (미국) 77.0, (일본)102.1, (영국) 112.9, (호주) 81.4
- 외국의 경우 기업이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간의 높은 환율, 금융지원 등으로 체질개선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
-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으며, 부정·중복수급 등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노정
- 청년층 실업 등으로 양질의 인적자본 축적이 제약되고, 생산성 증가도 투자 부진 등으로 둔화 우려

2. 향후 대응방향

① (그간의 정책대응 평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둔 결과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을 완화하고, 신용보증공급 확대 등으로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성도모

② 향후 대응방향

- (거시정책) 거시정책은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나타낼 때까지 현 기조를 유지
- 예산 조기집행, 차질 없는 추경집행 등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
- 유동성 문제는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 그간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Exit Strategy)은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추진되도록 검토
- (구조개혁)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 유도
-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
- (위기 이후 대비)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추진
- G-20, ASEAN+3, IMF 등에서의 한국 역할 제고
- 저탄소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가 R&D 체제 효율화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 노력 지속
-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이후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대한 IMF 전망 관련

* 본 자료는 2009년 5월 5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대한 IMF 전망 관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① IMF는 세계 경제전망 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통계자료(Data and Statistics)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전망치 제시

-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8년 19,505달러에서 금년 14,946달러로 감소한 뒤 점차 증가하지만 2014년 19,015달러로 2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

IMF 주요경제지표 전망치

(조원, %)

	'09	'10	'11	'12	'13	'14
실질성장률(%)	△4.0	1.5	5.3	5.1	4.7	4.5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3.8	2.5	2.4	1.5	2.3	3.3
명목환율(원/달러, 추정치) ¹⁾	1403	1433	1459	1479	1495	1510
1인당 GDP(달러)	14,946	15,192	16,067	16,866	17,840	19,016
경상수지(억달러)	208	222	242	259	250	281

1) 원화표시 명목 GDP와 달러표시 명목 GDP를 활용하여 역산

② 1인당 GDP의 전망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GDP Deflator) 및 환율에 대한 전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 IMF 전망에서는 성장률은 금년 △4.0%, 내년 1.5%, 그 이후 4%대 후반, 물가상승률(GDP Deflator)은 2~3%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연평균)을 작년 1,080원에서 금년 1,408원, 2014년 1,510원으로 전망
- 그러나 환율이 2014년 1,510원으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IMF의 1인당 GDP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달러화 대비 환율이 이미 1,270원대 수준이며 경상수지 흑자(IMF는 2014년까지 매년 220~28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에 따른 절상압력을 고려할 경우 IMF의 환율 전제는 다소 비현실적

③ 참고로 IMF 전망 중 환율 전제만을 수정하여 1인당 GDP를 산정할 경우,

- 현 환율수준(1,273원, 5.4일)을 유지한다고 전제시 1인당 GDP는 2013년 2만달러를 상회하고
- 2008년 평균 환율수준(1,103원)로 복귀한다고 전제시에는 2011년 2만달러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

1인당 GDP(달러)

	'09	'10	'11	'12	'13	'14
IMF 전망	14,946	15,192	16,067	16,866	17,840	19,016
현 환율수준 (1,273원)	15,938	17,068	18,361	19,550	20,905	22,537
2008년 평균 환율 수준	15,938	19,691	21,183	22,554	24,118	26,001

※ 정부의 성장 전망치(2009년 △2.0%, 2010년 4.0%)를 사용할 경우 2만달러 달성 시기는 현 환율전제시 2012년, 2008년 평균 환율수준 전제시 2010년으로 각각 1년씩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산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본 자료는 2009년 5월 1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의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가 기 발표('09. 3. 16)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09. 4. 30(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안 외에 관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의원입법안이 추가되어 총 5개 세법개정안이 의결

-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증과제도 개선

-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던 양도세 증과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②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세제 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지원세제 중 필요한 것은 부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세제지원 제도는 새로운 구조조정 수요에 맞게 수정·보완

③ 기업의 투자활성화, 일자리 나누기, 외환유동성 확충 지원

-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10%의 추

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

-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일본 등 OECD 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 및 채권양도차익 비과세 등

- 국회 심사 결과 '양도세 증과제도 개선'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별도 수정 없이(의원입법안 중 일부 내용 추가) 통과

- 양도세 증과제도 개선 법안은 당초 정부안대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던 증과세율을 기본세율로 조정하되,

-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투기우려 지역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1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투기지역의 경우 '10. 12. 31까지 개인은 '양도세 기본세율 +10%p', 법인은 '법인세 기본세율+10%p 추가과세'를 적용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법률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임

국회 심사결과 수정사항

1. 소득세법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증과제도 개선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주택자 : 영구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주택 이상자 : 영구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 영구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주택자 : '10. 12. 31까지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12. 31까지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단, 투기지역의 경우 '10. 12. 31까지 기본세율+10%p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수정 이유> 증과제도 완화에 따른 투기억제 방안 보완

2. 법인세법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증과제도 개선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를 추가과세(30%p)하는 증과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을 '10. 12.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를 추가과세(30%p)하는 증과제도의 적용을 배제 단, 투기지역의 경우 '10. 12. 31까지 법인세 추가과세(10%p)를 적용

<수정 이유> 증과제도 완화에 따른 투기억제 방안 보완

3. 조세특례제한법

■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99. 12.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 등록)된 노후차를 '09. 4. 12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자 노후차 말소·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차를 폐차·양도하고 신차로 교체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교체지원 세제혜택 (신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소비세 및 취득·등록세 70% 감면 감면한도 : 총 2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100만원(교육세30, 부가세13, 취득세 9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요건 미충족시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과 40% 상당 가산세 일몰기한 : ① + ② <ol style="list-style-type: none"> '09. 5. 1일~'09. 12. 31일중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차량 '09. 5. 1일~'09. 12. 31일중 취득하여 등록된 차량

※ (재정위 부대의견) 정부는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종합 평가를 2009년 정기국회 개최 이전까지 시행하여 신차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이주택지 양도세 과세특례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p><신 설></p>	<p>■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 1억원 이하) 양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 단기양도 중과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 • '1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개정 이유> 영세 서민의 주거안정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4. 종합부동산세법

■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보완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p>■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 -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 부여 • 금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개정 이유>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

* (사례) 서울에 1주택이 있고 경기도에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1개 소유한 경우 종전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을 배제했으나,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 등 적용

5. 관세법

■ 수입농수축산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p><신 설></p>	<p>■ 수입품 유통이력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안전·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의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보고하는 의무 부과 * 상호·사업자번호, 거래물량, 거래일자 등 - 신고대상 세부품목·신고기간 등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의무부과 대상에서 제외 • 수입품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배제 및 사업자 부담 최소화 원칙 규정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의무자의 거래자료 1년간 보관 의무 및 세관 공무원의 사업장 방문조사권 도입 • 허위신고·미신고 등 위반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개정 이유> 수입품 관련 위해 발생시 신속한 경로추적·회수(Recall)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 강화

국회 통과(4.3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요약)

1. 소득세법

①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종과제도 개선

- 일반지역 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과세하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최고 45% 세율로 과세

* 기본세율 : '09년 6 ~ 35%, '10년 이후 6 ~ 33%

- '09. 3. 16 ~ '10.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 '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2주택자는 '10년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 유지

② 비거주자가 투자하는 국채·통안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2. 법인세법

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종과제도 개선

- 일반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30%p 법인세 종과제도는 폐지하여 일반 법인세*만 과세하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10%p 법인세 추가 과세

* 기본세율 : '09년 (11, 22%), '10년 이후 (10, 20%)

- '09. 3. 16 ~ '10.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이거나 주택이더라도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일반 법인세만 과세

- '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②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국채·통안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3. 조세특례제한법

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 ①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양수도·주식교환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② 해운업·금융업 구조조정 지원

②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 ①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 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3년간 평균 투자규모) × 10%

	기본 공제율		초과분 공제율		초과분 총공제율
수도권과밀억제권내	3%	+	10%	→	13%
수도권과밀억제권외	10%	+	10%	→	20%

- ②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 ③ '99. 12. 31일 이전 등록차량을 폐차·양도하고 신차로 교체시, 개별 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70% 감면*하여 자동차 내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감면한도 : 250만원(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③ 외화유동성 확충 지원 등

- ①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 비거주자가 향후 1년간('09. 3. 16 ~ '10. 2. 11)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②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10년 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12년 말까지 배당받는 소득은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과세

③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이주택지 양도세 과세특례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 1억원 이하) 양도시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11. 12. 31까지)

* 단기양도 중과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 ~ 2년 미만 40%

제)을 부여

* (사례) 서울에 1주택이 있고 경기도에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1개 소유한 경우 종전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을 배제했으나,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 등 적용

4. 관세법

■ 수입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제 도입

•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 물품*의 유통단계별거래정보를 사업자(소매업자 제외)가 관세청장에 보고하는 의무 신설

* (예시) 수입 쇠고기 등

• 허위신고·미신고 등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상한) 부과

5. 종합부동산세법

■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혜택 부여

•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국회 의결

* 본 자료는 2009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국회 의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민생 안정을 위한 2009년도 일자리 추경예산이 4, 29(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 추경규모 : (정부안)28.9조원 → (국회 확정)28.4조원 (△0.5조원)
 - 세입결손 보전 : 11.2조원 정부안 유지
 - 세출증액 : 정부안 대비 0.5조원 감소한 17.2조원
 - * 국회심의 조정 : (증액 1.5조원, 감액 △2.0조원)
 - 국가채무 : 정부안 대비 0.9조원 감소한 366.0조원
 - 일반회계 국채 : 정부안 대비 1.5조원 감소한 35.5조원

(조원, %)

	'08	'09당초	'09추경안(A)	'09확정(B)	B-A
■ 총 수입	274.2	291.0	279.8	279.8	-
■ 총 지출	262.8	284.5	302.3	301.8	△0.5
■ 관리대상수지	△16.6	△24.8	△51.6	△51.0	0.6
(GDP 대비, %)	(△1.7)	(△2.4)	(△5.0)	(△5.0)	
■ 국가채무	308.3	349.7	366.9	366.0	△0.9
(GDP 대비, %)	(30.1)	(34.1)	(35.6)	(35.6)	
■ 일반회계 국채(순증)	7.4	19.7	36.9	35.5	△1.5

- ◇ 주요 세출 증가액 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로 1,185억원 지원
 - 정규직 전환지원금 : 900억원

-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감면 : 285억원
 -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동 지원방안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집행할 계획
-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 SI) 확산에 대응한 예방 및 검역 강화 : 994억원
 - 항바이러스제(치료제) 비축물량 250만명분 구입 : 630억원 → 비축물량을 총인구의 10% 수준(500만명분)으로 제고
 - 예방백신 130만명분 구입 : 182억원
 - 수입·국내돼지 검사 장비·시설 확충 : 161억원
- 지방재정 보완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지원
 - 한시생계구호, 초·중등학교시설개선 등 '09년 한시적으로 신규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매칭비율 인하 등 지자체 부담 완화 : 0.5조원
 - 추경으로 지자체가 신규로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자기금을 통해 지방채 추가 매입 : 0.8조원(5.3조 → 6.1조원)
 - 교부세 감액분 보완(4.5조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공자기금에서 전액 매입하고, 이자 일부(1.62%p)를 지원
- 중소기업 시설 자금 지원
 -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신성장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설자금 용자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지원 : 0.3조원

* 창업활성화 자금(1,500억원), 신성장 기반조성(1,200억원),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300억원)

■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무상
장학금을 차상위 계층(11만명중 대상자 선정)으
로 확대 : 710억원

*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무상장학금의 1/2(215만원)을
'09.2학기부터 2년간 지원

• 대학생 무이자 대출대상 1~2분위 → 3분위(3.7만
명) 확대 : 11억원

* '09. 2학기부터 향후 2년간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일로부
터 2년간 무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 설립('09. 5. 7)을 통해 학자금 대
출금리 인하 ('09 추경예산에 1,300억원 반영)

- '09. 2학기부터 장학재단 채권발행(1.3조원)을 통
한 직접 대출로 대출금리 인하($\Delta 1.0 \sim \Delta 1.5\%p$)
가능

내년 재정목표 '위기 후 기회 선점·재정건전성 확보'

-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 본 자료는 2009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에서 발표한 「경제정상화와 위기 이후 기회 선점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10년부터 경제 정상화와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은 적극 뒷받침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를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

- ◇ 2010년도 재정운용 목표는
 - 우리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뒷받침하고,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감에 중점
- ◇ 2010년도 재원배분 방향은
 - 첫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점 지원함
 - ☞ 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 ☞ 녹색성장·신성장동력·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함

- 둘째, 세출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함
- 셋째,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함
 -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며
 - ☞ 복지, 농업, R&D 등 각종 재정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함
- ◇ 위기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함
 - ☞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및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 ☞ 정책효과의 수혜자가 한정되는 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확대함
 -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며
 - ☞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을 제시하도록 함

- 기존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 국정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사업의 재정성과관리를 강화하며
- ☞ 용자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하여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고, 금리·대출기간 등 복잡다기한 용자조건을 정비함

◇ 한편 2010년도부터는 '09년과 달리

-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 둘째,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 제출하며
- 셋째, 장래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회 심의·의결받게 됨

◇ 금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고
-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10. 2)하게 됨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 본 자료는 2009년 4월 30일 국세청 소득지원과에서 발표한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에서는 금년도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5.1(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안내문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발송

<각 지방청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인원>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760천명	125천명	235천명	84천명	102천명	85천명	129천명

-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의 우편물 반송 등에 대비하여 국세청에서 전자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명에 대하여는 전자메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동봉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 5. 1(금) ~ 6. 1(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5. 1 ~ 6. 1)에 신청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 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 근로소득 증거자료 :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① 급여지급대장 사본
- ②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④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⑥ 근로소득지급확인서

- 아울러,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한편,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하여
 - 신청안내문 발송 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고
 -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세무서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 설치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참고 근로장려세제 주요 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 가능

요건	내용
① 총 소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산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환급 및 환급의 제한

요건	내용
① 신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
② 결정·환급	신청 후 3개월 내(8월) 결정,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결정 후 30일 내 환급(9월)
③ 환급제한	고의·중과실(2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5년)

*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6월 말까지 환급

■ 근로장려금의 산정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 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15%
•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20만원 정액 지급
•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24%

*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 외의 자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 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전국 지방세 고지서 전자메일로 받아요!

- '09. 4. 30부터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송달서비스 개시 -

* 본 자료는 2009년 4월 3일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세 고지서 전자메일로 받아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전자고지함)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를 4월 3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전자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다.
 - ※ 위택스(WeTax):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관련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서울은 '09. 7월부터)
-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아 전자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예산도 절감된다.
 - ※ 전자고지송달 20% 이용시 자치단체 고지서 제작, 우편발송비 매년 28억원 절감 기대
 - 141억원(전국자치단체 고지서제작, 우편발송비) × 20%(전자고지이용률) = 28억원
 - 전국 자치단체 종이고지서 제작, 우편발송비용으로 매년 141억원 지출
-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가 실시되면 납세자는 전자메일(전자고지함)로 고지서를 받아 분실 우려가 없고 집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납부내역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약 7천 8백만건의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종이자원(전량수입)이 절감되어 종이 없는(Paperless) 녹색지방세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재정통계 |

-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총괄(2005~)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1983~2005)
- 부가세 경정현황(경정유형별, 2006~)
- 업태별 부가가치율

1.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B/A)	(C/A)
1977	218,224	247,238	241,573	642	5,023	113.3	110.7
1978	817,115	846,942	838,907	4,709	3,326	103.7	102.7
1979	1,006,946	1,103,417	1,088,675	4,963	9,779	109.6	108.1
1980	1,472,163	1,507,150	1,471,194	9,244	26,712	102.4	99.9
1981	1,890,413	1,899,076	1,804,760	16,106	78,210	100.5	95.5
1982	2,142,931	2,251,111	2,094,383	26,621	130,107	105	97.7
1983	2,513,658	2,759,183	2,559,277	37,997	161,909	109.8	101.8
1984	2,737,860	2,945,555	2,704,272	44,571	196,712	107.6	98.8
1985	3,031,074	3,154,923	2,901,197	50,691	203,035	104.1	95.7
1986	3,138,132	3,605,941	3,272,210	65,962	267,769	114.9	104.3
1987	3,579,790	3,949,942	3,650,479	76,742	222,721	110.3	102
1988	3,995,152	4,382,836	4,205,215	72,457	105,164	109.7	105.3
1989	4,686,836	5,463,006	5,260,229	71,990	130,787	116.6	112.2
1990	6,714,058	7,187,670	6,964,419	68,159	155,092	107.1	103.7
1991	8,752,203	8,588,360	8,252,627	62,689	273,044	98.1	94.3
1992	10,383,796	10,610,992	10,076,296	101,703	432,993	102.2	97
1993	12,003,846	12,287,114	11,687,506	152,562	447,046	102.4	97.4
1994	13,478,700	13,762,576	13,057,973	170,144	534,459	102.1	96.9
1995	14,522,400	15,754,211	14,636,893	365,278	752,040	108.5	100.8
1996	16,606,400	18,225,257	16,789,539	469,481	966,237	109.7	101.1
1997	18,619,200	21,473,127	19,487,991	572,279	1,412,857	115.3	104.7
1998	16,434,200	18,200,874	15,706,805	981,218	1,512,851	110.7	95.6
1999	18,807,706	22,900,346	20,369,037	930,947	1,600,362	121.8	108.3
2000	21,669,500	25,654,731	23,212,042	746,475	1,696,214	118.4	107.1
2001	23,843,400	28,735,093	25,834,726	1,148,842	1,751,525	120.5	108.4
2002	31,967,700	34,989,929	31,608,756	1,391,410	1,989,763	109.5	98.9
2003	33,713,900	37,633,037	33,447,038	1,832,550	2,353,449	111.6	99.2
2004	37,196,600	39,906,108	34,571,755	2,218,472	3,115,881	107.3	92.9
2005	36,224,400	41,577,075	36,118,641	2,153,532	3,304,902	114.8	99.7
2006	41,315,200	42,773,012	38,092,857	1,536,031	3,144,124	103.5	92.2
2007	41,163,100	46,248,492	40,941,908	1,996,358	3,310,226	112.4	99.5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것임.

2. 징수결정액은 자진납부세액에 고지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환급결정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

3. 수납액은 자진납부세액과 고지결정세액 중 납부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총괄(2005~)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신고인원[1] (1)	과세분매출			영세율매출[2]		면세분매출[3]	
		인원(2)	과세표준(3)	세액(4)	인원(5)	과세표준(6)	인원(7)	수입금액(8)
2005년 합계	4,123,306	4,008,707	1,646,229,207	162,869,234	114,599	581,500,568	176,463	207,757,227
2005년 1기	4,066,022	3,954,627	780,197,738	77,166,859	111,395	278,156,680	163,966	85,668,983
2005년 2기	4,123,306	4,008,707	866,031,469	85,702,375	114,599	303,343,888	176,463	122,088,244
2006년 합계	4,260,946	4,147,865	1,792,209,408	177,204,306	113,081	628,510,384	183,556	220,320,335
2006년 1기	4,152,466	4,040,925	857,188,390	84,723,367	111,541	302,381,046	168,925	98,856,016
2006년 2기	4,260,946	4,147,865	935,021,018	92,480,939	113,081	326,129,338	183,556	121,464,319
2007년 합계	4,601,534	4,484,805	1,969,672,685	194,732,451	116,729	710,193,559	194,560	242,404,750
2007년 1기	4,478,140	4,364,650	939,394,030	92,824,619	113,490	336,008,814	180,220	105,524,623
2007년 2기	4,601,534	4,484,805	1,030,278,655	101,907,832	116,729	374,184,745	194,560	136,880,127

구 분	매입세액[4]			납부세액 (12=4-11)	가산세액 (13)	공제세액[5][6] (14)	차감납부할 세액 (15=12+13-14+16)	차감환급할 세액 (16)
	인원(9)	과세표준(10)	세액(11)					
2005년 합계	2,015,288	1,656,734,809	147,190,862	15,678,372	22,303	890,153	49,609,329	34,798,807
2005년 1기	1,993,759	787,316,933	69,661,698	7,505,161	10,590	419,916	23,540,952	16,445,117
2005년 2기	2,015,288	869,417,876	77,529,164	8,173,211	11,713	470,237	26,068,377	18,353,690
2006년 합계	2,089,106	1,811,001,395	161,238,051	15,966,255	20,568	1,018,525	53,338,564	38,370,266
2006년 1기	2,052,054	868,877,334	77,300,588	7,422,779	10,151	499,685	25,503,523	18,570,278
2006년 2기	2,089,106	942,124,061	83,937,463	8,543,476	10,417	518,840	27,835,041	19,799,988
2007년 합계	2,216,043	2,014,521,223	178,220,152	16,512,299	24,134	1,144,020	57,699,354	42,306,941
2007년 1기	2,162,580	961,415,212	85,156,528	7,668,091	11,874	564,204	27,298,593	20,182,832
2007년 2기	2,216,043	1,053,106,011	93,063,624	8,844,208	12,260	579,816	30,400,761	22,124,109

주: [1] 신고인원은 2007. 2기 확정신고 인원임

[2] 영세율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분임

[3] 면세분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분임

[4] 매입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금계산서매입과 기타매입(의제매입, 신용카드수취매입 등)을 포함함

[5] 간이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세액에 포함되었음

[6] 공제세액은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임

[7]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당초 신고일 이후 통계연보 작성일까지의 변동사항추가, 정정, 삭제를 반영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단위: 명, 억원)

연 도	인 원					과 세 표 준				
	계	법인	일반(개인)	간이(개인)	특례(개인)	계	법인	개인일반	간이	과세특례
1983	1,168,672	37,525	252,273	-	878,874	1,434,211	1,122,819	245,963	-	65,429
1984	1,221,161	40,645	281,786	-	898,730	1,548,835	1,193,717	286,950	-	68,168
1985	1,269,342	43,712	310,883	-	914,747	1,649,959	1,270,472	310,788	-	68,699
1986	1,341,398	47,523	345,143	-	948,732	1,896,456	1,462,464	365,506	-	68,486
1987	1,420,082	53,088	388,894	-	978,100	2,270,977	1,765,903	438,102	-	66,972
1988	1,472,424	59,934	410,269	-	1,002,221	2,654,569	2,065,858	518,390	-	70,321
1989	1,654,553	69,511	468,771	-	1,116,271	2,965,561	2,293,451	594,378	-	77,732
1990	1,834,240	81,402	550,780	-	1,202,058	3,632,349	2,806,283	738,178	-	87,888
1991	1,988,821	94,579	626,974	-	1,267,268	4,456,882	3,453,829	905,849	-	97,204
1992	2,102,203	107,073	672,723	-	1,322,407	5,048,362	3,952,451	988,039	-	107,872
1993	2,253,105	117,374	778,854	-	1,356,877	5,778,181	4,522,435	1,135,498	-	120,248
1994	2,388,044	133,911	933,335	-	1,320,798	6,903,037	5,402,193	1,373,072	-	127,772
1995	2,526,198	150,023	1,103,567	-	1,272,608	8,383,692	6,635,042	1,618,249	-	130,401
1996	2,580,113	169,512	926,841	273,197	1,210,563	9,606,041	7,671,075	1,732,211	53,382	149,373
1997	2,930,116	192,333	1,004,852	490,034	1,242,897	10,859,827	8,816,471	1,751,835	132,579	158,942
1998	2,855,369	197,185	979,285	546,161	1,132,738	10,569,437	8,769,673	1,538,111	125,864	135,789
1999	2,998,956	232,474	1,059,109	586,800	1,120,573	11,717,850	9,598,884	1,821,606	158,356	139,004
2000	3,390,772	278,657	1,442,987	1,669,128	-	13,856,522	11,369,768	2,200,326	211,875	74,553
2001	3,709,035	321,204	1,573,217	1,814,614	-	15,153,891	12,433,732	2,454,034	266,125	-
2002	3,963,454	345,292	1,774,268	1,843,894	-	17,255,021	14,159,550	2,824,369	271,102	-
2003	3,994,665	359,154	1,861,707	1,773,804	-	18,826,686	15,565,243	3,008,677	252,766	-
2004	3,942,247	372,041	1,924,877	1,645,329	-	21,280,857	17,812,752	3,228,273	239,832	-
2005	4,121,612	400,398	2,117,551	1,603,663	-	22,276,583	18,575,818	3,459,367	241,398	-
2006	4,260,946	420,154	2,216,802	1,623,990	-	24,207,198	20,145,075	3,800,085	262,039	-
2007	4,601,534	456,019	2,385,687	1,759,828	-	26,798,662	22,317,804	4,185,224	295,635	-

주: 연도별 인원은 소액부징수자를 포함한 각 연도 2기 확정 신고 인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단위: 억원, %)

연 도	유 형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실세수	
		계	국내분	수입분	계	일반환급	조기환급			세액	점유비	
							소계	수출	투자			
1983	계	35,095	19,755	15,340	10,106	914	9,192	8,286	906	24,989	100.0	
	법 인	28,434	13,094	15,340	8,807	582	8,225	7,621	604	19,627	78.5	
	개인일반	5,395	5,395	-	1,299	332	967	665	302	4,096	16.4	
	특례	1,266	1,266	-	-	-	-	-	-	1,266	5.1	
1984	계	40,668	22,277	18,391	13,287	983	12,304	11,094	1,210	27,381	100.0	
	법 인	32,945	14,554	18,391	11,623	620	11,003	10,245	758	21,322	77.9	
	개인일반	6,401	6,401	-	1,664	363	1,301	849	452	4,737	17.3	
	특례	1,322	1,322	-	-	-	-	-	-	1,322	4.8	
1985	계	43,750	24,340	19,410	14,045	763	13,282	11,762	1,520	29,705	100.0	
	법 인	35,517	16,107	19,410	12,318	487	11,831	10,815	1,016	23,199	78.1	
	개인일반	6,901	6,901	-	1,727	276	1,451	947	504	5,174	17.4	
	특례	1,332	1,332	-	-	-	-	-	-	1,332	4.5	
1986	계	50,565	29,339	21,226	18,132	708	17,424	15,528	1,896	32,433	100.0	
	법 인	41,013	19,787	21,226	15,922	444	15,478	14,140	1,338	25,091	77.4	
	개인일반	8,222	8,222	-	2,210	264	1,946	1,388	558	6,012	18.5	
	특례	1,330	1,330	-	-	-	-	-	-	1,330	4.1	
1987	계	62,854	33,783	29,071	26,715	699	26,016	23,468	2,548	36,139	100.0	
	법 인	51,652	22,581	29,071	23,945	422	23,523	21,750	1,773	27,707	76.7	
	개인일반	9,907	9,907	-	2,770	277	2,493	1,718	775	7,137	19.7	
	특례	1,295	1,295	-	-	-	-	-	-	1,295	3.6	
1988	계	74,002	40,696	33,306	29,422	918	28,504	24,805	3,699	44,580	100.0	
	법 인	60,516	27,210	33,306	26,250	589	25,661	23,092	2,569	34,266	76.9	
	개인일반	12,121	12,121	-	3,172	329	2,843	1,713	1,130	8,949	20.1	
	특례	1,365	1,365	-	-	-	-	-	-	1,365	3.1	
1989	계	84,015	48,834	35,181	29,063	1,465	27,598	22,306	5,292	54,952	100.0	
	법 인	68,342	33,161	35,181	24,766	965	23,801	20,411	3,390	43,576	79.3	
	개인일반	14,185	14,185	-	4,297	500	3,797	1,895	1,902	9,888	18	
	특례	1,488	1,488	-	-	-	-	-	-	1,488	2.7	
1990	계	105,009	61,827	43,182	35,370	1,901	33,469	23,111	10,358	69,639	100.0	
	법 인	85,429	42,247	43,182	28,770	1,173	27,597	20,935	6,662	56,659	81.4	
	개인일반	18,022	18,022	-	6,600	728	5,872	2,176	3,696	11,422	16.4	
	특례	1,558	1,558	-	-	-	-	-	-	1,558	2.2	

4.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계속>

(단위: 억원, %)

연 도	유 형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실세수	
		계	국내분	수입분	계	일반환급	조기환급			세액	점유비	
							소계	수출	투자			
1991	계	130,034	78,009	52,025	42,320	2,937	39,383	28,108	11,275	87,714	100.0	
	법 인	104,878	52,853	52,025	34,267	1,817	32,450	25,778	6,672	70,611	80.5	
	개인일반	23,398	23,398	-	8,053	1,120	6,933	2,330	4,603	15,345	17.5	
	특례	1,758	1,758	-	-	-	-	-	-	1,758	2	
1992	계	144,496	90,650	53,846	41,285	3,214	38,071	28,446	9,625	103,211	100.0	
	법 인	115,995	62,149	53,846	34,085	2,052	32,033	26,001	6,032	81,910	79.4	
	개인일반	26,505	26,505	-	7,200	1,162	6,038	2,445	3,593	19,305	18.7	
	특례	1,996	1,996	-	-	-	-	-	-	1,996	1.9	
1993	계	160,738	102,984	57,754	41,396	4,336	37,060	27,657	9,403	119,342	100.0	
	법 인	129,840	72,086	57,754	33,234	2,751	30,483	25,025	5,458	96,606	80.9	
	개인일반	28,641	28,641	-	8,162	1,585	6,577	2,632	3,945	20,479	17.2	
	특례	2,257	2,257	-	-	-	-	-	-	2,257	1.9	
1994	계	187,923	117,816	70,107	50,879	4,555	46,324	33,453	12,871	137,044	100.0	
	법 인	151,650	81,543	70,107	40,695	2,408	38,287	30,528	7,759	110,955	80.9	
	개인일반	34,130	34,130	-	10,184	2,147	8,037	2,925	5,112	23,946	17.5	
	특례	2,143	2,143	-	-	-	-	-	-	2,143	1.6	
1995	계	225,403	136,535	88,868	72,431	6,462	65,969	48,498	17,471	152,972	100.0	
	법 인	182,921	94,053	88,868	60,408	4,021	56,387	45,342	11,045	122,513	80.1	
	개인일반	41,090	41,090	-	12,023	2,441	9,582	3,156	6,426	29,067	19	
	특례	1,392	1,392	-	-	-	-	-	-	1,392	0.9	
1996	계	259,402	158,360	101,042	83,579	7,601	75,978	54,644	91,664	175,823	100.0	
	법 인	211,579	110,537	101,042	70,074	4,828	65,246	50,956	14,290	141,505	80.5	
	개인일반	46,152	46,152	-	13,478	2,746	10,732	3,688	7,044	23,674	13.5	
	특례	702	702	-	-	-	-	-	-	702	0.4	
1997	계	285,212	170,088	115,124	91,373	7,914	83,459	61,277	22,182	193,839	100.0	
	법 인	235,123	119,999	115,124	75,998	5,410	70,588	56,853	13,735	159,125	82.1	
	개인일반	46,658	46,658	-	15,343	2,472	12,871	4,424	8,447	31,315	16.2	
	특례	845	845	-	-	-	-	-	-	845	0.4	
1998	계	273,421	164,078	109,343	99,793	6,091	93,702	80,970	12,732	173,628	100.0	
	법 인	227,908	118,565	109,343	88,616	4,148	84,468	75,626	8,842	139,292	80.2	
	개인일반	42,012	42,012	-	11,166	1,932	9,234	5,344	3,890	30,846	17.8	
	특례	601	601	-	-	-	-	-	-	601	0.3	

4.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계속>

(단위: 억원, %)

연도	유형	납부세액			환급세액						실세수	
		계	국내분	수입분	계	일반환급	조기환급			세액	점유비	
							소계	수출	투자			
1999	계	316,566	196,295	120,271	106,559	5,681	100,878	79,386	21,492	210,007	100.0	
	법인	262,595	142,324	120,271	94,745	3,495	91,250	73,930	17,320	167,850	79.9	
	개인일반	50,233	50,233	-	11,791	2,163	9,628	5,456	4,172	38,442	18.3	
	특례	482	482	-	10	10	-	-	-	472	0.2	
2000	계	386,777	229,141	157,636	141,890	7,022	134,868	107,038	27,830	244,887	100.0	
	법인	320,426	162,790	157,636	127,029	4,258	122,771	101,106	21,665	193,397	79	
	일반	63,002	63,002	-	14,732	2,635	12,097	5,932	6,165	48,270	19.7	
	특례	247	247	-	21	21	-	-	-	226	0.1	
2001	계	417,174	255,754	161,420	137,798	8,390	129,408	103,211	26,197	279,376	100.0	
	법인	347,894	186,474	161,420	119,445	4,957	114,488	97,362	17,126	228,449	81.8	
	일반	68,498	68,498	-	18,331	3,411	14,920	5,849	9,071	50,167	18	
	특례	782	782	-	22	22	-	-	-	760	0.3	
2002	계	469,185	299,042	170,143	146,082	15,166	130,916	104,051	26,865	323,103	100.0	
	법인	386,239	216,096	170,143	118,712	7,545	111,167	98,659	12,508	267,527	82.8	
	일반	81,952	81,952	-	27,354	7,605	19,749	5,392	14,357	54,598	16.9	
	특례	994	994	-	16	16	-	-	-	978	0.3	
2003	계	511,434	323,842	187,592	177,939	18,033	159,906	129,625	30,281	333,495		
제1기	소계	244,243	153,346	90,897	83,119	8,707	74,412	60,091	14,321	161,124	100.0	
	법인	199,789	108,892	90,897	67,574	4,086	63,488	57,214	6,274	132,215	82.1	
	일반	43,893	43,893	0	15,536	4,612	10,924	2,877	8,047	28,357	17.6	
	특례	561	561	0	9	9	0	0	0	552	0.3	
제2기	소계	267,191	170,496	96,695	94,820	9,326	85,494	69,534	15,960	172,371	100.0	
	법인	219,340	122,645	96,695	78,528	4,325	74,203	67,031	7,172	140,812	81.7	
	일반	47,356	47,356	0	16,283	4,992	11,291	2,503	8,788	31,073	18	
	특례	495	495	0	9	9	0	0	0	486	0.3	
2004	계	562,464	344,730	217,734	221,104	21,348	199,756	170,252	29,504	341,360		
제1기	소계	268,711	163,768	104,943	104,856	10,449	94,407	80,125	14,282	163,855	100.0	
	법인	218,866	113,923	104,943	89,155	5,587	83,568	76,925	6,643	129,711	79.2	
	일반	49,235	49,235	0	15,695	4,856	10,839	3,200	7,639	33,540	20.5	
	특례	610	610	0	6	6	0	0	0	604	0.4	
제2기	소계	293,753	180,962	112,791	116,248	10,899	105,349	90,127	15,222	177,505	100.0	
	법인	240,660	127,869	112,791	101,740	6,115	95,625	87,307	8,318	138,920	78.3	
	일반	52,555	52,555	0	14,508	4,784	9,724	2,820	6,904	38,047	21.4	
	특례	538	538	0	0	0	0	0	0	538	0.3	

4.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계속>

(단위: 억원, %)

연 도	유 형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실세수	
		계	국내분	수입분	계	일반환급	조기환급			세액	점유비	
							소계	수출	투자			
2005	계	604,622	368,543	236,079	229,695	21,055	208,640	180,025	28,615	374,927		
제1기	소계	288,534	173,165	115,369	106,934	10,570	96,364	82,336	14,028	181,600	100.0	
	법인	236,910	121,541	115,369	93,515	6,185	87,330	79,079	8,251	143,395	79	
	일반	51,211	51,211	0	13,419	4,385	9,034	3,257	5,777	37,792	20.8	
	특례	413	413	0	0	0	0	0	0	413	0.2	
제2기	소계	316,088	195,378	120,710	122,761	10,485	112,276	97,689	14,587	193,327	100.0	
	법인	258,299	137,589	120,710	109,649	6,027	103,622	94,913	8,709	148,650	76.9	
	일반	57,351	57,351	0	13,112	4,458	8,654	2,776	5,878	44,239	22.9	
	특례	438	438	0	0	0	0	0	0	438	0.2	
2006	계	657,054	394,264	262,790	254,047	22,362	231,685	202,754	28,931	403,007		
제1기	소계	309,997	185,096	124,901	120,164	10,881	109,283	96,185	13,098	189,833	100.0	
	법인	252,231	127,330	124,901	107,169	6,428	100,741	92,984	7,757	145,062	76.4	
	일반	57,381	57,381	0	12,995	4,453	8,542	3,201	5,341	44,386	23.4	
	특례	385	385	0	0	0	0	0	0	385	0.2	
제2기	소계	347,057	209,168	137,889	133,883	11,481	122,402	106,569	15,833	213,174	100.0	
	법인	283,145	145,256	137,889	120,715	7,231	113,484	103,806	9,678	162,430	76.2	
	일반	63,468	63,468	0	13,168	4,250	8,918	2,763	6,155	50,300	23.6	
	특례	444	444	0	0	0	0	0	0	444	0.2	
2007	계	712,386	425,869	286,517	282,576	28,817	253,759	219,574	34,185	429,810		
제1기	소계	334,946	200,003	134,943	133,797	13,939	119,858	104,508	15,350	201,149	100.0	
	법인	270,169	135,226	134,943	119,948	9,269	110,679	101,142	9,537	150,221	74.7	
	일반	64,248	64,248	0	13,849	4,670	9,179	3,366	5,813	50,399	25.1	
	특례	529	529	0	0	0	0	0	0	529	0.3	
제2기	소계	377,440	225,866	151,574	148,779	14,878	133,901	115,066	18,835	228,661	100.0	
	법인	305,665	154,091	151,574	134,607	10,180	124,427	112,070	12,357	171,058	74.8	
	일반	71,202	71,202	0	14,172	4,698	9,474	2,996	6,478	57,030	24.9	
	특례	573	573	0	0	0	0	0	0	573	0.3	

주: 1. 조기환급 : 신고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2. 납부, 환급, 실세수액은 신고기준임.

3. 수입분은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1983~2005)

(단위: 명, 백만원)

기 간	유 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83. 1	계	102,431	83,821	18,610	772,437	332,228	440,209	77,412	28,166	49,246
	법인	7,827	4,140	2,687	291,683	80,338	211,345	31,654	8,806	22,848
	개인일반	56,790	42,762	14,028	370,023	148,450	221,573	43,445	17,220	26,225
	특례	37,814	36,919	895	110,731	103,440	7,291	2,313	2,140	173
83. 2	계	94,562	70,829	23,733	999,805	222,516	777,289	98,398	18,878	79,520
	법인	9,231	3,465	5,766	546,909	55,736	491,173	54,833	6,493	48,340
	개인일반	54,635	36,601	17,034	368,936	94,156	274,780	41,702	10,790	30,912
	특례	30,696	29,763	933	83,960	72,624	11,336	1,863	1,595	268
84. 1	계	101,847	87,642	14,205	788,404	328,642	459,762	78,191	29,316	48,875
	법인	6,197	3,327	2,870	357,918	104,959	252,959	37,725	11,968	25,757
	개인일반	55,791	44,783	11,008	336,769	136,863	199,906	38,391	15,431	22,960
	특례	39,859	39,532	327	93,717	86,820	6,897	2,075	1,917	158
84. 2	계	72,181	66,774	5,407	487,163	302,752	184,411	53,834	35,542	18,292
	법인	5,089	4,243	846	205,715	69,224	136,491	26,692	14,234	12,458
	개인일반	39,128	34,621	4,507	218,167	172,214	45,953	25,696	19,913	5,783
	특례	27,964	27,910	54	63,281	61,314	1,967	1,446	1,395	51
85. 1	계	69,747	64,390	5,357	500,346	323,432	176,914	51,394	31,735	19,659
	법인	5,009	3,685	1,324	193,124	87,922	105,202	21,923	10,655	11,268
	개인일반	42,258	38,338	3,920	234,971	166,078	68,893	27,995	19,662	8,333
	특례	22,480	22,367	113	72,251	69,432	2,819	1,486	1,418	68
85. 2	계	58,361	51,131	7,230	547,804	331,324	216,480	58,478	33,783	24,695
	법인	6,065	4,556	1,509	235,055	115,999	119,056	27,165	13,740	13,425
	개인일반	36,804	31,135	5,669	257,456	162,866	94,590	30,259	19,061	11,198
	특례	15,492	15,440	52	55,293	52,459	2,834	1,054	982	72
86. 1	계	355,444	349,496	5,948	680,189	442,923	237,266	148,414	120,675	27,739
	법인	10,563	9,172	1,391	184,941	62,160	122,781	39,796	24,940	14,856
	개인일반	147,056	142,932	4,124	417,403	308,396	109,007	99,689	86,930	12,759
	특례	197,825	197,392	433	77,845	72,367	5,478	8,929	8,805	124
86. 2	계	328,615	322,628	5,987	640,845	325,482	315,363	142,198	107,472	34,726
	법인	10,322	9,117	1,205	248,042	83,839	164,203	42,774	24,492	18,282
	개인일반	123,907	119,479	4,428	334,718	190,312	144,406	91,790	75,520	16,270
	특례	194,392	194,038	354	58,085	51,331	6,754	7,634	7,460	174
87. 1	계	364,655	358,753	5,902	963,794	599,339	364,455	189,777	149,806	39,971
	법인	11,883	10,611	1,272	305,116	116,687	188,429	55,658	34,755	20,903
	개인일반	163,402	159,062	4,340	526,980	361,786	165,194	124,660	105,922	18,738
	특례	189,370	189,080	290	131,698	120,866	10,832	9,459	9,129	330

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1983~2005) <계속>

(단위: 명, 백만원)

기 간	유 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87.2	계	342,039	340,185	1,854	495,869	312,882	182,987	155,610	135,259	20,351
	법인	11,040	10,620	420	130,749	23,224	107,525	46,899	34,648	12,251
	개인일반	140,258	138,911	1,347	311,516	238,532	72,984	101,360	93,320	8,040
	특례	190,741	190,654	87	53,604	51,126	2,478	7,351	7,291	60
88.1	계	377,595	375,249	2,346	888,569	657,499	231,070	204,526	175,505	29,021
	법인	10,391	9,694	697	342,854	182,650	160,204	63,311	44,365	18,946
	개인일반	158,376	156,734	1,642	471,167	401,215	69,952	132,599	122,545	10,054
	특례	208,828	208,821	7	74,548	73,634	914	8,616	8,595	21
88.2	계	371,702	368,361	3,341	811,028	499,438	311,590	199,799	166,016	33,783
	법인	11,138	10,307	831	265,609	130,279	135,330	60,688	42,233	18,455
	개인일반	143,931	141,740	2,191	478,303	311,572	166,731	129,945	114,828	15,117
	특례	216,633	216,314	319	67,116	57,587	9,529	9,166	8,955	211
89.1	계	426,843	423,712	3,131	1,081,729	696,211	385,518	237,405	203,882	33,523
	법인	13,271	12,586	685	440,826	255,781	185,045	75,007	56,142	18,865
	개인일반	178,319	176,347	1,972	533,298	343,179	190,119	152,384	137,964	14,420
	특례	235,253	234,779	474	97,605	87,251	10,354	10,014	9,776	238
89.2	계	439,287	436,366	2,921	918,215	462,157	456,058	213,241	175,024	38,217
	법인	11,997	11,347	650	326,022	115,458	210,564	56,195	36,962	19,233
	개인일반	157,304	155,586	1,718	521,368	292,963	228,405	146,696	128,159	18,537
	특례	269,986	269,433	553	70,825	53,736	17,089	10,350	9,903	447
90.1	계	453,308	451,139	2,169	1,060,990	620,977	440,013	265,000	227,723	37,277
	법인	12,955	12,497	458	389,245	185,911	203,334	71,503	55,154	16,349
	개인일반	166,020	164,862	1,158	574,055	357,798	216,257	181,141	160,691	20,450
	특례	274,383	273,830	553	97,690	77,268	20,422	12,356	11,878	478
90.2	계	345,362	342,954	2,408	1,007,145	591,098	416,047	257,259	221,204	36,055
	법인	11,988	11,506	482	327,525	160,055	167,470	68,846	52,795	16,051
	개인일반	146,672	145,521	1,151	562,447	339,454	222,993	176,442	157,005	19,437
	특례	187,152	186,377	775	117,173	91,589	25,584	11,971	11,404	567
91.1	계	387,190	384,878	2,312	1,079,471	610,015	469,456	247,020	208,066	38,954
	법인	11,199	10,893	306	340,418	164,878	175,540	85,973	69,283	16,690
	개인일반	151,165	150,202	963	551,564	322,273	229,291	196,310	175,385	20,925
	특례	224,826	223,783	1,043	187,489	122,864	64,625	14,737	13,398	1,339
91.2	계	425,659	421,915	3,744	1,289,410	709,087	580,323	364,213	311,261	52,952
	법인	14,232	13,522	710	474,226	213,871	260,355	122,690	98,367	24,323
	개인일반	158,865	156,867	1,998	659,383	389,545	269,838	227,244	199,736	27,508
	특례	252,562	251,526	1,036	155,801	105,671	50,130	14,279	13,158	1,121

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1983~2005) <계속>

(단위: 명, 백만원)

기 간	유 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92.1	계	473,355	470,136	3,219	1,574,512	1,032,727	541,785	497,406	447,623	49,783
	법인	15,943	15,441	502	505,964	277,711	228,253	179,633	157,203	22,430
	개인일반	182,774	181,245	1,529	796,707	545,834	250,873	299,273	273,697	25,576
	특례	274,638	273,450	1,188	271,841	209,182	62,659	18,500	16,723	1,777
92.2	계	544,072	540,035	4,037	2,306,783	1,496,645	810,138	545,169	491,072	54,097
	법인	17,203	16,549	654	1,176,570	729,026	447,544	202,939	178,938	24,001
	개인일반	174,115	171,852	2,263	812,535	506,604	305,931	318,936	290,090	28,846
	특례	352,754	351,634	1,120	317,678	261,015	56,663	23,294	22,044	1,250
93.1	계	599,783	593,258	6,525	3,459,653	2,430,766	1,028,887	616,781	535,806	80,975
	법인	19,464	18,781	683	1,657,542	1,090,500	567,042	248,932	202,461	46,471
	개인일반	208,527	206,074	2,453	1,190,586	852,074	338,512	339,742	307,976	31,766
	특례	371,792	368,403	3,389	672,525	549,192	123,333	28,152	25,369	2,783
93.2	계	631,059	621,160	9,899	3,175,528	1,702,686	1,472,842	668,393	524,760	143,633
	법인	22,508	20,864	1,644	1,168,813	445,654	723,159	266,743	194,914	71,829
	개인일반	229,578	223,861	5,717	1,466,240	813,869	652,371	374,659	305,042	69,617
	특례	378,973	376,435	2,538	540,975	443,663	97,312	26,991	24,804	2,187
94.1	계	510,215	502,837	7,387	2,894,434	1,364,202	1,530,232	636,701	487,061	149,640
	법인	21,750	20,179	1,571	1,290,673	454,443	836,230	272,924	193,351	79,573
	개인일반	186,793	181,580	5,213	1,206,547	553,285	653,262	339,104	269,937	69,167
	특례	301,672	301,078	594	397,214	356,474	40,740	24,673	23,773	900
94.2	계	525,952	518,594	7,358	3,171,147	1,408,485	1,762,662	669,335	512,942	156,393
	법인	24,071	22,563	1,508	1,359,441	424,410	935,031	277,332	203,442	73,890
	개인일반	211,736	206,148	5,588	1,351,112	538,097	813,015	362,816	280,650	82,166
	특례	290,145	289,883	262	460,594	445,978	14,616	29,187	28,850	337
95.1	계	485,897	481,642	4,255	3,981,436	2,520,895	1,460,541	899,521	774,865	124,656
	법인	25,565	24,613	952	1,285,817	585,954	699,863	352,723	299,048	53,675
	개인일반	223,193	220,166	3,027	1,950,332	1,229,235	721,097	513,424	443,318	70,106
	특례	237,139	236,863	276	745,287	705,706	39,581	33,374	32,499	875
95.2	계	518,052	513,438	4,614	3,970,448	2,351,898	1,618,550	956,055	821,763	134,292
	법인	32,107	31,166	941	1,552,000	693,584	858,416	406,336	341,124	65,212
	개인일반	313,813	310,507	3,306	1,677,056	952,437	724,619	525,852	457,591	68,261
	특례	172,132	171,765	367	741,392	705,877	35,515	23,867	23,048	819
96.1	계	403,217	400,903	2,314	4,308,982	3,175,374	1,133,608	1,113,737	1,021,984	91,753
	법인	35,613	34,900	713	1,671,172	1,005,235	665,937	476,222	425,964	50,258
	개인일반	307,605	306,140	1,465	1,783,124	1,328,540	454,584	605,605	564,392	41,213
	특례	59,999	59,863	136	854,686	841,599	13,087	31,910	31,628	282

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1983~2005) <계속>

(단위: 명, 백만원)

기 간	유 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96.2	계	408,991	402,621	6,370	4,689,364	2,728,080	1,961,284	1,007,490	856,396	151,094
	법인	33,638	31,111	2,527	1,630,461	568,394	1,062,067	429,638	348,907	80,731
	개인일반	296,274	292,861	3,453	2,401,873	1,541,192	860,681	557,108	487,603	69,505
	특례	79,079	78,649	430	657,030	618,640	38,390	20,744	19,886	858
97.1	계	555,760	550,997	4,763	5,282,885	3,175,069	2,107,816	1,333,836	1,165,848	167,988
	법인	46,344	44,825	1,519	2,284,078	996,910	1,287,168	622,989	522,976	100,013
	개인일반	336,033	333,324	2,709	2,135,124	1,335,149	779,975	659,148	592,583	66,565
	간이과세	65,203	64,957	246	160,835	145,632	15,203	25,115	24,330	785
97.2	계	542,581	537,361	5,220	4,842,795	2,992,114	1,850,681	1,325,783	1,169,428	156,355
	법인	54,693	51,598	3,095	2,162,879	953,099	1,209,780	705,825	600,139	105,686
	개인일반	297,596	295,870	1,726	1,721,886	1,110,197	611,689	577,071	527,329	49,742
	간이과세	103,683	103,478	205	185,263	169,090	16,173	21,866	21,208	658
98.1	계	588,300	584,683	3,617	7,483,393	4,955,473	2,527,920	1,981,053	1,802,030	179,023
	법인	65,848	64,438	1,410	4,223,362	2,580,025	1,643,337	1,134,902	1,013,780	121,122
	개인일반	338,150	336,369	1,781	2,349,324	1,515,064	834,260	797,734	741,980	55,754
	간이과세	120,133	119,819	314	386,280	347,406	38,874	31,780	29,878	1,902
98.2	계	630,897	625,724	5,173	9,283,957	5,638,407	3,645,550	1,879,272	1,631,927	247,345
	법인	70,817	67,816	3,001	4,838,428	2,042,772	2,795,656	1,029,698	840,244	189,454
	개인일반	327,003	325,168	1,835	2,772,269	1,960,404	811,865	778,269	722,068	56,201
	간이과세	165,910	165,665	245	854,390	824,342	30,048	52,967	51,460	1,507
99.1	계	678,814	673,758	5,056	11,318,537	9,240,185	2,078,352	1,222,137	956,421	256,716
	법인	84,281	82,338	1,943	4,394,565	3,082,089	1,312,476	380,255	203,068	177,187
	개인일반	336,485	334,188	2,297	5,365,701	4,665,434	700,267	774,288	697,156	77,132
	간이과세	164,810	164,401	409	868,395	822,156	46,239	51,048	49,081	1,967
99.2	계	694,705	690,565	4,140	10,088,283	8,155,546	1,932,737	842,256	630,182	212,083
	법인	86,258	84,103	2,155	6,751,731	5,274,926	1,476,805	182,228	21,137	161,091
	개인일반	315,134	313,644	1,490	1,770,072	1,352,054	418,018	596,421	547,012	49,409
	간이과세	175,328	175,045	283	870,780	844,635	26,145	48,000	46,743	1,257
99.2	특례	117,985	117,773	212	695,700	683,931	11,769	15,616	15,290	326

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1983~2005) <계속>

(단위: 명, 백만원)

기 간	유 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00.1	계	791,168	788,723	2,445	5,588,212	2,220,414	3,367,798	930,126	777,393	152,733
	법인	99,168	98,050	1,118	1,578,769	-1,042,317	2,621,086	273,091	166,549	106,542
	개인일반	341,173	340,144	1,029	2,320,181	1,606,956	713,225	589,485	544,667	44,818
	간이과세	215,642	215,486	156	1,033,984	1,009,652	24,332	54,616	53,419	1,197
	과세특례	135,185	135,043	142	655,278	646,123	9,155	12,934	12,758	176
00.2	계	724,044	720,872	3,172	8,383,608	5,476,859	2,906,749	705,991	552,148	153,843
	법인	82,715	80,991	1,724	3,803,811	1,466,420	2,337,391	85,419	-22,696	108,115
	개인일반	342,793	341,554	1,239	2,946,410	2,416,932	529,478	565,033	521,350	43,683
	간이과세	188,301	188,129	172	1,084,023	1,047,718	36,305	45,763	43,798	1,965
	과세특례	110,235	110,198	37	549,364	545,789	3,575	9,776	9,696	80
01.1	계	754,623	751,227	3,396	8,948,161	3,443,375	5,504,786	1,679,999	1,436,840	243,159
	법인	127,533	125,771	1,762	5,038,981	621,141	4,417,840	856,135	676,032	180,103
	개인일반	456,703	455,300	1,403	2,802,330	1,747,915	1,054,415	798,801	737,269	61,532
	간이과세	154,351	154,171	180	938,418	911,330	27,088	21,613	20,273	1,340
	과세특례	16,036	15,985	51	168,432	162,989	5,443	3,450	3,266	184
01.2	계	746,220	739,894	6,326	16,234,765	10,354,759	5,880,006	1,688,740	1,255,489	433,251
	법인	131,928	129,382	2,546	10,776,915	6,242,342	4,534,573	939,523	612,751	326,772
	개인일반	461,039	458,010	3,029	4,395,298	3,115,802	1,279,496	724,170	620,588	103,582
	간이과세	145,083	144,487	596	954,740	898,401	56,339	22,880	20,281	2,599
	과세특례	8,170	8,015	155	107,812	98,214	9,598	2,167	1,869	298
02.1	계	720,344	715,572	4,772	11,545,020	4,678,465	6,866,555	2,135,259	1,765,379	369,880
	법인	147,136	144,964	2,172	6,319,389	1,043,245	5,276,144	1,265,499	982,282	283,217
	개인일반	431,269	429,014	2,255	4,341,942	2,780,413	1,561,529	850,886	765,488	85,398
	간이과세	137,620	137,344	276	836,960	811,390	25,570	17,732	16,566	1,166
	과세특례	4,319	4,250	69	46,729	43,417	3,312	1,142	1,043	99
02.2	계	717,405	712,142	5,263	11,562,401	4,618,774	6,943,627	2,016,746	1,674,819	341,927
	법인	156,616	154,091	2,525	7,513,134	1,944,293	5,568,841	1,248,690	996,245	252,445
	개인일반	440,151	437,891	2,260	3,531,197	2,186,586	1,344,611	752,150	663,963	88,187
	간이과세	117,769	117,391	378	490,086	464,074	26,012	15,216	14,060	1,156
	과세특례	2,869	2,769	100	27,984	23,821	4,163	690	551	139

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1983~2005)(계속)

(단위: 명, 백만원)

기 간	유 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03.1	계	863,302	858,909	4,393	13,306,943	6,791,703	6,515,240	2,507,381	2,171,007	336,374
	법인	181,670	179,690	1,980	7,385,875	2,419,218	4,966,657	1,445,836	1,189,376	256,460
	개인일반	513,198	511,174	2,024	4,731,323	3,212,176	1,519,147	1,037,758	959,318	78,440
	간이과세	165,540	165,203	337	1,163,146	1,136,574	26,572	23,034	21,662	1,372
	과세특례	2,894	2,842	52	26,599	23,735	2,864	753	651	102
03.2	계	854,104	848,030	6,074	15,678,080	5,301,267	10,376,813	2,590,536	2,132,789	457,747
	법인	179,293	176,481	2,812	10,416,393	2,144,971	8,271,422	1,618,280	1,262,783	355,497
	개인일반	507,394	504,531	2,863	4,500,028	2,416,609	2,083,419	944,110	843,372	100,738
	간이과세	163,849	163,480	369	719,509	698,532	20,977	26,925	25,446	1,479
	과세특례	3,568	3,538	30	42,150	41,155	995	1,221	1,188	33
04.1	계	943,797	937,695	6,102	10,486,224	-3,699,088	14,185,312	3,267,309	2,663,824	603,485
	법인	221,634	218,582	3,052	3,769,028	-7,434,951	11,203,979	2,069,489	1,583,626	485,863
	개인일반	573,265	570,520	2,745	5,912,760	2,953,447	2,959,313	1,170,893	1,054,733	116,160
	간이과세	147,473	147,220	253	779,874	759,567	20,307	26,012	24,663	1,349
	과세특례	1,425	1,373	52	24,562	22,849	1,713	915	802	113
04.2	계	781,816	774,963	6,853	16,579,755	3,068,250	13,511,505	3,173,402	2,368,876	804,526
	법인	186,237	182,640	3,597	12,056,929	1,043,292	11,013,637	2,156,662	1,495,430	661,232
	개인일반	496,264	493,186	3,078	4,217,902	1,761,523	2,456,379	997,036	854,476	142,560
	간이과세	98,764	98,598	166	299,477	258,783	40,694	19,521	18,820	701
	과세특례	551	539	12	5,447	4,652	795	183	150	33
05.1	계	832,009	826,065	5,944	20,091,590	4,113,057	15,978,533	2,863,911	2,128,565	735,346
	법인	199,903	197,008	2,895	15,418,013	1,605,144	13,812,869	1,738,195	1,104,378	633,817
	개인일반	531,365	528,502	2,863	4,322,482	2,169,967	2,152,515	1,105,692	1,004,830	100,862
	간이과세	100,741	100,555	186	351,095	337,946	13,149	20,024	19,357	667
	과세특례	-	-	-	-	-	-	-	-	-
05.2	계	761,009	754,438	6,571	17,250,892	5,287,169	11,963,723	3,029,737	2,462,178	567,559
	법인	187,258	183,890	3,368	13,011,348	2,863,805	10,147,543	2,001,738	1,524,195	477,543
	개인일반	488,686	485,687	2,999	3,893,528	2,093,303	1,800,225	1,011,136	921,835	89,301
	간이과세	85,065	84,861	204	346,016	330,061	15,955	16,863	16,148	715
	과세특례	-	-	-	-	-	-	-	-	-

주: 특례(과세특례) 인원에는 소액부징수자가 제외되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1. 부가세 경정현황(경정유형별, 2006~)

연 도	구 분	경정건수	과세분매출			영세율매출	
			인원	과세표준	세액	인원	과세표준
2006	법인	400,179	379,649	1,159,751,457	115,921,749	53,986	616,894,093
	당연경정	190,714	190,305	64,284,525	6,425,745	10,049	1,391,081
	기타	209,465	189,344	1,095,466,932	109,496,004	43,937	615,503,012
	일반	976,768	923,175	114,462,967	11,436,248	30,833	5,493,479
	당연경정	572,028	570,644	49,473,128	4,945,600	10,025	455,944
	기타	404,740	352,531	64,989,839	6,490,648	20,808	5,037,535
	간이	155,782	143,991	2,316,447	67,949	123	945
	당연경정	56,985	56,985	1,203,986	34,370	32	486
기타	98,797	87,006	1,112,461	33,579	91	459	
2007	법인	415,887	384,935	1,302,903,999	130,224,459	53,754	908,600,791
	당연경정	188,544	188,152	64,957,263	6,492,602	9,513	1,224,143
	기타	227,343	196,783	1,237,946,736	123,731,857	44,241	907,376,648
	일반	1,071,257	988,807	125,798,342	12,570,261	29,319	5,599,033
	당연경정	577,332	575,892	50,953,969	5,093,963	9,220	427,227
	기타	493,925	412,915	74,844,373	7,476,298	20,099	5,171,806
	간이	406,417	349,515	4,984,512	136,851	240	820
	당연경정	59,209	59,209	1,240,307	30,977	16	150
기타	347,208	290,306	3,744,204	105,874	224	670	

(단위: 건, 명, 백만원)

매입세액			납부세액	경감·공제	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차감고지
인원	과세표준	세액						
385,630	1,418,894,322	123,542,401	-7,620,652	-10,624	-9,547,316	843,094	4,009,096	1,228,714
182,933	37,271,218	3,635,564	2,790,181	-16,215	210,712	35,234	2,630,918	-
202,697	1,381,623,104	119,906,837	-10,410,833	5,591	-9,758,028	807,860	1,378,178	1,228,714
822,165	74,367,383	7,129,462	4,306,786	141,303	2,388,639	351,375	2,668,118	539,899
498,344	26,417,946	2,535,570	2,410,030	73,232	733,515	22,266	1,625,549	-
323,821	47,949,437	4,593,892	1,896,756	68,071	1,655,124	329,109	1,042,569	539,899
-	-	-	67,949	32,190	8,458	4,852	36,259	4,106
-	-	-	34,370	21,821	679	163	12,033	-
-	-	-	33,579	10,369	7,779	4,689	24,226	4,106
392,270	2,705,091,100	152,165,296	-21,940,837	584,126	-24,222,149	820,836	4,142,652	1,624,630
181,407	39,745,782	3,732,526	2,760,076	-19,322	131,407	34,734	2,682,725	-
210,863	2,665,345,318	148,432,770	-24,700,913	603,448	-24,353,556	786,102	1,459,927	1,624,630
860,513	313,357,610	7,696,103	4,874,158	155,290	2,513,583	424,926	3,193,378	563,167
502,070	27,134,655	2,578,862	2,515,101	76,962	732,945	22,312	1,727,506	-
358,443	286,222,955	5,117,241	2,359,057	78,328	1,780,638	402,614	1,465,872	563,167
-	-	-	136,851	34,303	17,674	17,748	109,488	6,866
-	-	-	30,977	18,090	575	159	12,471	-
-	-	-	105,874	16,213	17,099	17,589	97,017	6,866

주: 1. 해당연도에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로서 결정·경정 결의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0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분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6. 업태별 부가가치율

연도	구분	계	농, 수, 임,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도매	소매
1983,1(기)		29.7	74.7	36.1	28	15.3	11.6	10.6
1983,2		30	67.4	35	26.7	20.3	11.5	7.9
1984,1		27.8	56.9	19.4	19.8	32.5	22.3	13.2
1984,2		29.1	69	37.6	20.4	32	25	13.4
1985,1		27.3	62.1	14.7	19.2	40.3	21.3	16.1
1985,2		29.3	56.8	43.8	22.6	36.1	22.7	14.5
1986,1		27	55.3	43.1	21.8	48.5	20.6	16.9
1986,2		28.4	50.2	45.7	22.5	51.1	22.4	15.5
1987,1		25.2	55	43.2	19.6	54.6	20.8	16.6
1987,2		24.4	44.8	42.7	17.3	49.3	21.9	15.7
1988,1		23.2	51.4	40.4	18.1	51.4	20.2	15.8
1988,2		25.8	35.6	41.2	21.4	51.4	20.4	14.5
1989,1		23.7	51.1	36.2	18.6	54	20.8	15.8
1989,2		24.8	33.1	37.8	19.8	39	22.1	14.5
1990,1		22.8	43.1	32.7	18.5	44.7	21.2	15.1
1990,2		23.4	21.6	26.7	18.9	28.8	21.7	13.7
1991,1		21.3	38	31.1	16.7	31.6	20.6	13.6
1991,2		24	42.8	28.5	20.4	20.6	19.3	13.4
1992,1		23.5	48.9	12.9	20.9	16	20.1	12.5
1992,2		25.8	50	30.6	22.4	10.8	20.2	6.8
1993,1		24.9	23.2	9.3	20.9	18.8	19.5	14.3
1993,2		26.4	58.4	3.2	23.4	26.6	19.9	15.3
1994,1		24.3	28.1	11.2	21.7	30.4	19.7	16.2
1994,2		25.1	44.9	18.7	23.2	16.3	19.8	13.3
1995,1		22.6	25.8	19.3	19	21.6	19.2	13.5
1995,2		21	33.9	19.3	14.5	7.3	19.9	12.6
1996,1		22.4	55.1	15.4	19.4	14.7	18.7	13.9
1996,2		22.2	39.6	22	19	2.6	18.1	11
1997,1		22	39.8	4.4	20.4	-	18.3	14.2
1997,2		24.9	50.3	19.7	23.9	0.3	18	12
1998,1		28.5	59	-	29.6	14.6	16.2	17.8
1998,2		28.2	42	35.8	28.3	13.1	20.2	18.1
1999,1		23.2	33.2	-	25.5	19.8	7.5	17.9
1999,2		26.9	29.7	25.5	24	-	21.1	14
2000,1		22.7	22.9	-	18.4	29.3	19	19.3
2000,2		25.2	32.1	10	21.9	15.3	18.5	19.9

(단위: %)

부동산 매매	건 설	음 식	숙 박	운수, 창고, 통신	부동산 임대	대인, 중개, 주선, 위탁, 도급	기 타
-	76.7	58.8	51.8	61.3	36.8	50.2	49.7
-	69.3	56.3	47.4	62.6	7.7	54.4	48.7
-	65.9	57.7	53.5	63.2	30.3	52.8	50.7
-	64.9	56.4	49.7	59.7	8.6	55	45.9
-	66.3	54.7	55.7	64.7	42	50.5	50.3
42.4	61.8	54.2	37.2	60.1	31.1	50.1	47.7
44.8	54.4	54.2	44.1	60.9	40.9	49.3	50.1
5.9	57.9	52.5	21.4	59.7	22.3	53.8	45.8
24.9	47.2	52.8	36.2	63.9	47	55.7	49.4
21.9	51.6	48.5	16.4	63.6	26.3	50.4	44.4
30.2	38.7	49.6	6.7	64.3	39.6	56.6	41.1
31.4	47.9	49.1	22.1	62.8	25.7	50.9	44.8
35.7	36	49.7	46.3	62.4	42.5	48	46.4
22.2	42.9	48.6	44.6	61	23	44.6	43.1
7.2	30.1	49.1	45.3	59.4	28.6	49.2	39.7
-	41.9	50	44.3	56.5	11.8	44.2	38
-	27.8	41	52.8	61.7	18.4	45.5	37.2
-	39.6	49.1	52.9	59	7.2	42.3	36.6
-	32.3	49.2	60.6	60.8	23.2	46.5	35.3
-	41.6	48.6	53	58.6	18.9	25.5	39.1
-	32.7	47.6	54.1	60.3	31.7	36.1	40.1
-	42.3	50.2	50.8	62.8	12	41.9	43.5
13.1	30.4	54.8	59	60	25.2	49	42.3
-	39.8	52.3	49.9	45.5	19.1	48.6	34.7
-	32.7	54.3	49.4	59.3	29.5	47.7	39.1
-	37.9	52.9	49.8	60.5	25.8	40.8	36.3
-	31.2	54.6	47.6	59.1	33.5	39.5	36.5
-	36.7	47.4	38	54.2	22.4	37.7	34.3
-	32.5	45.7	35.6	58.7	24.8	36	38.1
-	36.6	46.1	33.7	58	15.8	38.3	37.7
-	39.4	37.4	54	62.7	36.9	45.3	32.6
-	37.7	49.7	52.6	60.5	40.7	45.7	30.7
-	34.6	49.3	60.7	54.4	-	41.5	44.4
18	42.1	48.6	56.4	57	31.8	48.4	39.8
9.6	30.7	51	55.9	51.1	44.9	50.8	30.4
-	37.2	54.2	46.8	50.3	38.3	49.3	35.9

6. 업태별 부가가치율 <계속>

연 도	구 분	계	농, 수, 임, 어업	광 업	제 조	전기, 가스, 수도	도 매	소 매
2001.1		23	29.6	13.5	20	17.7	17.6	20
2001.2		23.9	21.7	19.1	20.6	10.5	16.1	17.8
2002.1		24.6	28.4	6	20.8	20.4	19.4	20.1
2002.2		18.9	31	-	20.3	17	16	16.2
2003.1		17.6	24.6	2	18.4	18.8	20	17.9
2003.2		20.3	31.6	3.9	21.9	-	18.4	-
2004.1		24.7	34.9	-	23.6	18.5	21.3	19.3
2004.2		25.8	34.6	17.6	21.6	13.6	23.7	19.5
2005.1	법인	24.5	18.9	2.9	18.9	17.3	23.9	25.7
	일반	26.2	47	41.2	37.1	21.2	11	9.2
2005.2	법인	24.3	21.7	2.1	19.3	9.5	24	25.8
	일반	28	59.1	43.4	37.8	29.3	15.4	9.1
2006.1	법인	23.5	15.2	-20.6	19.1	13.1	22.9	26.3
	일반	27.8	51.5	42.6	36.7	23.3	14.7	8.8
2006.2	법인	23.8	22.8	-15.9	20	9.1	23.3	25.2
	일반	28.2	54.2	43.1	37	8.3	14.1	10.1
2007.1	법인	23	11.3	-3.8	19.8	14	22.1	22.5
	일반	27.6	43.2	40.2	34.5	7.5	15	10.1
2007.2	일반	23.9	17.6	-8	19.8	8.5	23.3	23.2
	법인	25.8	54.6	43.5	35.9	-66.7	16.1	10.6

(단위: 백만원, %)

부동산 매매	건 설	음 식	숙 박	운수, 창고, 통신	부동산 임대	대인, 중개, 주선, 위탁, 도급	기 타
-	32.1	54.3	37.6	55.5	40.1	50.8	32.8
-	36.8	52.6	37	46.5	21	47.7	35.6
-	32.3	53.7	35.1	53.1	14.6	48	34.6
-	11	44.6	-	43	-	43.1	34.9
-	0	40.4	-	-	-	47	28.6
-	30	-	-	41.3	-	45.1	25.1
0.7	29.7	50.6	30.8	54.2	-	43	38.1
-	33.4	50.4	34.1	52.5	-	46.9	35.2
-	28.9	42.4	41.3	54.4	39.9	43	34.6
11	47.4	26.5	20.9	42.2	10.2	68	53.2
2.9	29.8	39.8	41.6	49.7	23.1	41.3	35.4
22	51	25.8	27.2	40.5	12.1	68	50.7
6.9	26.3	37.8	37	52.1	39.1	49.3	28.5
18.1	47.5	26.7	35.3	38.9	28.5	67.6	54.4
-12.6	29.1	34.9	43.8	47.1	25.8	41.7	29.2
16.1	51.4	25.3	31.2	39.4	23.3	68	54.5
-26.5	24.5	39.1	34.2	47.8	32.8	44.4	26
10.4	47.5	26.7	30	38.2	29.4	67.9	54.5
-29.4	26.5	37.4	38.8	46.7	25.8	43.9	34.6
8.2	50.6	-11.8	29.9	36.4	31.8	68.3	54.9

주: 2004년 이전은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2005년부터는 법인과 일반을 구분하여 기재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조세연구원장 “양도세 증가폐지 필요”

원유희 조세연구원장은 7일 “양도소득세 증가 폐지는 조세제도의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유희 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양도소득세 증가제도는 원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지만 실제 이런 효과가 크지 않고 동결 효과에 따라 부동산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가격 하락 효과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이자율 등 금융요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 회복이 이뤄지면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에 대한 총액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재정관리를 하는 식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감세는 기본적으로 소비나 투자, 저축과 근로의욕 등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을 유인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라며 “부자감세와 같은 단어는 정치적 용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년 5월 8일자〉

소득파악률 근로자 82% 자영자 57%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은 소득 중 82%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되고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현금 중심의 거래관행으로 인해 전체 소득의 57% 정도만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6일 국세청 및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근로소득)는 410조3천700억 원이었고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336조4천800억 원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82%로 분석됐다.

근로자 소득파악률은 2005년 76.5%에서 2006년 82.6%로 높아졌다가 2007년에는 82%로 0.6%포인트가량 낮아졌다.

반면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사업·임대소득)는 83조2천700억원에 달했지만 신고된 사업·임대소득 금액은 47조5천170억원에 그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국민소득(일정기간 국민의 생산활동에 참가한 생산요소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총액) 측면에서 피용자보수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뜻하며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된다.

따라서 분배국민소득상 피용자보수는 근로소득의 합을, 개인영업잉여는 자영업자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의

비율이 각각 82%와 57%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원이라면 이 중 각각 82원과 57원만 과세당국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의 파악률이 100%에 못미치는 것은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에는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소득파악률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일용근로자들의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파악이 힘들기 때문이다.

사업·임대소득의 경우 현금 중심의 투명하지 못한 거래관행 때문으로 신고소득을 검증할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소득파악률이 근로소득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사업·임대소득의 소득파악률도 2005년 47.8%, 2006년 51.7%, 2007년 57.1% 등으로 상승하고 있어 근로소득과의 소득파악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민간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6.6%에서 2006년 52.2%, 2007년 58.5%에 이어 지난해에는 65%에 달하면서 세원 투명성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09년 5월 7일자)

“기업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해야”

‘대한상의·세무학회 세미나’

- 박종수 고려대 교수,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 주장
- 김완일 세무사, “기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부과 말고 상속재산 처분 시점에 양도차익 과세 주장

기업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 처분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침체에 상속세 부담을 덜어 사업 축소, 경영권 위협을 덜어주는 입장이다.

한국세무학회(회장 이천오)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4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관련 상속세제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종수 교수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기업상속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기업 상속에 대한 지원 폭이 늘었지만 여전히 독일 등 주요 외국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높다”면서 “세금 납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하여야 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도 우선적으로 기업 승계에 대해서라도 대폭 할인해주는 등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나 가다가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우리와 동일한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독일은 상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계상속은 30%의 할인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업 승계는 상속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 자산 등을 유지하면 상속 재산을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다는 것이다.

이어 김완일 세무사는 “상속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인 만큼 기업상속공제만으로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우선 기업승계만이라도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처분시점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양도차익을 합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단기적으로 상속세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유예하자”고 말했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가업을 충실하게 영위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상속인이 기업상속 재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실현됐을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와 김 세무사는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따라 10~30% 할증과세라고 있는데 이는 주요 국가에 없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할인과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현재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 핵심인물 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반영하여 10% 할인과세하고 있다.

이전오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공제 조정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독일의 기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당장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기적으로 상속세율의 인하, 상속공제금액의 증액 등을 시행하고 가업 승계에 한해 상속재산 처분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찬성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의 투자욕이 꺾인다면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큰 것을 잃는 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에 대해 더 획기적인 지원안을 만들고 대신 윤리경영과 기업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윤태화 경원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특례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인평가 도입, 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가업승계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최근 싱가포르,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인하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자료)

〈연합뉴스 2009년 4월 25일자〉

재정 조기집행 가속도 1분기 계획대비 110%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 경제대책회의에서 지난 1분기(1~3월)에 83조7000억원의 재정을 집행, 계획(76조원) 대비 110.1%의 초과집행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올해 연간 계획(257조7000억원) 대비로는 32.5%의 집행률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22.7%)을 크게 웃돌았다.

주요 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3월말까지 29조8000억원을 집행해 계획(24조2000억원) 대비 123.1%의 집행률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집행률은 142.8%(계획 10조7000억원, 집행 15조3000억원)에 달했다.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안정사업도 계획 대비 109.3%, 중소기업 대출·보증 등 금융시장 안정사업도 계획대비 100% 집행됐다.

재정부는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통상 70~90일 걸리던 관급공사 발주 및 계약기간을 한 달 가량으로 단축하고 공사계약금 중 선금 지급률을 10%포인트 높인 결과 재정 집행이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또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도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연구원 분석 결과 재정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을 0.7%포인트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2009년 4월 24일자〉

조세연구 “소득세율 물가연동제 필요”

소득세 공제구간이나 한도, 세율구간 등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실시해 자동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23~24일 조세연구원과 중국 세무과학연구소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여는 ‘소득세제 개선방향 심포지엄에 앞서 이날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제수준이나 세율구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면서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성 위원은 또 “소득세 누진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소득세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개편하면 재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특히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축소하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다만 소득공제 축소는 사업소득포착률을 높여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세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재분배 기능과 소득세의 누진도를 재평가하고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 폐지 ▲세무조사시스템 전면 개편 ▲물가연동세제 도입

▲소득과 가구원수에 비례해 공제액을 산출하는 개선공제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폐지 및 세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또 소득세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친 뒤 중장기 과제로 단일세와 이중소득과세 도입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소득세 세부담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임금상승률 대비 일정 범위 내로 조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점차 소득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이와 함께 면세자 축소, 소득파악률 제고, 공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며 “면세자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및 특별공제 축소 등을, 소극적으로는 3~5년간 각종 공제제도의 명목금액 동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과세의 세원 확충을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나 비과세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양도소득에 대한 중장기적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사각지대 해소 ▲소액거래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 및 기장의무자 확대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확대 등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2009년 4월 23일자〉

재정포럼

2009년 5월호 통권 제15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09년 5월 15일 발행 / 제14권 제5호(통권 제15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